연구보고서 2020-19

중앙·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홍원
김회성·이은솔·민효상·조보배·이신정·남찬섭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조보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신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0-19

중앙·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33-7 93330

발|간|사

지역사회는 국가의 공공정책과 정책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대면하는 공간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욕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와 복지분권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 추진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자치와 분권은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중시하며, 사회복지는 급여 형평성과 전국적 기준을 추구한다. 따라서 분권과 사회복지는 구조적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사회복지 사무의 합리적 배분, 사회복지 재정과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권의 출발점은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을 분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체계를 전제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에 대한 현황 정리, 중앙-지방의 복지사무 분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의 현황과 분담체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사무 현황을 정리하고, 사무분담체계 개선 방안 도출과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 분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사무조사,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활용한 복지사업 조사,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의견 수렴,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 제도개선 대안 제

시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 원과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복지재단의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동 연구로 진행하였다. 우리 원의 정홍원 연구위원이 총괄·책임을 담당하였으며, 부산복지개발원의 이신정 책임연구위원과 경기복지재단의 민효상 연구위원이 기관별 연구팀의 책임을 담당하였다.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과 협력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제시된 정책대안이 향후 사회복지 분권 추진과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7

제2장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 21

제1절 사무구분 연구 ····· 23

제2절 사무배분 연구 ····· 28

제3절 사무조사 연구 ····· 33

제3장 복지사무 현황과 분담체계 ····· 37

제1절 복지사무와 사무조사의 분석틀 ····· 39

제2절 복지사무 현황 ····· 44

제3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 62

제4장 복지사업과 중앙·지방 역할분담 ····· 75

제1절 복지사업 및 분담체계 분석틀 ····· 77

제2절 부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부산진, 사상, 기장 ····· 80

제3절 경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고양, 파주, 가평 ····· 116

제4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 138

제5장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 149

제1절 분담체계 개선의 방향성 ····· 151

제2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 155

제3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 15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6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165

제2절 정책 제언 ····· 170

참고문헌 ····· 173

부 록 ····· 179

[부록 1] 복지사무 목록 ····· 179

[부록 2] 복지사업 목록 : 부산 및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 ····· 304

표 목차

〈요약 표 1〉 복지사무 유형과 내용 ····· 5
〈요약 표 2〉 중앙·광역·기초의 역할에 근거한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 방안 ····· 7
〈표 1-1〉 사회복지 자치사무 예시 ····· 14
〈표 2-1〉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 24
〈표 2-2〉 계층단위별 관장 기능 판별기준 ····· 31
〈표 2-3〉 기존 사무조사에서 활용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방법 ····· 35
〈표 3-1〉 복지사무 현황 및 분담체계 분석틀 ····· 42
〈표 3-2〉 복지사무 조사의 대상 법률 ····· 43
〈표 3-3〉 사회복지의 원칙과 방향성 제시하는 공통사무 예시 ····· 67
〈표 3-4〉 복지사업 또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통사무 예시 ····· 68
〈표 3-5〉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 70
〈표 3-6〉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 72
〈표 3-7〉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 72
〈표 4-1〉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분류체계 ····· 78
〈표 4-2〉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81
〈표 4-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82
〈표 4-4〉 장애인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84
〈표 4-5〉 아동복지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86
〈표 4-6〉 보육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87
〈표 4-7〉 청소년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89
〈표 4-8〉 여성·가족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90
〈표 4-9〉 노인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92
〈표 4-10〉 지역복지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93
〈표 4-11〉 전달체계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 94
〈표 4-12〉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95
〈표 4-1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95
〈표 4-14〉 장애인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96

〈표 4-15〉 아동복지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98
〈표 4-16〉 보육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99
〈표 4-17〉 청소년복지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100
〈표 4-18〉 여성·가족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100
〈표 4-19〉 노인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101
〈표 4-20〉 지역복지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102
〈표 4-21〉 복지전달체계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 103
〈표 4-22〉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05
〈표 4-2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06
〈표 4-24〉 장애인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07
〈표 4-25〉 아동복지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09
〈표 4-26〉 보육 지원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10
〈표 4-27〉 청소년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11
〈표 4-28〉 여성·가족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12
〈표 4-29〉 노인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14
〈표 4-30〉 지역복지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15
〈표 4-31〉 전달체계 부문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 116
〈표 4-32〉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 117
〈표 4-33〉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중앙정부 복지사업 목록 ····· 118
〈표 4-34〉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 ····· 121
〈표 4-35〉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경기도 복지사업 목록 ····· 123
〈표 4-36〉 고양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 127
〈표 4-37〉 고양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 128
〈표 4-38〉 파주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 131
〈표 4-39〉 파주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 132
〈표 4-40〉 가평군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 134
〈표 4-41〉 가평군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 136

〈표 4-42〉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 구분 ····· 138
〈표 4-43〉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영역별 현황 ····· 139
〈표 4-44〉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단체별-영역별 현황 ····· 140
〈표 4-45〉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단체별-주체별-영역별 현황 ····· 141
〈표 4-46〉 경기 지역 3개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 영역별 현황 ····· 142
〈표 5-1〉 복지사무의 유형과 주요 내용 ····· 152
〈표 5-2〉 중앙·광역·기초의 역할에 근거한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 방안 ····· 159

그림 목차

[요약 그림 1] 중앙-광역-기초 복지사업의 보충적 관계 ····· 6
[요약 그림 2] 중앙·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 유형 ····· 8
[그림 4-1] 중앙-광역-기초 복지사업의 보충적 관계 ····· 145
[그림 5-1] 중앙·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 유형 ····· 162

부표 목차

〈부표 1-1〉 복지사무 : 기초생활보장 ····· 179
〈부표 1-2〉 복지사무 : 취약계층 ····· 185
〈부표 1-3〉 복지사무 : 장애인 ····· 188
〈부표 1-4〉 복지사무 : 보육·아동·청소년 ····· 214
〈부표 1-5〉 복지사무 : 여성·가족 ····· 248
〈부표 1-6〉 복지사무 : 노인 ····· 274
〈부표 1-7〉 복지사무 : 사회복지일반 ····· 287
〈부표 2-1〉 기초생활보장(1) ····· 304
〈부표 2-2〉 기초생활보장(2) ····· 305
〈부표 2-3〉 취약계층 ····· 306
〈부표 2-4〉 장애인(1) ····· 306
〈부표 2-5〉 장애인(2) ····· 307
〈부표 2-6〉 장애인(3) ····· 308
〈부표 2-7〉 장애인(4) ····· 310
〈부표 2-8〉 장애인(5) ····· 311
〈부표 2-9〉 보육(1) ····· 312
〈부표 2-10〉 보육(2) ····· 313
〈부표 2-11〉 보육(3) ····· 315
〈부표 2-12〉 아동(1) ····· 316
〈부표 2-13〉 아동(2) ····· 317
〈부표 2-14〉 아동(3) ····· 318
〈부표 2-15〉 청소년 ····· 319
〈부표 2-16〉 여성·가족(1) ····· 321
〈부표 2-17〉 여성·가족(2) ····· 322
〈부표 2-18〉 노인(1) ····· 324
〈부표 2-19〉 노인(2) ····· 325
〈부표 2-20〉 노인(3) ····· 326
〈부표 2-21〉 사회복지일반 : 지역복지 ····· 327
〈부표 2-22〉 사회복지일반 : 전달체계·행정 ····· 328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lfare affairs distribution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roject Head: Chung, Hong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affairs and programs through affairs survey and budget analysis. ② Analysis of status and problems about distribution system of welfare affairs and programs. ③ Suggestion reform alternatives of distribution system of welfare affairs and programs.

The reform of the distribution system is not only the rearrangement of welfare affairs and programs, but also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for the promotion of autonomy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contents of reform plan can be summarized in three categor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Second, most state subsidy welfare programs have to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Finally, duplicate affairs will be reduced, and individual and exclusive affairs will be expanded.

*Key words: Welfare affairs. Welfare programs. Local authority.

Co-Researchers: Kim, Hoeseong · Lee, Eunsol · Min, Hyosang · Jo, Bobae · Lee, Sinjeong · Nam, Chanseop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 연구 목적

○ 사무조사와 예산서 분석을 기반으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현황을 파악

-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을 시행주체별, 영역별, 대상자별로 구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토대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분담체계를 정리

○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정부 간 관계,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유형, 급여·서비스의 내용과 형태, 대상자 특성을 고려

□ 연구 내용과 방법

○ 행정사무와 복지사무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사무구분, 사무배분, 사무조사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조사, 분담체계 정리에 활용

○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조사 및 분담체계 정리

- 사회복지 분야 61개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복지사무의 목록을 정리하고 시행주체별, 영역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정리

- 부산과 경기 지역의 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복지사업의 현황과 분담체계를 정리

○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도출

- 복지사업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의견 수렴
-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및 면담조사(FGI)를 실시

○ 우리 원의 연구팀이 총괄하고, 부산복지개발원과 경기복지재단에 각각의 연구팀을 구성하는 기관 협동연구 방식으로 진행

- 1차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조사는 3개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
- 조사 결과 상호 대조,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목록 확정,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분류와 분담체계 정리는 3개 기관이 공동작업
-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은 우리 원 연구팀이,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은 부산과 경기 연구팀의 공동작업으로 산출

2. 주요 연구결과

□ 복지사무 현황과 분담체계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무는 총 1,368개 조문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8개 유형으로 구분(〈요약 표 1〉 참고)

○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 기준 설정, 실태조사, 인프라 구축 및 인력 등의 사무를 전담하며, 정책결정과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담당

○ 광역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결정, 사회복지 담당 인력 중 일부에 대한 자격증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를 전담

○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지급과 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등 집행사무 중심의 역할을 담당

〈요약 표 1〉 복지사무 유형과 내용

복지사무 유형	조문 수	복지사무 내용
①중앙·광역·기초 동일사무	521	사회복지 원칙·방향성 제시, 책임·의무 명시 사회복지 시책·사업·대책 등 강구 및 시행
②중앙·광역 동일사무	38	종합·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앙·광역 단위 사회복지시설·기관 설치 예방교육 및 일부 종사자 교육 훈련
③중앙·기초 동일사무	30	일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관련 정보 제공
④광역·기초 동일사무	138	지방자치단체 단위 위원회 구성·운영 일부 급여·서비스, 대상자의 변동 관리 일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리·감독
⑤중앙·광역·기초 개별사무	50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업무 서비스이용권(바우처) 관련 업무 운영 및 위탁 관리
⑥중앙 전담사무	363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시행계획 평가 실태조사, 급여기준 설정 및 급여적정성 평가 중앙기관 운영, 정보시스템, 전문인력 자격증 관리
⑦광역 전담사무	33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 광역단위 복지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감독
⑧기초 전담사무	195	급여의 신청접수, 조사, 결정, 지급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리·감독
합계	1,368	

자료 : 저자 작성.

□ 복지사업 현황과 분담체계

○ 복지사업 수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영역은 중앙 사업, 여성·가족과 노인 영역은 광역 사업, 그리고 지역복지와 전달체계 영역은 기초 사업의 비중이 높음

○ 보육 영역은 중앙 사업과 광역 사업이, 청소년 영역은 중앙 사업과 기초 사업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 남

○ 광역 사업은 중앙 사업을, 그리고 기초 사업은 중앙 사업과 광역 사업을 보충·보완하는 경우가 많음(〔요약 그림 1〕 참고)

〔요약 그림 1〕 중앙-광역-기초 복지사업의 보충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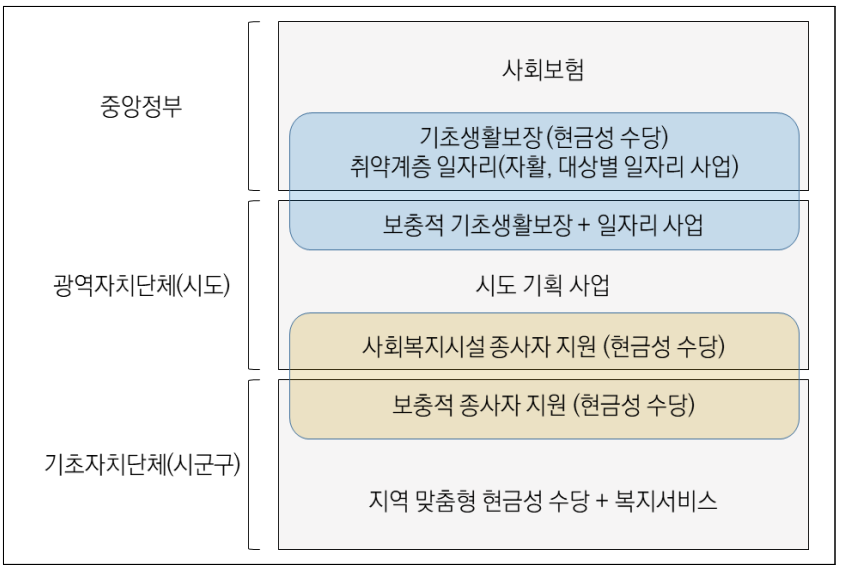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 방안

○ 중앙, 광역, 기초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전제로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개편(〈요약 표 2〉 참고)

○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중앙, 광역, 기초의 역할

- 중앙정부 : 급여·서비스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광역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
- 광역자치단체 : 관할구역 내 급여·서비스 공급량 조정·조율, 기초의 처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

- 기초자치단체 : 급여·서비스 신청 접수, 조사, 수급자 선정 및 관리, 급여의 지급과 관리

〈요약 표 2〉 중앙·광역·기초의 역할에 근거한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 방안

구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정책 결정·기획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 각종 실태조사 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분석·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역별 복지수요 파악 연구·분석·평가	관할구역 사회복지계획
정책 집행	급여·서비스 수준 설정 대상자 기준 설정 이의신청 검토·결정	관할구역 급여·서비스 공급(량) 조정 이의신청 검토·결정	신청접수, 조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급여 지급 및 변동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변동 관리
복지 재원	재원 총량 결정 재원 조달	재원 분담 관할구역 내 재정조정	재원 분담
기반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 보호·관리	개인정보 보호·관리	개인정보 보호·관리
법인·시설·기관	중앙 단위 전담기관 운영	법인·시설의 개폐 제공기관 인증/인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관리
인력	전문인력 자격 관리	담당인력의 수급 종사자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관리	시설 종사자 임면

자료 : 저자 작성.

□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방안

○ 복지사업의 유형에 따라 현재의 국고보조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 또는 지방으로 이양(〔요약 그림 2〕 참고)

- 유형 1과 유형 2 : 국가사업으로 전환
- 유형 3 : 국고보조사업(중앙 재원 분담, 지방 집행)을 유지
- 유형 4 :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치사무로 전환

〔요약 그림 2〕 중앙·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 유형

국가적 공공재	**유형1** · 소득보장 · 의료보장	**유형3** · 고용지원/일자리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방적 공공재	**유형2** · 아동수당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유형4** · 아동/노인 돌봄서비스 · 가족지원 · 복지시설 운영
	형평성/적절성	유연성/대응성

자료 :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 (2009); 김광병. (2018)의 논의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결론 및 정책제언

□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를 개선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이자 핵심

○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필요

○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일부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과 병행 추진

○ 중복적 동일사무를 축소하고, 개별사무와 전담사무를 확대

□ 시사점과 제언

○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

○ 중앙, 광역, 기초의 담당사무 개편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추진

○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의 집행 절차의 명료화 및 일관성을 제고

○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

○ 단기적 추진이 아닌 중·장기적 추진이 필수

*주요 용어: 복지사무, 복지사업, 복지분권, 지방자치단체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 이후, 역대 정부들은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에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추진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압도하였다. 사회복지사업 분권화는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에 추진된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에 중앙정부 복지사업은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집권적 방식의 복지사업 추진 경향성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순적 결과로 귀결되었다(정홍원, 김보영, 민효상, 이정은, 2019, pp, 159-160).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 추진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강조하는 분권화는 급여 형평성과 전국적 기준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적 속성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 복지사무의 합리적 배분, 복지재정 그리고 복지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지분권의 출발점은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을 분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현황을 정리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체계를 전제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표 1-1〉과 같이 배타적 구분이 아닌 자치사무의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1] 되어 있다.

〈표 1-1〉 사회복지 자치사무 예시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주민복지 상담 4)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1)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1)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1)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제보호비 지급 등) 4)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1) 복지사무 중에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라. 노인·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서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6)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 9)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1)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1)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아동보호조치 8)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5)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아동보호조치 9)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0)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1)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장애인의 고용 촉진 13)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2)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장애인의 파악·관리 14)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장애인의 고용 촉진 16)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16)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7)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 단위) 18)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18)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 19)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20)불우청소년보호 21)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23)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3)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24)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여성단체 육성·지원 26)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25)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여성단체 육성·지원 32)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별표 1]

또한 복지사무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없었으며, 기존의 사무조사는 일정한 주기 없이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게다가 기존의 사무조사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를 추출하여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개편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분담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무의 계층성과 연결성, 사무의 분류기준, 중앙-지방의 역할분담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사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사실상 없다.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규범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사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사무 현황 정리와 중앙-지방 사무분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의 현황, 분담체계에 관해 본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사무 현황을 정리하고, 사무분담체계 개선 방안 도출과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첫째, 사회복지 분야의 법률을 기반으로 복지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복지사업 조사는 해당 기관의 「세출예산명세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별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또한 사회복지 부문 및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분담체계를 정리할 것이다. 넷째,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광역-기초 등의 정부 간 관계,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유

형, 급여·서비스의 내용과 형태,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무 및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복지사무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기존 연구 대상은사무구분과 사무배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무구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무의 성격과 종류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배분은 사무의 담당 주체 또는 집행기관별로 사무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사무에 관한 별도의 이론적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사무구분과 사무배분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수행된 사무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무조사의 방법과 절차, 사무의 분류체계, 그리고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조사에 활용하였다.

2.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조사

복지사무 조사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단위사무를 추출하고,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법령상 규정에 따라 추출된 복지사무를 법률의 조 단위로 정리하고, 이를 중앙-광역-기초의 수행 주체별로 분류한다. 또한 복지사무를 사회복지 부문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기능별·대상별로 체계화한다.

복지사무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복지사무 조사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소관 법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가 있는 61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2020년 7월 1일 현행 법령으로 한다.

복지사업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무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통사무에 해당한다. 공통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사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따라서 복지사업 조사는 복지사무 조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복지사업 조사는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세출예산명세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세출예산명세서」에서 추출한 내역 사업 단위의 복지사업을 사업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 광역자치단체 사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구분한다. 또한 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세분화하여 사회복지 부문별·대상별로 구분하여 복지사업 분담체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복지사업 조사는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의 총 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병행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행정체계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는 ①특별·광역시-'자치구', ②광역시-'군', ③도-'시', ④도-'시'-행정구, ⑤도-'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산과 경기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한 이유는 5개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앙-지방의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조사 및 분담체계에 관한 분석을 통해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담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 방안은 분담체계 개편의 방향성, 복지사무 개선 방안, 그리고 복지사업 개선 방안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분담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전 준비회의와 자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전반의 분담체계,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그리고 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에 어려움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 연구자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와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조사 착수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FGI는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진행하였다. 담당공무원의 의견 수렴은 부산과 경기의 연구자들이 복지사업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면담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4. 기관 협동연구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조사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련 법령과 각종 정책자료, 그리고 현장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시

간과 인력이 든다.- 조사와 분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총괄-하고, 복지사업 조사 사례로 선정한 지역의 2개 기관, 즉 부산복지개발원과 경기복지재단에 각각의 연구팀을 구성하는 기관 협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법령에 근거한 1차 복지사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팀이 담당하였다. 6개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명세서를 활용한 1차 복지사무 조사는 부산복지개발원과 경기복지재단이 담당하였다. 복지사무 조사의 1차 결과와 복지사업 조사의 1차 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을 연결하여 확인하는 작업은 3개 기관 연구팀의 공동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상호 대조를 통해 산출된 2차 복지사업 조사의 결과는 6개 기초자치단체의 발간자료와 대조, 담당공무원의 확인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복지사업 목록을 확정하였다.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목록을 확정한 이후에 3개 기관의 연구팀이 협력하여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을 담당기관별로 그리고 분야 및 부문별로 분류하여 분담체계를 정리하였다. 이후에 복지사무의 분석과 분담체계 개선 방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리고 복지사업의 분석과 분담체계 개선 방안은 부산복지개발원과 경기복지재단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사무구분 연구
제2절 사무배분 연구
제3절 사무조사 연구

제 2 장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사무구분에 관한 연구와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사무구분과 사무배분이란 용어는 혼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무구분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한편- 사무배분은 입법자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 사무의 수행 주체별 또는 사무의 집행자별로 법령상 또는 실무상 사무를 배치하는 개념이다(최봉석, 2015, p.71). 사무구분과 사무배분은 분석적으로 구분-되지만 별개의 개념은 아니다. 사무를 구분하는 형식과 내용은 사무배분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안영훈, 2009, pp.151-152).

제1절 사무구분 연구

행정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사무는 다시 국가전담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이하 지방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이며, 후자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2]. 또한 법령에는 없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수행하는 공동사무가 있다(김필두, 김병국, 금창호, 이병기, 주재복, 강기홍, 김지현, 2009, pp.29-31).

---

2)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국가전담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이 있다[3].

〈표 2-1〉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9조 1항 전단 및 2항 • 동법 제103조	• 지방자치법 9조 1항 후단 및 2항 • 동법 제103조	• 지방자치법 102조, 104조, 108조 • 정부조직법 6조 1항
경비부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조할 수 있는 사무(지방자체지원 + 국가 장려 보조금)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지방자체 재원+국가 부담금)	전액 국비보조로,서 교부금 성격을 가진 - 사무 (국가전액부담)
국가 감독	• 소극적 감독(합법성) • 법률에 규정된 감독 수단에 한정 • 행정안전부, 시·도지사	• 소극적 감독 및 제한된 범위의 감독 • 법정수단+지시 등 • 주무부처	• 소극적 감독과 적극적 감독(합법성+합목적성) • 취소 정지, 지시 등 • 주무부처
지방의회 관여	허용	허용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한해 관여
단체장 지위	자치단체 기관적 지위	자치단체 기관 + 간접적 국가기관적 지위	국가기관적 위치

자료 : 한부영, 박재희. (20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1; p.26.

3)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지방사무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자치사무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와 유사하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를 의미한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사무구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은 이러한 사무의 정의와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으며, 현행 개별법에서는 사무 처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임승빈, 이기우, 한부영, 2008, pp.109-113).

대표적으로 안영훈(2009)은 사무구분 체계를 규정한 법령상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정부가 「법령상 사무총조사」에서 활용해 왔던 단위사무 설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법령상 사무총조사」에서 단위사무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시행할 때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어 사무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지방자치법상 지방 사무를 나타내-는 사무 용어 및 명칭과 실제 사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인식할 수 있으나 명목적 용어만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셋째, 자치사무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상 규정된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자율적 재정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표현상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사무들이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를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넷째, 위임사무의 개념 및 법적 근거의 모호하다는 점이다.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되고, 개별 법의 법문 표현으로 구분하게 된다.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라는 법적 표현으로 구분되는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상 규정 내용에서 대립적인 측면이 있다.

끝으로, 개별 법령상에서 사무 구분을 나타내는 법문 표현의 통일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령상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문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다(안영훈, 2009, pp.151-156).

사무의 정의와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생긴다. 국가사무와 위임사무, 자치사무의 구분이 모호하면 사무 처리의 주체가 모호해지고 이는 책임의식을 약화시켜 사무처리 주체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임승빈 외, 2008, p.27). 또한 모호한 위임사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하는 경향이 생겨 지방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방자지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된 고유사무의 처리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안영훈, 2009, p.156).

이러한 이유로 사무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4]은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최흥석·금창호·육동일·김태영·김익식(2008)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사무구분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상 '자치사무' 개념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사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관련 조항, 사무위임 및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부담 기준 및 원칙 등에 관한 조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 자치사무 개념을 확대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를 적극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가사무 외에 것을 가능하면 자치사무로 정하도록 하는 것, 단체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지방의회의 관여 등 자치사무로 간주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치사무로 간주하고 단체위임사무 구분은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열거적 예시를 폐지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비하는 것, 국가사무와 시·도사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치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 단체위임사무를 폐지 및 위임사무로 일원화하고 위임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변경하는 것, 모호한 성격의 공동사무가 남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사무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 재정 지원 및 비용 부담 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최흥석 외, 2008, pp.114-124).

임승빈 외(2008)에서는 유사한 맥락에서 사무체계 개선 대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검토했다. ①제1안 :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한 수임사무로 구분하는 방안, ②제2안: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는 방안, ③제3안: 현행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국가사무로 환원시킬 것은 환원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사무로 처리하여 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방

4) 사무구분과 사무구분체계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위임사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 수임사무 신설을 추진하였다. 법정 수임사무란 기관위임사무 중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2.5.29.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안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사무가 대부분 기관위임사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자가 사실상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론적 구분의 필요성과 실익이 없으므로 제1안을 사무체계의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임승빈 외, 2008, pp.116-137).

제2절 사무배분 연구

사무배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배분을 의미하며, 지방자치권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사무,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책임·의무 및 이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권 등을 기초 자치단체 또는 광역 자치단체 어느 한쪽에 양도(지방이양)하는"(최흥석 외, 2008, p.91)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사무배분과 관련된 연구의 주된 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사무이양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에 관한 논의로 대별해볼 수 있다.

역대 정권별로 추진해왔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문제점은 최흥석 외(2008)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첫째, 단위사무의 명백한 기준이 결여된 채 법령상 최소단위의 개별사무를 단위사무로 정의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해왔다. 최소수준의 단위사무가 기능이양의 대상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양의 기준이 되는 단위사무의 수준을 규정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단위사무 설정의 문제로 인해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핵심적 권한을 제외한 단순

집행적 사무를 중심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졌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의 형식적인 운용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넷째, 사무배분의 원칙 준수가 미흡해 중앙·광역·기초 관계에서 광범위한 지도 및 감독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불명확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졌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중복으로 인하여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이 여전히 어렵고 권한쟁의 등과 같은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행·재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졌다. 그간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이 이루어졌지만, 위임사무에 관한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의 경비부담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여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연계가 미흡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야기했다(최흥석 외, 2008, pp.87-102).

사무이양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반됐다. 최봉석, 조성규, 최환용, 박재윤, 김도승, 윤석진, 구지선(2015)은 현지성의 원칙·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행정능률의 원칙·사회적 형평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이념에 따른 원칙과, 전권한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에 관한 판례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법상의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기초사무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수정·보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광역사무와 기초사와 관련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사무와 관련해서 총 6개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①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성질의 사무, ③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⑥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이다. 기초사무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①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로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단,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사무 중 일부 직접 처리), ②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로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의 2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최봉석 외, 2015, pp.159-177).

앞서 언급한 개별 단위 사무 중심의 이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조되어 왔던 것은 포괄적·일괄적 이양의 적용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공식적으로 표방되어 왔음에도 지금까지는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던 이 원칙은, 현 정부에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의 본격적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자치분권위원회, 2018, p.4).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지방자치학회(2018)에서는, 지방이양에 관한 판단을 위한 적정 기능단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3가지 분류 기준을 검토했다. ①대기능(실국 수준)-중기능(과팀 수준)-소기능(담당 수준) 등으로 구분되는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직제 분류 기준, ②정책분야(17개 분야)-정책영역(76개 영역)-대기능(실국 수준의 528개)-중기능(과 수준의 2,926개)-소기능(법적 근거로 한 12,430개) 등으로 구분되는 BRM (Business Reference Model), 그리고 ③일반적으로 장과 절, 조로 구분되는 법률의 단위 분류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FGI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한

기준단위를 기존의 단위사무에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기능의 적정계층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직제 분류 기준을 적용하며, 적정 기능계층으로는 담당을 채택할 것을 권고 하였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pp.151-161). 그다음으로, 〈표 2-2〉에서와 같이 법적 기준에 기초하되 담당단위에서 국가기관의 계층별 배분 특성을 고려한 판별기준을 구체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pp.169-170).

〈표 2-2〉 계층단위별 관장 기능 판별기준

구분		내용
광역 기능	판별기준	〈일반적 기준〉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기능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능 - 국가와 시군구 사이의 연락조정 기능 -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한 기능 - 2개 이상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 규모의 기능
		〈시도 단위의 통일성/경제성/효율성/주민대응성〉 -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기능 - 사무의 기능이 전 시군구 즉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 - 시도 관할의 시군구를 조정/통합하는 기능 - 전 시군구의 사무적 통일성을 이루어 처리해야 하는 기능 - 광역적 규모의 경제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 - 시군구의 통제와 평가에 관한 기능 - 시군구별로 배치할 수 없는 전문적 기능 - 광역행정 차원에서 전문적 처리능력이 요구되거나 처리가 가능한 기능 - 시구군별 업무량 차이가 심한 기능 - 시군구 개별적 재정투입보다는 광역적 재정투입이 보다 경제적인 기능 - 주민대응성 측면에서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능
	예시	- 광역계획(사회복지시설 수요 판단 및 지역별 배치, 시군구 보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전염병예방 종합대책 수립,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지역산림 계획 수립, 도립공원 계획 결정 및 고시, 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소방 기본계획 수립)
기초 기능	판별기준	〈일반적 기준〉 - 시도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에 관한 기능 -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기능

구분		내용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기능 -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 시설에 관한 기능 -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능 - 지역민방위에 관한 기능
		〈시군구의 현지성/경제성/효율성/주민대응성〉 -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 - 영향력이 직접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기능 -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중에서 시도의 자치사무로 구분되지 않은 기능 -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능 - 주민편익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능 - 국가와 시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
	예시	-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장애자/청소년/부녀보호, 생활보호자지원, 보건진료 기관, 전염병 예방 및 방역, 묘지/화장장, 위생 및 청소, 농림수산상공 등 산업 진흥, 산업용수시설,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영농지도, 지역 특화산업 개발, 소비자 보호, 지역개발, 생활환경시설, 교육/문화/체육/관광/예술진흥,지역민방위 등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기능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연구**. 서울: 자치분권위원회. pp.169-170.

한부영, 박재희 (2019)는「법령상 사무총조사」결과에 기초해 귀납적 방식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국가사무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7개 국가사무 기준에 ①소수그룹 또는 소수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무, ②고도의 정책적·정치적·전문적 판단과 집행력이 필요한 사무를 추가하고, 현행 6개 시·도 자치사무 기준에서는 ①전국적 규모의 사업이지만, 지역적 경계가 광역과 일치하는 사무, ②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를 추가했다. 현행 1개 기준의 시·군·구 기준에서는, ①복수의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지만, 1개 시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상생발전), ②주민 복리 증진이 필요한 사무, ③국가와 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④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한 사무, ⑤주민 편익을 위해 시군구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 5개 기준을 추가했다(한부영, 박재희, 2019, p.139).

이상의 사무배분의 적정 단위와 원칙 및 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논의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무의 배분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여전히 추상성이 높다. 복지사무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규범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간 주로 개별 법령 분석에 기초해 중앙 및 지방의 사무배분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식품안전사무(황윤재, 이희정, 한재환, 2010; 박재희 2019), 환경사무(박해룡, 이종열, 2001), 체육사무(오연풍, 2012), 농정사무(문유석, 2015), 문화사무(박혜자, 오재일, 2003)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복지사무에서는 노인복지사무에 국한해 사무분담 방안을 모색한 김필두, 한부영(2017)의 연구를 제외하면 관련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중앙 및 지방, 광역 및 기초의 복지사무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복지사무의 구분 및 배분 체계의 쟁점과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3절 사무조사 연구

기존의 사무조사는 단위사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행정기능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총무처,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2002; 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단위사무란 “모든 법령상 각각의 조문을 기반(단위)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위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등 법령상의 처리권자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 의무가 발생(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7, pp.24-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pp.8-9). 사무조사의 단위사무는 각 법령상 하나의 조·항·호를 기본단위로 추출하게 된다. 단위사무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조문이 반드시 하나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2개 이상의 조문이 연계되는 사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하나의 조문에서 해당 사무의 처리권자가 둘 이상일 수도 있으며, 주된 사무와 부수적 사무 및 단서적 사무가 혼재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위사무의 개념은 '사무조사와 분석의 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혹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범주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봉석 외, 2015, p.30). 단위사무의 개념과 법령상 추출 기준에 관한 논란은 행정사무를 정량화하는 경우에 중요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의 내용 파악과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을 분석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령의 조문을 기준으로 단위사무를 추출하고, 해당 사무를 기능별, 영역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조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해당 단위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단위사무의 기능분류 방식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은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며 1994년, 2002년 그리고 2009년 사무조사에서 활용되었다. 그런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대별하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반면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세분하는 방법에는 차이를 보인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2002년, 2009년의 사무조사에서 사무를 구분하는 체계가 상이하다.

〈표 2-3〉 기존 사무조사에서 활용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방법

1994년 사무조사[1]	2002년 사무조사[2]	2009년 사무조사[3]
국가수행사무 - 국가직접수행사무 -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 부속기관수행사무 - 민간위탁사무	국가사무 - 중앙부처사무 - 특별행정기관사무 - 산하기관/소속기관사무 - 민간위탁사무	- 국가사무 :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 국가위탁사무 - 단체위임사무 : 광역사무, 기초사무, 기초재위임사무, 국가위임공동사무 - 기관위임사무 : 광역사무, 기초사무, 기초재위임사무, 국가위임공동사무 - 공동사무 : 국가광역기초공동사무
지방수행사무 - 지방고유사무 - 기관위임사무	시도사무 - 시도자치사무 - 국가사무의 시도위임사무 - 국가/시도사무 시군구사무 - 시군구 자치사무 - 국가사무의 시군구위임사무 - 국가사무의 시군구재위임사무 - 시도자치사무의 시군구위임사무 - 국가/시군구사무 시도/시군구사무 - 시도/시군구사무 - 국가사무의 시도/시군구사무 - 국가/시도/시군구사무	- 광역자치단체 자치사무 : 광역사무, 광역위탁사무, 광역위임사무, 광역공동사무 -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 : 기초사무, 기초위탁사무, 기초위임사무, 기초공동사무

자료: 1) 총무처(1994). **중앙-지방사무 총람.** 서울: 총무처.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2002). **부처별 단위사무목록: 제1-4권.**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법령상 사무총조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하위체계가 상이한 이유는 위임사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지방사무에 속하게 된다. 한편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구분되기도 한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하위체계 구성에서 논란이 있는 또 다른 이유

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하는 것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무로 사무 처리 측면에서 자치사무와 동일하고[5], 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방식(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이다. 한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근거로 하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집행)를 대행하는 방식의 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에 속하게 되며, 이 경우 국가는 필요한 경비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해야 한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사무인지 또는 자치사무인지 구별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복지사업의 재정분담을 둘러싸고 보조사업인가 아니면 자체사업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복지사업에서 중앙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

5)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으며, 제22조에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특히 단체위임사무의 구별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복지사무 현황과 분담체계

제1절 복지사무와 사무조사의 분석틀
제2절 복지사무 현황
제3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제 3 장 복지사무 현황과 분담체계

제1절 복지사무와 사무조사의 분석틀

1. 복지사무

복지사무란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사무를 지칭한다. 따라서 복지사무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범주를 설정하고, 또한 행정사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복지 개념과 범주에 관한 학술적 또는 이론적 관점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행정사무와 관련해 사회복지 분야의 범주를 설정할 때는 국가 행정 기능에 대한 실무적 관점의 개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실무적 관점의 개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회복지 개념 또는 범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으나, 가장 유사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6]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과 동일한 범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와 동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31개 법률에 의해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6)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따라서 사회복지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 서비스 및 급여 제공, 그리고 관련 복지시설의 운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정사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무란 '자신이 맡은 직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행정사무는 특정 직책을 맡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해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복지 범주와 행정사무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지사무란 ①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②사회복지사업을 통한 급여·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③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복지사무 조사의 분석틀

이 연구의 복지사무 조사는 조사 영역을 사회복지 분야로 설정한것을 제외하고, 기존의 사무조사와 동일한 방식과 절차를 활용하였다. 사무조사는 현재의 행정안전부의 주관하에 199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2000년대에는 전체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실태분석 또는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기존 사무조사의 결과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존 사무조사의 사무구분체계를 활용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방식은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복지

사무 조사에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복지사무 조사는 단위사무를 계량화하여 정량적으로 집계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복지사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역할과 업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분담체계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앙정부 담당사무, 시·도 담당사무, 시·군·자치구 담당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기존 사무조사에서 단위사무를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국가정책 분야별 기능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994년 총무처 사무조사에서는 정책부문별로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3개로, 그리고 정책분야별로 11개 관련 부처를 외교국방(통일, 외무, 국방, 병무), 국내질서유지(내무, 법무, 경찰, 검찰), 정책조정(총무, 법제, 조달), 그리고 정부운영분야로 구분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2002)이 수행한 사무조사에서는 일반 행정, 외교·안보, 재정·금융, 산업·기술, 사회간접자본(SOC), 농림·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및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1994년과 2002년 사무조사는 국가정책의 기능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09년 사무조사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분류체계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당시 지방예산 분류표의 대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외교국방통일, 그리고 기타 등 14개의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특히 사회복지사업 영역으로 한정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무조사에서 활용한 기능분류체

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능별 분류(부문)에 근거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표 3-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의 기능별 분류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보육·아동·청소년, 여성·가족, 노인, 그리고 기타 복지일반 등 7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복지사무를 수행 주체에 따라 중앙사무, 광역(시·도)사무, 기초(시·군·구)사무로 구분하였다.

〈표 3-1〉 복지사무 현황 및 분담체계 분석틀

	중앙사무	광역(시·도)사무	기초(시·군·구)사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장애인			
보육·아동·청소년			
여성·가족			
노인			
기타 복지일반			

자료: 저자 작성.

복지사무 조사는 이전의 사무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조사하였다. 법률의 조·항·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추출하여 법률의 조 단위로 정리하고 중앙사무, 광역사무, 그리고 기초사무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 법률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소관 법률 중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의 사무 분담체계를 분석·정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가 없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복지사무 조사는 〈표 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1개 사회복지 분야 법률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3-2〉 복지사무 조사의 대상 법률

소관	법령명(약칭)
보건복지부(3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고령친화산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후준비 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설미성년후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기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급여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동빈곤예방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입양특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아동복지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효행장려법)
여성가족부(21)	건강가정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성별영향평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활동법),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
국토교통부(1)	주거급여법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복지사무 현황

복지사무 조사는 사회복지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단위사무를 추출하였다. 법령상 하나의 조에서 하나의 단위사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2개 이상 복수의 단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조 이하의 항·호 단위 규정에서 복수의 단위사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법률 조항에 따른 복지사무 추출과 정리는 단위사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법률 조항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다.

단위사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항의 가장 하위수준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사무를 기능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의 주체별로 담당사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가장 상위수준인 조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복지사무를 법률의 조 단위로 통합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복지사무의 내용과 사무분담체계 현황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또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복지사무의 대상별·기능별 분류는 ①기초생활보장, ②취약계층 지원, ③장애인, ④보육·아동·청소년, ⑤가족·여성, ⑥노인, 그리고 ⑦사회복지일반의 7개 부문이다.

1.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분야의 법률 내용에 따른 복지사무는 61개 법률의 총 1,368개 조문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복지사무는 73개

조문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복지사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사무와 개별 법령으로 구분되어 있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 관한 사무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복지사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급여의 종류와 기준 설정,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 등 기초보장 급여 설계, 기준 설정,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급여 신청 수리, 신청에 따른 조사, 급여 결정과 지급 및 관리, 수급자 변동사항 처리, 가구별 지원계획 수립과 급여 실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설정한 급여에 대한 추가적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재량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복지사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금 적립, 수급자·차상위자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촉진 교육, 의료급여 사례관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주거급여 실시 비용 부담 등이 있다. 이러한 복지사무가 위임사무인지 또는 공동사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주거급여 비용부담의 경우 공동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사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담당·시행할 수 있는 사무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의 집행 관련 복지사무는 대부

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며,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광역과 기초의 담당사무는 동일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추가 급여의 실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수급자 소득 등 변동에 따른 급여 변경, 급여의 중지,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거급여 실시,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등이 있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복지사무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역자치단체는 시군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결정, 광역자활지원세터 지정, 의료급여기금 설치·조성과 관리·운용 등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 구분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독특하게 '보장기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호에서 '보장기관이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서는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교육급여의 경우는 시·도 교육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분담의 결과로 교육급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시하며,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보장 급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 지역에 광역과 기초라는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동일 지역에 한 개의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의 역할과 기초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고, 복지사무 분담체계와 관련하여 시도와 역할과 시군구의 역할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복지사무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담당사무,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고 모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취약계층

취약계층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복지사무는 긴급복지지원, 노숙인복지, 그리고 의사상자 지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된 복지사무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복지사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종류와 기준 설정은 중앙정부 담당사무이다. 한편 대상자 발굴 및 선정, 급여 실시, 급여 관리, 현장 확인 등의 집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이다. 특이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의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이의신청 접수와 시정조치에 한정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 집행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숙인복지 관련 사무는 전형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의 담당사무 구분과 역할 분담이 모호한 영역이다. 노숙인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 확인 및 평가,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등의 복지사무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있다. 한편 노숙인복지 분야 복지사무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의사상자 지원 관련 복지사무는 대부분 중앙정부 담당사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는 의사상자 결정·변경을 위한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이의신청 결정, 보상급 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있다. 다만, 의사상자에 대한

급여 중에서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 다른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실시한다.

3. 장애인

장애인 부문은 전체 1,368개의 복지사무 조문 중 287개 조문의 복지사무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복지사무 비중과 복잡성이 매우 높다. 장애인 부문 복지사무를 세분하면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인의료, 보조기기, 편의증진,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차별금지, 생산품우선구매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장애인복지 영역의 복지사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영역의 복지사무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분담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사무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설정, 발달장애 연구와 의료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설정 등의 사무에 한정되며,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사무는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사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업무 정지, 지정 취소가 있다. 나머지 발달장애 영역의 복지사무 대부분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구분이 없이 복지사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아동 영역 복지사무는 발달장애 영역과 유사한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분담체계를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담당사무가 적고, 기초자치단체 담당사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사무로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금융정보 제공 요청이 있으며, 광역자치

단체 전담사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전담사무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복지지원 제공기관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운영 등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집행 업무가 있다. 특이한 점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전담사무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장애인의료, 편의증진, 보조기기 등 3개 영역의 복지사무는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복지사무를 설정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사무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사무는 지급 의료비 전부/일부 환수가 유일하다. 한편 중앙정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항목 설계,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개발사업, 건강보건통계사업, 건강보건정보사업,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보조공학사 자격 관리, 보조기기 기본계획 수립, 보조기기 서비스 사례관리, 편의시설 설치·운영 총괄, 편의시설 인증기관 지정 등 상당한 복지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료, 보조기기, 편의증진 영역의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중심 체계라는 특징을 보이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가 상대적으로 적다.

장애인 부문 중 장애인복지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복지사무의 복잡성이 높고,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부문의 복지사무는 287개 조문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 영역은 90개 조문으로 양적으로 전체의 30%를 상회한다. 장애인복지 영역의 복지사무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장애인정책의 결정, 장애인 지원 시책, 서비스 제공 인력,

그리고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 결정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로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장애인 지원 시책과 관련된 복지사무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의 분담이 없으며, 해당 사무의 담당 주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시책을 강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노력한다"는 형식으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시책의 방향성 또는 원칙을 제시하는 사무와 특정한 복지사업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동일한 내용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해당 사무는 공동사무로 해석하기 곤란하며, 국가사무인 동시에 자치사무가 되는 모순을 초래한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이러한 사무에 해당하는 복지사무는 50여 개 조문으로 전체의 절반을 상회한다.

장애인 지원 시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규정하는 복지사무가 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력 중에서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재활상담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인력에 관한 복지사무는 대체로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한 복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영역의 복지사무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 영역은 내용적으로 장애인복지 영역에 포함할 수 있으나, 장애인 지원 시책 중에서 비중이 큰 사업이고 별도 법

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 영역의 복지사무는 전형적인 위임사무의 형태를 보인다.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설정, 급여 비용 산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복지사무는 중앙정부가 전담한다. 한편 급여 신청, 신청에 따른 조사, 수급자 선정, 급여 지급 또는 서비스 제공, 급여·서비스의 변동 관리, 활동지원기관 지정, 지정 취소, 휴폐업 관리, 평가 등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의 집행에 관련된 복지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부재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장애인 부문 중 차별금지 영역의 복지사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추상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차별금지에 관련된 복지사무는 급여, 지원 시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제, 업무추진 절차 등과 같은 규정은 없다.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사무 내용을 제시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추상적 수준의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하는 복지사무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영역의 복지사무는 장애인복지 부문의 다른 영역과 달리 전형적인 국가사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구매 촉진 지원 및 시책 추진, 생산시설 설치·운영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복지사무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있다.

4. 보육·아동·청소년

보육 및 아동·청소년 부문은 생애주기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출생에서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교육 단계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포괄한다. 이 부문의 사회복지제도 현황을 고려하면 아동과 청소년 영역을 구분하고, 아동 영역은 다시 돌봄·보육과 아동복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아동·청소년 부문의 복지사무는 아동복지, 보육, 그리고 청소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가. 아동복지

영유아와 아동은 의존적 존재로서 위험에 처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나 제도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위험에 처한 영유아와 아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아동후견, 실종아동과 입양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동의 후견인 지정은 민법으로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설 입소자 아동으로 다른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복지사무가 있다.

실종아동과 관련된 복지사무는 주로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는 제한적이다. 입양 지원과 관련된 사무는 입양(알선)기관에 관한 사무와 입양 아동 또는 가정에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 구분된다. 입양지원 관련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하는 병렬적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후견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이고, 실종아동 지원은 중앙정부 중심이며, 입양 지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담당사무로 설정되어 있다.

아동복지 영역의 복지사무는 제도별 또는 기능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급여 내용과 수준 설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같이 정책결정과 인프라 구축 관련 사무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와 권리 옹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 설정, 포괄적 사업 역시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사무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아동 보호조치의 실행, 지원 및 급여 제공,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집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사무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집행 업무 관련 복지사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한 복지사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담당사무가 사실상 없고,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수당 신청 접수, 지급 결정 및 지급, 아동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급여 관리, 이의신청 시정 등 아동수당 전반의 집행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사무이고, 아동수당 관련 복지사무에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시군구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나. 보육(돌봄)

보육 영역의 복지사무는 동일한 내용의 사무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로 설정하고 있는 병렬적 나열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보육 영역의 복지사무에 관한규정은 80개 조문이며, 이 중 45개 조문에서 중앙, 광역, 기초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이다. 병렬적 나열 형식의 사무규정은 일반적으로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육 영역의 복지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복지사무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자격증 교부와 자격 검정,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보급 및 수정·보완, 어린이집 평가 등이 있다. 이는 보육 영역에서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평가, 기준 설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변경 인가, 보육교직원 임면,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와 제공시간 선정,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지정과 변경 승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서비스 제공과 제공기관 관리 등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육 영역의 복지사무가 병렬적 나열 형식의 비중이 높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사무 내용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구분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전담사무는 보육료와 필요 경비의 기준 설정,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지정 취소 등 2개에 불과하다.

다. 청소년

청소년 영역의 복지사무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지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복지사무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등으로 내용을 세분화할 수 있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에 관련된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중심의 분담구조를 보인다.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는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가 유일하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시군구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유해매체 신고 수리와

포상에 관한 전담사무와 청소년 보호 시책의 집행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관련 복지사무는 실태조사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중앙정부 전담사무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무들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담당하는 병렬적 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복지사무는 보육 영역의 복지사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 지원 관련 복지사무는 총 123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53개 조문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무가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조문의 비중이 높으나, 나머지 조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무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담사무는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 부여 등 자격 관리,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평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등 27개 조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평가 및 인증, 기준 설정, 전문인력 자격 관리 등의 복지사무를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 전담사무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인가와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등의 2개 사무에 불과하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신고 수리, 시설 개선·사업정지·시설장 교체 등의 명령, 수련시설 운영 및 변경 등록, 청소년 수련지구 지정 등 주로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전담사무로 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복지사무는 병렬적 나열 형식의 비중이 높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또한 복지사무

내용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5. 여성·가족

여성·가족 부문의 복지사무는 피해자 보호, 가족 지원, 그리고 여성 등의 3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복지사무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이며, 가족 지원은 가족친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건강가정 지원 등과 관련된 복지사무이며, 마지막으로 여성 관련 복지사무는 성별영향평가, 여성 고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 부문의 262개 조문의 복지사무 중 95개 조문으로, 전체의 약 1/3의 비중을 보인다. 피해자 보호 관련 복지사무는 사무 내용과 중앙·지자체 역할이 상관성을 보인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복지사무는 정책결정, 예방을 위한 교육, 피해자 지원 사업 그리고 관련 시설 및 단체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결정 및 예방 교육과 관련한 복지사무는 주로 중앙정부 전담사무 혹은 담당사무로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있다. 한편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신고 수리, 감독, 업무정지 명령, 인가 취소 등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구의 전담사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및 각종 시책에 관련된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의 담당사무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관련 복지사무에 속하면서 특수한 영역에 해당하는 복지사무로는 위안부피해자 지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 우선 임대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경비 보조 등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사무는 내용적으로 중앙정부 전담사무라 할 수 있다.

가족 지원 영역의 경우 가족친화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지원의 2개 부분의 복지사무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가족친화 관련 복지사무는 주로 인증, 계획 수립, 환경조성 등의 업무를 다루며, 이러한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중심 체계의 분담구조를 보인다.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가족친화 지수,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 등의 복지사무를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는 없다.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복지사무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사무는 85개의 조문에 해당하는데 이 중 58개 조문에서 중앙, 광역, 기초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전담사무는 없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조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복지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지원 영역의 복지사무는 일부 중앙정부 중심의 분담구조와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모호한 사무 분담구조로 되어 있다.

여성 관련 복지사무는 여성고용 지원,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양육비 이행 지원 등을 포함한다. 여성고용 지원과 양육비 이행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무관하며, 중앙정부의 전담사무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사무이며, 따라서 병렬적 나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앙 및 지방의 전담사무로 볼 수 있다.

6. 노인

노인 부문의 복지사무는 고령사회, 고령친화산업, 노후준비, 효행 장려 등 기반 구축과 환경 조성을 위한 영역과 기초연금, 장례 지원, 노인복지 등의 개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급여·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복지 기반 구축 및 환경 조성과 관련한 복지사무는 구체적인 사업 또는 급여·서비스를 규정하기보다는 사업의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노후준비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전담사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사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 경비 부담에 관한 사무가 유일하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무 역시 노후준비와 유사한 특성으로 중앙정부 전담사무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는 제한적이다. 고령사회와 효행 장려 관련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고령사회 관련 복지사무는 환경 조성과 복지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구체적인 사업이나 급여를 규정하기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복지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효행 장려 관련 복지사무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주거 지원, 비용 일부 지원 및 보조 등 구체적인 사업이나 급여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관련 복지사무는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위임사무의 특성을 보인다. 중

앙정부는 기초연금액 결정, 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결정과 집행 인프라에 관한 복지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는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시군구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사무로는 기초연금 신청 접수, 수급권 변동 결정, 기초연금 지급 및 지급 관리, 이의신청 접수와 결정 등이 있다.

장사 지원 관련 복지사무는 기초연금 관련 복지사무와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중앙정부 전담사무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장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 지정·해제·조정 등에 국한된다. 반면에 장사 지원 관련 복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가 많으며, 특히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묘지 관리,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장사 업무 전반에 관련된 복지사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사 지원은 전형적인 자치사무의 특성을 갖는다.

노인복지 관련 복지사무는 다른 부문 혹은 영역의 복지사무와 달리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사회참여, 독거노인 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 노인 대상 지원 시책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에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과 관련해서는 중앙, 광역, 기초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노인보호기관의 경우 중앙정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정지 또는 폐지 사무와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권한을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자격증 교부 및 취소 등의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전담사무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가 서로 구분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 전담사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영역은 다른 분야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7.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 일반 부문은 특정 대상자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복지사업의 운영 원칙과 방안, 지역복지 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포괄계획에 관한 복지사무를 포함한다. 사회복지 일반 부문의 복지사무는 사회복지사, 공동모금, 푸드뱅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이용권(바우처)과 사회복지사업처럼 복지사업의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농어촌복지, 사회보장, 저출산·고령사회 등의 복지사무는 사회복지의 지역 단위 계획 또는 포괄계획, 사회복지 전반의 원칙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공동모금에 관련한 복지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푸드뱅크 관련 복지사무는 기부식품의 제공자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련 업무를 다루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담당사무로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이용권 관련 복지사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전담사무 또는 담당사무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전담사무가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이용권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전담사무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이

용권 표준화, 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주로 정책결정과 기준 설정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 수리 및 신청에 따른 조사, 서비스이용권 발급, 이의신청 검토 및 시정, 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등록 취소, 서비스 제공비용 예탁 및 지급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집행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영역의 복지사무는 복지사업 담당 인력,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 관한 업무를 다룬다. 중앙정부는 법인·시설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평가 기관 설치·운영,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사무, 사회복지시설 제공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등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인력 수급, 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법인의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사회복지법인 전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임명/위촉, 사회복지시설 재개·폐지 신고 수리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복지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촌복지, 사회보장, 저출산·고령사회 등 영역의 복지사무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시책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포괄적 중기계획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 설정,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공표, 사회서비스 품질 전담기구 설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사무는 없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병렬식 규정이 다수를 차지한다. 농어

촌복지, 사회보장, 저출산고령사회 영역의 복지사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복지사무는 사회복지 포괄계획에 관련한 업무이다. 중앙정부는 농어촌복지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복지사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동시에 공동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1. 복지사무 담당기관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또는 담당하는 복지사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복지사무의 담당기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지사무 담당기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복지사무 담당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행정기관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장을 담당기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하면 담당기관을 중앙, 광역, 기초 등으로 구분하기 용이하다. 예

를 들어 중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법령상 담당기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면 광역 사무로,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기초 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이나 기초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광역과 기초 모두의 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보장기관, 실시기관 등과 같은 용어로 규정하는 경우 복지사무 담당기관을 결정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용어의 예로는 「사회보장급여법」[7]·「기초생활보장법」[8]의 "보장기관", 「장애인복지법」[9]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노인복지법」[10]의 "복지실시기관",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11]의 "교통행정기관"이 있다.

보장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하기도 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

7)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정의)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9)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약자법」 제2조(정의)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등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의 담당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장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당사무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서 보장기관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다[12].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는 법령과 사무에 따라 상이한 개념을 갖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동일 법령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장기관인가를 판단하기 곤란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의 복지실시기관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근거와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복지사무를 규정하고, 사무의 담당기관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과 활용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복지실시기관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는 용어는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를 정의하고,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담당사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2가지 종류로 구분하며, 통상적으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시·군·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라 칭한다. 동일한 지역에 광역과 기초의 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동일 지역에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13]. 복지사무를 포함한 행정사

12) 「주거급여법」 제6조에서 보장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료급여법」 제5조에서 보장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무에 관한 법령은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2층 체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행정사무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제8조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9조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이중적 기능과 역할은 복지사무에 관한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복지사무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가 동일한 사무를, 특별자치시와 시·군·자치구가 동일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담당사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도 한다. 먼저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를 동일한 기능과 역할로 설정한 경우는 「장애아동복지법」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 심사 및 결과 통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7개 조문의 사무가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설치 인가 등 2개 조문의 사무가 있다. 특별자치시와 시·군·자치구의 담당사무를 동일하게 규정한 경우는 「결혼중개업법」의 12개 조문의 사무가 있다. 복지사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13)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법」 제6조와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시·군·자치구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주거급여법」 등 18개 법령의 134개 조문의 복지사무에 대해서 특별자치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담당사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병렬식 규정의 공통사무

복지사무를 기준으로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사무분담체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병렬식 나열 방식의 복지사무가 전체 복지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전체 1,368개 조문의 복지사무 중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된 경우가 550개 조문에 달한다.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무로 해석한다면, 법령 규정에 근거한 복지사무 조사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의 사무분담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병렬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통사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복지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복지 원칙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무의 예는 〈표 3-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률 조항은 "---- 하도록 노력한다", "---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복지사무는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수준의 규정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복지사무라 할 수 없으며, 복지사무 파악과 사무분담체계 정리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다.

〈표 3-3〉 사회복지의 원칙과 방향성 제시하는 공통사무 예시

부문/영역	법률	복지사무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 지원에 노력 긴급지원 대상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적극적 안내 이법의 지원 후에도 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노력
장애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 건강권 존중, 보후, 실현 의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건강 위협 상황 예방을 위한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
장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 향상 책임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및 국민의 올바른 이해에 필요한 정책 강구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 보호자 및 가정 지원정책 수립·시행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 권익증진 정책 수립·시행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시책 강구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시책 강구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필요시책 수립·시행, 교육·홍보 아동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 적극 노력 사회복지사등 보수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 노력 사회복지사등 적정인건비 기준 마련 사회복지자등 보수 수준 등 조사·공표

자료 : 저자 작성.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정리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복지사업이나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복지사무의 예는 〈표 3-4〉에서 볼 수 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가 하나의 사무로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인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업을 중앙, 광역, 기초가 각각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노인성 질환 치료비용의 부담 또는 일부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는 공동사무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사무로 해석할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를 병렬식으로 규정하는 공통사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령상에 규정된 복지사무의 내용만으로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역할과 사무 분담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표 3-4〉 복지사업 또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통사무 예시

부문/영역	법률	복지사무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금 적립 수급자·차상위자 채용 기업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자산형성 지원, 자활촉진 교육
취약계층 지원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노숙인 진료시설 설치·운영, 지정
장애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교부·대여, 수리,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활용 자산형성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필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정지·위탁취소·시설장교체·폐쇄명령
노인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전담기기관 설치·운영, 운영 위탁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비용 부담 또는 일부 지원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보고 요구, 운영상황 조사, 관계서류 검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자료 : 저자 작성.

4. 전담사무와 중앙-지방의 분담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병렬식 규정의 공통사무를 제외하고, 전담사무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전담사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복지사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전담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전담사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된다.

사회복지 분야 법률에 따른 복지사무는 총 1,368개 조문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중 중앙정부 전담사무는 363개 조문, 광역자치단체 전담사무는 33개 조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담사무는 195개 조문으로 파악되었다. 전담사무의 양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고,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높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사무 중 전담사무의 양적인 측면만으로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사무분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담사무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전담사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복지사무는 첫째, 각종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그리고 시행계획의 결과 점검 및 평가, 평가 결과 보고와 공표 등 계획 수립과 집행 업무이다.

〈표 3-5〉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부문/영역	복지사무 내용
기초생활보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운영, 경비보조 또는 출연, 지도·감독 기초생활보장보장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공표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임차료 지급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비 지급기준 결정
기타 취약계층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장애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보건통계사업 시행 재활의료기관 지정, 지청취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보수교육 명령, 자격 정지·취소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 교부, 보수교육 명령, 자격 정지·취소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장애실태조사 실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육·아동·청소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운영,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업무 및 금융자산관리 업무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자격증 관리, 보수교육 성범죄 경력자 취업 등에 대한 점검·확인, 시정조치 요구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 부여, 자격 취소, 보수교육 위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여성·가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가족친화지수 개발·보급, 결과 공표, 가족친화 인증 및 사후관리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별 시행계획 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 특정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정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통계 수집, 산출, 산출, 공표
노인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결정·고시, 기초연금액 고시, 적정성 평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부 제공 요청,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노인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대한노인회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회복지 일반	농어촌복지 기본계획 수립,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실시, 공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변경,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수행 사회보장 기본계획·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제공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자료 : 저자 작성.

둘째, 사회복지 대상자별, 영역별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무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각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와 근거로 활용되며, 또한 급여 기준 설정과 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연계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무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심의·자문·조정 기능을 통해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무이다.

다섯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사무가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자격증 발급 및 관리 등 인력에 관한 사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의 직접 수행, 사회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무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무로는 각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성별영향평가, 아동의 자산형성지원 및 금융자산관리 업무, 그리고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금융정보 등의 신청과 관리 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고,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낮다(〈표 3-6〉 참고). 광역 단위 복지지원기관(센터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무가 있으며, 기초보장급여의 시군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무가 있다. 주목할 점은 어린이집 보육료는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며, 요양보호사와 장례지도사의 자격 관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복지사무인 사회복지법인 설립, 운영, 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다.

〈표 3-6〉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부문/영역	복지사무 내용
기초생활보장	광역자활센터 지정, 시군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결정·통지 의료급여기금 설치·조성, 관리·운용
기타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이의신청 접수, 검토, 시정조치
장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보육·아동·청소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의 기준 설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운영, 사업정지 명령, 지정 취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인가,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여성·가족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격증 교부, 자격 취소,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장례지도사 자격부여, 취소, 교육기관 설치신고 수리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허가 취소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 명령, 임시이사 선임·해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변경·장기차입 허가, 재산취득 보고 수리

자료 : 저자 작성.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5개 조문의 복지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전담사무는 다시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역할을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가 전담하는 복지사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시·군·구가 전담하는 복지사무가 있다. 전자는 194개 조문 중 122개 조문이 해당하며, 후자는 73개 조문이 해당한다.

〈표 3-7〉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부문/영역	복지사무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급여 신청 접수와 직권 신청, 조사, 급여 결정 및 결정 통지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급여 실시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 체납 처분, 수급자 급여 전부/일부 반환 명령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제한·중지, 구상권 행사 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
기타 취약계층	긴급지원 요청·신고 접수, 실시, 기간 연장, 중단, 비용환수 위기상황 현장 확인 및 지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지원 조사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 의뢰
장애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 심사, 결과 통보, 제공기관 연계 장애인등록증 발급, 취소, 반환 명령,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부문/영역	복지사무 내용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수급계좌로 입금, 전부/일부 환수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결정 통지, 지급 정지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 중단 또는 제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통보
보육·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폐업, 휴업 신고 수리,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아동수당 신청 접수, 지급 결정, 취소, 정지, 환수 아동학대행위 의심에 대한 보고, 조사, 검사, 행정처분 여부 결정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폐쇄 명령
여성·가족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일시중지 또는 폐지 신고 수리, 폐쇄 업무 폐지 또는 정지 명령, 인가 취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중단 신고시 입소자 권익보호 조치 여부 확인
노인	기초연금 신청 접수, 지급 결정, 지급, 지급 정지, 환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지 또는 폐지 매장·화장·개장 등의 신고수리, 공설묘지 이용 신고 수리,
사회복지 일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 수리, 조사, 발급, 이의신청 검토/시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휴업 및 폐업신고 접수, 등록 취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운영

자료 : 저자 작성.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는 주로 급여의 신청 접수, 신청에 따른 조사, 급여 결정 및 통지, 급여 지급,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환수 등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 업무가 핵심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접수, 사업 변경,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사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는 복지사무를 기준으로 역할 및 사무분담체계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 기준 설정, 실태조사, 인프라 구축 및 인력 등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결정과 기반 조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보육시설 보육료 결정, 사회복지인력 중 일부 자격증 관리,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담당사무의 비중이 낮고, 역할과 기능이 적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지급과 관리 등 집행사무를 중심으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복지사업과 중앙·지방 역할분담

제1절 복지사업 및 분담체계 분석틀
제2절 부산 지역 복지사업 현황: 부산진, 사상, 기장
제3절 경기 지역 복지사업 현황: 고양, 파주, 가평
제4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제 4 장 복지사업과 중앙·지방 역할분담

제1절 복지사업 및 분담체계 분석틀

복지사무 조사 결과, 전체 1,368개 조문 중 550개 조문에 해당하는 복지사무가 중앙, 광역, 기초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병렬식 공통사무 내용이 사회복지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추상적 수준의 규정에 해당하며, 엄격한 의미에서 복지사무로 볼 수 없다. 반면에 병렬식 공통사무의 내용이 구체적인 복지사업이나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가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인지, 아니면 동일한 복지사업을 중앙, 광역, 기초가 각각 시행하는 사업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법령상에 규정된 복지사무 내용만으로는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역할과 분담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추가로 복지사업 조사를 통하여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역할 및 분담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복지사업 조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명세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복지사업의 범위설정 기준은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겠으나,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사업이란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 분야(08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설정한다.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역할 분담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하는 행정기관, 즉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조사·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다. 따라서 복지사업 조사의 대상으로서 복지사업이란 기초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광역·기초의 사업으로서 사

회복지 분야(080)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 조사를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의 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조사를 진행한다.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체계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는 ①특별·광역시-**'자치구'**, ②광역시-**'군'**, ③도-**'시'**, ④도-**'시'**-행정구, ⑤도-**'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5개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5개 유형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시·군·구는 ①부산 진구·사상구, ②부산 기장군, ③경기 파주시, ④경기 고양시, ⑤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다.

6개 시·군·구의 2020년 「세출예산명세서」를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조사하였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활용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조사한 복지사업을 분류하였다(〈표 4-1〉 참고).

〈표 4-1〉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분류체계

예산의 기능별 분류(부문)		복지사업의 분류체계
기초생활보장	081	081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082	082-1 노숙자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082-2 장애인
보육·가족 및 여성	084	084-1 보육(영유아, 아동돌봄 등 포함)
		084-2 아동복지
		084-4 여성·가족
노인·청소년	085	084-3 청소년
		085-1 노인
사회복지 일반	089	089 사회복지 일반

자료: 저자 작성.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등 총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세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장애인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시설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은 아동복지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는 보육, 아동복지, 여성·가족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부문은 노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기능별 분류에 추가하여 사업 주체별 분류도 하였다. 사업 주체별 분류란 시·군·구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복지사업의 시행 주체를 확인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복지사업에 해당하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 그리고 시·군·구 자체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사업의 주체별 분류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한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및 분담체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사업은 '사업 담당 자치단체', '사업의 기능', 그리고 '사업 주체'라는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복지사업을 2차원으로 정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이 연구는 중앙-지방의 기능 및 역할 분담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와 복지사업의 주체를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복지사업의 기능별 분포와 중앙-광역-기초 간의 분담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분담체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앙-광역-기초의 분담체계에서 복지사업의 기능별 분포와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절 부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부산진, 사상, 기장

1. 부산진구 사회복지사업 현황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 부문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각지대에 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 자활사업,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수급 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이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급여기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위임사무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성 보조사업 운영은 지방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80%로 타 사업에 비해서는 보조율이 높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자치단체에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기획한 정책 방향성에 따라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참여자 개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통합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 집중화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자활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탈수급 지원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각종 통장사업은 단순한 소득보장보다 탈수급과 사회투자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가입자 저축액에 대응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 전산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제도 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므로

사업 표준화와 안정화를 통해 통장가입자들의 금융역량을 향상해 탈수급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 부산광역시가 주체인 사업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월동대책비 그리고 자녀교통비 지원이다. 이는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 지원과 한시적 생활지원을 하는 제도로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

〈표 4-2〉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일반)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통합조사 업무 운영
의료급여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 의료급여관리사 정액급식비 의료급여관리사 교통보조비 의료급여관리사 기말수당 의료급여관리사 상해보험
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저축계좌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I 희망키움통장사업 II		
저소득층 생활지원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노숙인 지원 정책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다수로 중앙정부는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보호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숙인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특정 시·도에 밀집 분포해 있어 지역별 규모 편차가 큰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 조기 복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자활사업이 중앙정부의 기획과 재원 관리하에 탈빈곤을 촉진하는 반면 노숙인 자활시설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시·도 사업으로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에 따라 사각지대에 노출된 거리 노숙인 등의 응급 지원 사업인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련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인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노숙인지원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지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 지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장애인 영역의 복지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보장, 일상생활 지원, 각종 시설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다. 소득보장사업은 현금성 급여를 제공하는 국고보조 방식 혹은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운영된

다. 대상 장애인의 욕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으며, 급여에 있어서 지역 격차나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가사무로 책임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지원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가 표준화한 사업 기준과 내용, 재정 지원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국가적 공공재 성격의 사업으로 국가 주도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장애인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주요 방향성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중앙집권적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체들의 참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체사업이 적합하나 그 수는 여전히 부족하고 단순 기능에 머무는 수준이다.

다음의 사업 분류만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설 지원에 대한 정부 간 세부적인 역할 분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개관해볼 때 지방이양 후 중앙사업으로 환원된 거주시설 등은 중앙정부가, 그 외 시설을 광역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며 실제적인 사업 관리 및 집행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사항은 참여정부 이후 꾸준히 정부 공약으로 제시되어 온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도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기관과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보다 시설 생활자의 보편적이고 균질적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종사자 처우의 질이 좌우되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이신정, 최영화, 윤해복, 2015, p. 87).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중앙정부의 기획과 재원 계획이 필요하나,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자원 활용과 지역주민 참여가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

은 지역에 대한 이해보다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되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두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 장애인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장애수당(기초) 지급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재활수당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일상생활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수화통역수당
생활시설 지원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시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명절 위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주말주간 일시보호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관리
직업재활지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근로작업장 지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직원복지수당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일자리 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아동복지 영역의 복지사업에서 정부 간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유사한 정책대상과 목표, 급여형태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의 유사·중복성을 보이고 기능 구분이 모호하다. 입양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이 중앙과 광역에서 중복해서 이루어지고 입양과 위탁가정 사업,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의 기획 취지와 체계가 유사하나 중앙, 광역, 기초의 세 주체가 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역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 사후관리가 필요한 돌봄 성격의 시설 지원(지역아동센터) 서비스는 대부분의 이용시설과 달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등 명확한 분담 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교육권 보호를 위한 대학등록금과 교육비 지원 사업, 학대피해아동 지원 및 예방사업의 경우 지역 차원의 접근보다 전국적 기준을 충족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중앙 단위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이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단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아동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조직을 광역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5〉 아동복지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아동수당 아동수당지원사업 운영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입양축하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아동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정위탁·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급식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시설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아동양육시설 등 건전육성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등 안전관리환경개선비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건전육성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시비보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시비지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아동학대예방 사업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자체)
교육지원		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안전·인구정책		출산용품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출산장려 지원 출산축하금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부산진구 꼬마둥이 페스티벌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사례관리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보육서비스는 시설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수행하며, 보육료 지원, 인력·운영 지원은 중앙과 광역이, 관리·품질향상은 세 주체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세분화된 사업을 살펴보면 정부별 지원 사업이 일관되거

나 체계적인 기준 없이 유사·중복적 측면을 보여 비효율성을 내포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대표적인 보육 지원 사업으로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업무다. 서비스 대상 또한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기획 역량이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중앙집권화된 업무 처리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관리·품질향상 사업은 단순 집행의 기능을 넘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적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특히 품질 모니터링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역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관리 능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다.

〈표 4-6〉 보육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보육료지원	영유아 보육료 시간제보육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첫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	
인프라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인력·운영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간연장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지원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지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장애아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특수근무수당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정부지원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리·품질향상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사업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성북초등 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행정지원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개최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부산진구 청소년 영역의 복지사업은 청소년 당사자 참여, 보호, 시설 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다. 청소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사항은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사업 성격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행 중앙정부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구분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성격(청소년 건강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의 사업 외, 지역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효과적인 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총괄적 통합과 조정 역할이 아니라면 기관 및 사업 운영관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분산된 책임 영역을 부여하여 지역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광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보면 광역 단위에 요구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지원하는 역할보다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사업에 그치고 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표 4-7〉 청소년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시설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자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보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사회서비스 지원	청소년건강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자체)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여성·가족 영역의 복지사업은 사회적으로 보편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저소득층, 소수자 혹은 인권 기반의 접근이 필요한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그 외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서비스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각각의 센터 운영 지원 주체가 상이할 뿐 아니라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사업별 비용 –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기능을 분담했다고 보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물론 다문화 가족이나 결혼이민자 정책은 해당 수요층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중앙정부의 보편적 관리가 필요하나, 중앙정부 단위의 사업운영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당초 목적을 적극 실현하는 데 한계가 많다. 지역 및 대상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발

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열악할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처우 수준은 보건복지부 종사자와 급여 격차가 더욱 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여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표 4-8〉 여성·가족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자체)
폭력피해 회복·안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복지수당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 능력 배양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부산진구 노인 영역 복지사업의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성과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사업 초기 단계의 기반구축, 소득보장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광역자차단체 사업은 시설 운영, 서비스 급여, 인건비 지원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획과 실행, 사후 관리 성격의 업무 등의 역할을 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시설지원 사업 중에서 경로당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냉·난방비 지원 같은 전국적 표준이 필요한 사업을, 광역은 추가적인 서비스·급여 지원 사업을, 기초는 경로당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의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사업은 중앙-지방의 역할이 중복되고 예산 지원이 다중적이다.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적은 규모로 전문인력 없이 이용 노인의 역할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예산 및 행정처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원 편성을 포함한 사업 일원화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여건에 부합하여 일자리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역적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사업 표준화 이후 지방정부의 재량과 역량이 발휘되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전국적 보편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기반하여 현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대상 확대 등 장기적 정책목표 달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전산망 활용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역에서 수행하는 저소득 노인대상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빈곤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이다.

〈표 4-9〉 노인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기초연금		
시설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시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명절 경로당 위문 노인복지관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운영 지원(자체) 노인복지시설 구 상징물 교체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
일자리·사회참여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교실 사업비 시니어 해피라이프 사업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돌봄·안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지역복지 영역의 복지사업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과 시설 지원으로 대별된다. 사회서비스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가 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역맞춤형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여 시장 형성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설 지원의 경우 지역 간 선호나 욕구의 이질성이 없는 보편적 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경우 지역 격차나 불균형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활용이 필요하고 이용자와 자원 공급이 지역으로 국한되는 사업(푸드마켓·뱅크)은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4-10〉 지역복지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사회서비스 이용·일상생활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기초푸드마켓 지원 기초푸드뱅크 지원	
시설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상담소 운영(생명의전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복지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최근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내용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을 위한 공적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나, 복지사업의 담당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책임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어 주민참여 및 민간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진구의 경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확보, 상담공간으로서 상담실 운영에 그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정, 자원배분, 정책지원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행정 및 시설 인력에 대한 보조적 지원 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통합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전달체계에 기대되는 정책목표를 고려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가속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지원 사업은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자산형성 지원 형태의 통장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이 겪고 있는 고용,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며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청년 대상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 사업 배분 기준에 따라 정부 간 역할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표 4-11〉 전달체계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업운영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주민참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력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찾아가는 복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주민복지서비스 운영지원 복지상담실 운영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2. 사상구 사회복지사업 현황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사상구 복지사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운영에 관련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조사 전문성 확보

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해당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업무 추진은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한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해당한다. 이러한 업무들은 자치구가 수행할 업무이기는 하나 자치구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 성격보다는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업무에 가깝다.

〈표 4-12〉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통합조사 전문성 확보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긴급복지	긴급지원 사업비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1) 사업 희망키움통장(2) 사업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취약계층 지원 업무추진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사상구 복지사업으로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는 예산 규모가 작은 사업이며 또 특별히 기획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만, 자치구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표 4-1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노숙인지원	-	-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장애인 영역에서 사상구가 담당하는 복지사업은 장애인단체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보장과 인식개선, 생활시설 지원, 자립생활 지원, 일자리 지원 분야에는 자치구의 자체 복지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 영역의 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 활성화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비 지출 사업의 성격을 띠며, 수급자격심의 및 이의신청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은 행정처리 성격의 사업에 해당한다. 일상생활 지원 분야의 사업 중 장애인맞춤형서비스도 그 내용이 장애인 관련 일반사무관리, 장애인주차장 관리, 장애인차량표지, 점자스티커 제작, 전동보장구 충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로 기획이 포함된 사업이기보다 사무처리 성격이 강한 업무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사업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자치구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보장서비스 민간참여 활성화는 운동이 부족한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애인복지시설 맞춤서비스 지원사업은 관내의 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운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 4-14〉 장애인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재활수당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단체지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복지관 목욕서비스 운영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맞춤형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서비스 민간참여 활성화
생활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시비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세탁서비스 점자도서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맞춤서비스 지원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법인근로작업장 지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지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		
일반행정			장애인복지 활성화 업무 추진 수급자역심의 및 이의신청 위원회 운영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아동복지 영역의 사상구 복지사업은 행정처리 성격의 사무, 보조사업에 구비 추가 투입 사업,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복지증진 업무 추진은 일반행정 처리 성격의 사무이며, 출산축하금 지원은 광역 사업에 구비를 추가하는 사업이다. 또한 구의 자체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표 4-15〉 아동복지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 입양비용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 아동수당 사업 추진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자립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	
급식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학대피해아동 장기그룹홈 지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복지수당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복지포인트 야간보호전담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복지포인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기타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아동시설 환경개선, 안전관리비 출산지원금 등 시비지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출산축하금 지원 아동복지증진 업무 추진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보육 영역에서 사상구가 담당하는 복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육주간 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에 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보육주간 행사도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4-16〉 보육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구분	중앙	광역	기초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사업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인력·운영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교재교구 구입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지원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지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조리원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차량운영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 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자체)
기타	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운영 보육주간 행사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청소년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은 자치구의 자체사업이 많은 편이며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수련관 관리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이며 그 외 청소년 위해 환경 단속 및 관리,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개최, 지역주민·유관기관·단체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 운영, 도·농 청소년의 상호교류를 위한 청소년교류캠프 운영, 청소년예술제 운영 등 구의 기획적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표 4-17〉 청소년복지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시설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
보호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관리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회서비스 지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참여 활동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청소년교류캠프 운영 청소년예술제 운영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여성·가족 영역에서 사상구의 복지사업도 청소년복지 부문과 유사하게 자체사업이 많고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구의 여성·가족 영역의 복지사업은 여성 관련 사업과 다문화 관련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구는 일찍이 여성친화 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이 여성친화 공간에 여성도서관인 우먼라이브러리와 다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상담,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인 다문화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8〉 여성·가족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 다문화나눔터 운영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능력개발·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 시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여성친화 도시 조성 우먼라이브러리 운영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 평등의식 확산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노인 영역에서 사상구의 자체 복지사업은 부산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사업의 수와 종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저소득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경로당의 개·보수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요양원 등에서의 학대 발생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구 자체사업이 적은 반면에 부산광역시 복지사업은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9〉 노인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기초연금 사업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부담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시설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노인복지시설 직원복지수당 대한노인회 운영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보조)	대한노인인회 지원 경로당 운영(자체)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 보수관리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추석절 경로당 위문 노인요양시설 U헬스 원격 진료장비 유지보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등)
사회참여 돌봄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교실 운영 지원 무의탁노인세대 명절 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지역복지 영역에서 사상구의 복지사업은 일반사무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행정처리적 사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자치구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후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복지사랑방을 조성하여 복지마을을 추진한 사업이나 지역 내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 사업 등은 구의 기획적 요소가 강하게 포함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사업도 사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사업이다.

〈표 4-20〉 지역복지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일상생활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상구 푸드마켓 운영	
시설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 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	사회복지관 운영	다함께돌봄 사업비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복지마을 운영 복지센터 운영 주례희망디딤돌센터 운영
일반행정			복지기획 업무 추진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전달체계 영역에서 사상구 복지사무는 기장군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체 사업보다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집행과 보조사업에 구비 추가 투입 사업이 많다.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추진, 민관 사례관리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은 중앙정부가 구축한 기본 틀에 의해 사무를 집행하는 성격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사업들은 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비록 중앙정부가 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의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합 사례관리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에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성격이 강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구의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민간의 후원물품을 배분하는 사업인 사상나눔사업,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보조 및 사회복지공무원 연수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은 구의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에 경비를 보조하지는 않는다.

〈표 4-21〉 복지전달체계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사례관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추진 민관사례관리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주민참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상나눔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운영
인력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역량강화

자료 :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3. 기장군 사회복지사업 현황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장군 복지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한 틀 내에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이 많은 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복지사업은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의해 복지사업의 틀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복지사업 중 기초생활보장업무 운영은 군의 기초생활보장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이나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사업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이고, 또 군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다. 그러나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통합조사와 통합관리가 있는데, 통합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조사업무이며, 통합관리는 기초보장수급자의 지위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두 업무는 결국 자산조사 업무라 할 수 있는데 군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 또 공공부조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이나,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에 더 가깝다. 교육급여 지원은 군이 급여지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달하는 업무로, 군 예산이 지출되지만 사업내용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은 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군의 자체사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들은 군의 예산과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권자에 국비로 지원하는 장제비 외에 장례식 등 장례서비스를 관할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관리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군에 거주하는 초·중·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복비, 체육복비, 수학여행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4-22〉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기초보장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재급여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원	통합조사 업무 운영 통합관리 업무 운영 교육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긴급복지	긴급복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지원 자활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저소득층 생활지원		시비특별지원사업 월동대책비 시비특빌지원사업 자녀교통비	저소득층 복지 지원
일반행정			기초생활보장업무 운영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기장군 복지사업은 노숙자 보호가 있는데, 노숙자가 발생할 경우 시가 운영하는 쉼터로 연계한다든지 주거급여를 연결해준다든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표 4-2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노숙인 지원			노숙자 보호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장애인 영역에서 기장군이 담당하는 복지사업은 장애인단체 지원,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에 관련한 자체 복지사업이 있다.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거주시설 지원, 자립생활 지원,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자체 복지사업은 없다.

장애인업무 운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장애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구성되는 사무비로 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 수 있으나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 영역의 기장군 자체사업은 크게 장애인단체 지원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군내 장애인협회와 장애인부모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군의 장애인가족과 단체, 시설 등이 함께 모여 '화합 한마당' 형식으로 치르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사업은 군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과 그 외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말한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군 소재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군의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의 운영 및 지도 감독은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지원 분야의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일상생활 지원 부문에서 군의 자체사업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외에

없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군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 지원하므로 여기서 일상생활 지원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나 추진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4-24〉 장애인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재활수당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단체지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장애인협회 운영 장애인 부모회 운영
일상생활 지원	보조기기 교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가산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생활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보호장애인 약품비 지원 시설보호장애인 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지원 시설보호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시설호보장애인 간식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일시보호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장애인복지관 운영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자역법인근로작업장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일자리 지원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장애인일자리(시간제) 장애인일자리(일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반행정			장애인 업무 운영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아동복지 영역의 기장군 복지사업은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과 함께 중앙정부와 광역사업에 군비가 추가 투입된 사업, 행정처리 성격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아동복지 영역의 복지사업 중 기장군의 기획이 포함된 사무는 안전 및 인구정책에 비교적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안심알리미서비스와 아동안전지도 제작, 어린이놀이터 관리, 다자녀출산지원금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중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비 지원 및 연합행사 지원도 군의 기획이 포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군의 기획이 포함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군의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복지 영역에서 기장군이 담당하는 복지사업 중에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복지사업이 있다. 평일 및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광역사업인 부산광역시 사업에 군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동복지교사 파견과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중앙정부 사업에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군비를 추가하는 사업은 군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업내용에서는 군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을 군이 그대로 수용한 사업이므로 군 자체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외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는 교육급여 신청을 군이 접수·처리하여 교육청으로 송부하는 업무로 군의 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체사업이기보다 단순 행정처리 성격의 사무에 해당한다.

〈표 4-25〉 아동복지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 아동수당 지원 사업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비용, 입양숙려기간모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입양 축하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자립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	
급식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추가) 평일·방학중 아동급식(추가)
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안전관리비 지원 아동그룹홈 종사자복지수당 아간보호전담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역아동센터 출석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비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기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대학등록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아동안전알리미서비스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보육 지원 영역에서 기장군의 복지사업은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 부문의 복지사업 중 보육업무 운영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나 차량운행, 각종 정책홍보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 사무처리로 군

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자체사업이기보다 단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보육 지원 영역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사업은 물론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수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기초자치단체 사업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중앙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한 사업으로 내용상 중앙정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나 365 맞춤어린이집 운영 및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한 각종 지원(급간식비나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교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실시하는 부모교육 경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은 군의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4-26〉 보육 지원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누리과정 지원 다자녀가정·둘째자녀·첫째아이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인력·운영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교재교구 구입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지원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지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조리원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차량운영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군비) 365 맞춤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기타	지방유아종합지원센터운영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업무 운영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청소년 영역에서 기장군의 복지사업에는 군의 자체사업도 많지만, 동시에 중앙정부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복지사업도 많은 편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한 사업으로는 지방상담사업비 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있다.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으로는 군 산하의 도시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기관(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예술단체·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정책한마당 등 개최 운영, 청소년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심리상담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표 4-27〉 청소년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시설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방상담사업비 지원	도시관리공단(문화예절학교) 도시관리공단(청소년수련관) 지방상담사업비지원(군비)
보호	청소년동반자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시비)	청소년안전망 구축 학교폭력근절 시책 운영
사회서비스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군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군비)
기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육성 업무 운영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여성·가족 영역에서 기장군 복지사업의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 지원이 혼합되어 있고, 사업 형식으로는 중앙사업에 군비가 추가로 투입된 사업, 자체사업 그리고 일반 행정처리 성격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다.

일반 행정처리 성격의 사무는 여성복지 업무 운영으로 명명된 사무인데, 여성가족 관련 교육강사 사례비, 각종 정책 홍보비, 행사비(김장 행

사, 고추장 보내기 행사 등), 복지시설 견학비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군이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보조사업에 군비를 추가한 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사업이나 앞의 아동급식 지원이나 교재교구비 지원과 같은 중앙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아동급식 지원과 교재교구비와 같은 중앙정부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에 급여 제공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급여·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나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지원 내용을 군의 사정에 맞게 변경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경우 기장군은 북한이탈주민과 군 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군이 중앙사업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해도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역사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군비가 군의 기획을 반영할 수 있어 자체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출신 국가의 전통문화 알리기나 다문화가족협의회 운영 등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양성평등 기념식 및 여성어울림 체육대회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은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4-28〉 여성·가족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건가·다가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자녀양육 및 자녀활동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체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군비)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		
능력개발·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등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군비)
양성평등 기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복지증진	양성평등기념식 및 여성어울림체육대회 여성복지 업무 운영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노인 영역에서 기장군의 복지사업은 다른 영역에 비해 복지사업의 수가 많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복지사업이 많고, 자체 복지사업도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복지사업의 영역과 같이 노인 영역에서도 노인복지업무 운영으로 명명된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유지비(공공요금 등)나 차량 이용, 노인행사 간식비 등의 행정처리 성격의 사무에 해당한다.

군비 추가 투입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각종 공과금 및 간식비 등),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교실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 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 지원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 부산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기장군이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광역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기획이 포함되는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이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경로당 운영도우미 배치 등 경로당

관련 자체지원, 우리마을 어르신 클린 사업단 운영, 어르신 한마당축제,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은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로당 관련 지원이나 노인교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는 중앙 또는 광역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군의 자체사업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4-29〉 노인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소득보장	기초연금지급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시설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에어컨 세척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추석절 경로당 위문 도시관리공단(노인복지관) 도시관리공단 직원복지수당(노인복지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도시관리공단(노인복지관)(군비) 도시관리공단(장안읍노인회관) 경로당 운영 지원(군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군비)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군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군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군비) 경로당 운영 도우미 배치 경로당 인터넷 이용료 지원 경로당 정수기 보급 경로당 중식비 지원 경로당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지원 경로식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신축(기장읍 원죽마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사회참여 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교실 운영 지원	우리마을 어르신 clean사업단 운영 노인교실운영(추가군비) 어르신 한마당 축제 운영
돌봄지원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무의탁노인세대 명절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군비)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군비) 노인안심서비스사업 노인복지업무 운영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지역복지 영역에서 기장군의 복지사업은 종류는 많지 않으나 사무의 대부분이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종합복지관 운영은 사업의 형식으로는 군비 추가 투입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 군의 기획이 포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지역이 기획하여 설계하는 사업이므로 비록 바우처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기는 하나 군의 기획이 포함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나 기장군이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산하 도시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는 방식이므로 이 역시 복지관 운영에 군의 기획이 포함되는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군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개선 사업은 군의 기획에 의한 자체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0〉 지역복지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일상생활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군비)
시설지원		도시관리공단(종합사회복지관)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시관리공단 운영(종합사회복지관)(군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복지전달체계 영역에서 기장군의 복지사업은 자체사업보다는 중앙정부가 틀을 만든 사업을 보조하는 기능의 사무와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 사무가 주를 이룬다.

사회복지종합지원정책 수립 사업은 일반 행정처리 성격의 사업이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중앙정부

에 의해 정책 틀이 마련된 사업의 사무를 군이 추진하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은 군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군의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은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영역에서 기장군의 복지사무로는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군의 기획이 포함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4-31〉 전달체계 부문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부문/영역	중앙 사업	광역 사업	기초 사업
사례관리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군비)
주민참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력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일반행정 기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종합지원 정책 수립 청년실업해소 유급실무자 인건비

자료 :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제3절 경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고양, 파주, 가평

1.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경기도의 고양시, 파주시, 가평군 등 3개 기초자차단체에서 집행을 담당는 중앙정부 복지사업은 2020년 현재 사업 수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112개로 나타났다.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시행하는

중앙정부 복지사업 중에서 보육 영역이 26개 사업(23.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영역 23개(20.5%), 기초생활보장 영역 18개(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과 지역복지 영역의 복지사업은 2개(1.8%), 여성·가족 영역은 4개(3.6%)로 이들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업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2〉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단위: 개, (%))

부문	영역	사업 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18 (16.1)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2 (1.8)
	장애인	23 (20.5)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15 (13.4)
	보육	26 (23.2)
	여성·가족	4 (3.6)
노인·청소년	노인	9 (8.0)
	청소년	8 (7.1)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2 (1.8)
	전달체계/행정	5 (4.5)
총계		112 (100.0)

자료: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각 부문 및 영역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영역은 자활근로 및 탈수급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지급 등 국민최저선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은 노숙인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취약계층 영역), 발달장애인 관련,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장애인 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비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장애인 영역)이 시행되고 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자립수당(아동복

지 영역), 어린이집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 영역), 새일센터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여성·가족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노인 영역), 청소년 쉼터 및 동아리 지원(청소년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및 사회적 경제 육성(지역복지 영역),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전달체계/행정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 사업은 주로 현금성 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일자리(노인/장애인), 자활(탈수급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쉼터 등)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등이 있다.

〈표 4-33〉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중앙정부 복지사업 목록

부문	영역	사업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저축계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Ⅰ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Ⅱ 기초생계급여, 생계급여(노인시설), 생계급여(아동시설), 생계급여(여성시설), 생계급여(장애인시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행정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노숙인시설 운영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부문	영역	사업명
		장애수당(기초) 지급,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국비/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운영비/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 겸직 원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담임교사 지원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아이돌봄 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기능보강(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어린이집 지원(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지원(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차량운영비)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문	영역	사업명
	여성·가족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센터 운영 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여성 인턴제) 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비)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노인·청소년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 보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공익형)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청소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회복지 일반	지역복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전달체계·행정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보상금 등)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료: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2.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 사업은 2020년 현재 사업 수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107개이다.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 중에서 여성·가족 영역의 사업이 46개(23.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노인 영역 37개 사업(18.8%), 그리고 장애인 영역 29개 사업(14.7%)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한편 취약계층 영역 3개 사업(1.5%), 지역복지 영역 6개 사업(3%-),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전달체계·행정 영역 7개 사업(3.6%)으로 이들 영역이 상대적으로 사업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

(단위: 개, (%))

부문	세부 부문	사업 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7 (3.6)
취약계층지원	기타 취약계층지원	3 (1.5)
	장애인	29 (14.7)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25 (12.7)
	보육	23 (11.7)
	여성·가족	46 (23.3)
노인·청소년	노인	37 (18.8)
	청소년	14 (7.1)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6 (3.0)
	전달체계/행정	7 (3.6)
총계		197 (100.0)

자료: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각 부문 및 영역별로 주요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경기도형긴급복지(舊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등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보충적 성격을 띤 사업과 도내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은 기초생활보장 부문과 유사하게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기타 취약계층 지원), 활동지원 급여, 도비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시설 종사자 지원 등과 함께 장애인 지원센터 및 보호시설 운영비 등(장애인복지)이 시행되고 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그룹홈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시설 종사자 지원(아동복지 영역), 누리과정[14],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지원(보육 영역), 여성인력개발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여성·가족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서는 실버인력뱅크 등 노인일자리, 경로식당,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노인 영역),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청소년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는 G-푸드드림,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지원(지역복지 영역),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전달체계/행정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은 주로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경기도형긴급복지, 활동지원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지원(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시도가 자체 브랜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실버인력뱅크, G-푸드드림 등)과 경기도 인구 구성의 특수성(다문화가정 비율 등)이 반영된 특정 대상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14)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기에 예산상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시도사업으로 구분된다. 이후 누리과정 예산분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나타난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표 4-35〉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영역별 경기도 복지사업 목록

부문	영역	사업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경기도형긴급복지, 무한돌봄센터운영, 희망디자인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가평군제외)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가평군제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통장사례관리 운영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 노숙인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 노숙인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
	장애인	도비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원 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도비)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7종)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 그룹홈 지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입양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축하금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문	영역	사업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보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기초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도 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도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거주외국인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캠프 등)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통역 서포터즈 운영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이혼위기가족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꿈마루)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지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부문	영역	사업명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노인·청소년	노인	경로당 운영지원(도비)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일자리 수행(전담)기관 지원 노인일자리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 외 인센티브)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운영, 실버인력뱅크운영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생활시설 지원(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노인요양시설 운영)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사회활동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 성(性)인식 개선 노인무료급식 지원(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무료급식 지원(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노인무료급식 지원(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복지관운영, 노인복지정보 제공(노인복지신문 보급) 노인생활안정(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노인생활안정(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재가급여 지원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노인자살예방사업(도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학교 밖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활동공간 개선사업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학업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G-푸드드림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문	영역	사업명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푸드뱅크(마켓) 운영장비 지원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전달체계/ 행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도비)

자료: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3. 시·군 복지사업 현황

가. 고양시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은 장애인(27.7%), 노인(18.4%), 여성·가족(16.3%) 영역의 복지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계층(1.4%),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행정(2.8%) 영역은상대적으로 사업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 및 영역별로 주요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사업추진비, 진료비 부담금 등으로, 제한적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은 행려·노숙인 보호 및 시설입소자 지원(취약계층 영역), 장애인 지원 서비스(보장구 수리, 재활치료, 이동차량 등)와 함께 다양한 행사지원(장애인 영역)이 시행되고 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종사자 지원, 드림스타트(아동복지 영역),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출산 지원(보육 영

역), 여성창업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여성회관(여성·가족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서는 경로당 지원, 장수 지원, 시설 기능보강(노인 영역),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표 4-36〉 고양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단위: 개, (%))

부문	영역	사업 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4 (2.8)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2 (1.4)
	장애인	39 (27.7)
보육·가족및여성	아동복지	7 (5.0)
	보육	14 (9.9)
	여성·가족	23 (16.3)
노인·청소년	노인	26 (18.4)
	청소년	12 (8.5)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10 (7.1)
	전달체계/행정	4 (2.8)
총계		141 (100.0)

자료: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동 복지회관 운영(지역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스템 관리(전달체계/행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심이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지원(각종 행사 포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등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노인 영역의 경우 고양시는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100세 장수인구를 위한 수당 지원과 경로잔치 등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12.7%로 경기도 평균 12.5%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분석대상인 파주시(13.4%), 가평군(24.7%)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행정안전부, 2020), 자체 복지사업을 통해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체 사회복지 사업 중 노동 영역의 사업 예산 비중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고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 자체 복지사업의 사업 수가 많고 다양한 현금성 지원(수당, 기능개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 규모와 재정력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37〉 고양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진료비 부담금, 맞춤형 교육급여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행려·노숙인 보호, 사회복지 생활시설자 위문
	장애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추가지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인식개선, 사회활동참여증진 등)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탄현동 고양보호작업장 카페 설치·운영 사업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지원,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화합 행사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농아인의 날 기념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발달장애인 기능경진 대회 설문동장애인직업재활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 세계 콩팥의 날 기념 신장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 사업, 장애인단체 실무 워크숍 장애인 정보화협회 교육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가족 킨텍스 캠핑 페스티벌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비용 지원 장애인복지 시책업무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장애인정책 홍보물 제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근로장려금 지원 장애인체육관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장애청소년 어울림 문화제,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활동지원급여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 전산 위탁업무비 흰 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전산관리시스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아동정책 업무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인건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근무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유지 보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 난방비 지원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 등) 지원사업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출산축하 지원
	여성·가족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정복지 시책추진 거주외국인 정주화사업,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 고양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고양안심무인택배함 운영 교육 홍보, 교육강사 운영, 교육운영 지원 보전지출(성평등기금),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아버지 학교 운영,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군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노인·청소년	노인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 경로당 상해·화재 보험료 경로당 LED조명 교체 사업, 기초연금 등 시책홍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저소득 노인세대 거주지 방역사업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교육 운영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 운영지원 묘지 관리(장묘문화, 시설관리, 화장장려금 지원 등) 100세 인 생일/수당/장제비 지원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100세인 복지플랜 사업, 경로잔치 지원, 효 가정 지원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원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 각종 행사 시책업무추진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노인복지시설 회계사 평가 수당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여가복지시설 임차료 지원
	청소년	청소년안전망 구축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청소년 업무 지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행신2동) 청소년 조언 자판기 운영, 청소년 보호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 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기초생활지원 동 복지회관(마을회관등) 운영
	전달체계/ 행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평가 및 관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전산·통신 시스템 관리

자료: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나. 파주시

파주시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자체 복지사업은 청소년(23.1%), 여성·가족(22.1%), 장애인(15.8%) 영역의 복지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달체계/행정(0.0%), 취약계층(2.1%), 노인(5.26%) 등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업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그리고 다른 시군 사업과 비교해서 파주시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

인구 비율(13.4%)에 비해 노인복지 부문의 자체사업이 많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과 관련한 자체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 청소년(9~24세) 인구비율은 2018년 기준 16.75%로 경기도(17.22%) 및 북부지역 평균(17.21%)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0).

〈표 4-38〉 파주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단위: 개, (%))

부문	영역	사업 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4 (4.2)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2 (2.1)
	장애인	15 (15.8)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7 (7.4)
	보육	8 (8.4)
	여성·가족	21 (22.1)
노인·청소년	노인	5 (5.3)
	청소년	22 (23.1)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11 (11.6)
	전달체계/행정	0 (0.0)
총계		95 (100.0)

자료: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각 부문 및 영역별로 주요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사업 추진비, 진료비 부담금 등 제한적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근속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은 행려·노숙인 보호 및 시설입소자 지원(취약계층 영역), 보장구 수리, 재활치료, 이동차량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행사 지원(장애인 영역)이 시행되고 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종사자 지원, 드림스타트, 장난감 도서관(아동복지 영역),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출산

지원(보육 영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성매매피해자 지원(여성·가족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서는 파주 온돌사업, 노인회 지원, 묘지관리(노인 영역),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안전망 구축, 고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재단,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청소년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지역복지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달체계/행정 부문은 해당사업이 없다.

파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고양시와 동일하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심이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지원(각종 행사 포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등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재단설립, 육성 지원, 이용시설 지원, 시설 확충, 안전망 구축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주 지역의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39〉 파주시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진료비 부담금 맞춤형 교육급여, 자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근속수당 지원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행려·노숙인 보호, 사회복지 생활시설자 위문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자체)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수어통역센터 운영)(자체)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자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자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인식개선, 사회활동참여증진 등)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전산관리시스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기능개선 파주시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운영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자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근무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충(자체)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 난방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출산축하 지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보수 건강가정 활성화,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사업 추진, 여성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행복한 가족 조성 시군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노인·청소년	노인	경로당 LED조명 교체 사업, 파주 온돌사업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 운영지원 묘지 관리(장묘문화, 시설관리, 화장장려금 지원 등)
	청소년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보호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청소년 수능 행사,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청소년시설 확충(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재단 설립,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전달체계/행정	사회복무제도 지원(자체)

자료: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다. 가평군

가평군이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자체사업은 보육(15.9%), 여성·가족과 청소년(14.6%), 장애인(12.2%) 영역의 복지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생활보장(4.9%), 취약계층(4.9%), 전달체계/행정 (4.9%) 영역은 상대적으로 복지사업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가평군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단위: 개, %)

부문	세부 부문	사업 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4 (4.9)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	4 (4.9)
	장애인	10 (12.2)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6 (7.3)
	보육	13 (15.8)
	여성·가족	12 (14.6)
노인·청소년	노인	9 (11.0)
	청소년	12 (14.6)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8 (9.8)
	전달체계/행정	4 (4.9)
총계		82 (100.0)

자료: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중앙정부 사업, 경기도 사업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과 비교해서 가평군 자체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타 지역의 경우 특정 부문의 사업이 20%를 넘는 실정이나, 가평군의 경우 보육, 여성·가족, 청소년, 장애인 등 상위 4개 영역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재정력 등의 원인으로 자체사업의 절대적인 수가 적기는 하나, 높은 노인인구 비율(24.7%)과 낮은 청소년(13.2%) 및 아동인구 비율(2.2%)을 고려하면(행정안전부, 2020) 노인복지 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낮은 상황이다.

각 부문 및 영역별로 주요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사업추진비, 진료비 부담금 등 제한적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시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은 행려·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 보강(취약계층 영역), 장애인거주시설 물품, 이동편의 차량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함께 다양한 행사지원(장애인 영역)이 시행되고 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냉·난방비, 종사자 지원, 드림스타트(아동복지 영역),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출산 지원, 다함께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육 영역), 다문화가족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성일자리 취업 지원(여성·가족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서는 경로당 시설 개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노인회 지원, 묘지관리(노인 영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 지원(청소년 영역)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재단 운영(지역복지 영역), 사회복지시설 위문, 읍면 복지행정센터 지원(전달체계/행정 영역)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가평군이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자체사업은 앞에 나온 고양, 파주시와 같이 복지서비스가 중심이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지원(각종 행사 포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등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표 4-41〉 가평군의 부문·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진료비 부담금, 맞춤형 교육급여
취약계층지원	기타 취약계층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행려·노숙인 보호 노숙인시설 운영비,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분 행정비용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생활시설자 위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인식개선, 사회활동참여증진 등)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가평군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명절휴가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다함께돌봄사업(자체) 보육교사 장기근속 근무수당 지원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건립,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운영 보육시설 환경개선,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 ·난방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지원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보육행정지원 지역돌봄협의체, 출산 장려 지원
	여성가족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족친화직장조성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사랑의 발관리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활동비 지원

부문	세부 부문	사업명
		여성복지 지원사업, 지역연대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비 시군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노인·청소년	노인복지	경로당 LED조명 교체 사업,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응급서비스요원 활동비 지원 노인복지관 생애 재교육,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 운영지원 묘지 관리(장묘문화, 시설관리, 화장장려금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마을회관(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보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지역사회복지지원
	전달체계/ 행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사회복지 행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읍면 복지행정센터지원

자료: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제4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1.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분포와 분담체계

부산 지역 3개 기초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복지사업은 부산진구와 사상구가 245개, 기장군이 276개이다. 복지사업을 사업의 시행 주체에 따라 기초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비율이 35.9%~4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진구와 사상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비율이 각각 36.7%와 32.2%로 중앙정부 복지사업 다음으로 높다. 한편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비율이 33.7%로 중앙정부 복지사업 다음으로 높다. 기초자치단체 고유사업인 자체 복지사업의 비중은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과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낮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복지의 다양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표 4-42〉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 구분

(단위: 개, (%))

구분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
중앙정부 사업	105 (42.9)	104 (42.4)	99 (35.9)
광역자치단체 사업	90 (36.7)	79 (32.2)	84 (30.4)
기초자치단체 사업	50 (20.4)	62 (25.3)	93 (33.7)
합계	245(100.0)	245 (100.0)	276 (100.0)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를 영역별로 구분한 결과 장애인, 아동복지, 보육, 그리고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은 전통적 복

지대상자에게 여전히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앙정부 사업은 장애인 영역에, 부산광역시 사업은 보육 영역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노인 영역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영역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중앙		광역		기초		계	%
	사업 수	비중	사업 수	비중	사업 수	비중		
전체	308	40.2	253	33.0	205	26.8	766	100.0
기초생활보장	40	58.0	11	15.9	18	26.1	69	100.0
취약계층	1	11.1	5	55.6	3	33.3	9	100.0
장애인	64	47.1	50	36.8	22	16.2	136	100.0
아동복지	51	39.5	51	39.5	27	20.9	129	100.0
보육	45	36.3	52	41.9	27	21.8	124	100.0
청소년	27	46.6	11	19.0	20	34.5	58	100.0
여성·가족	36	57.1	11	17.5	16	25.4	63	100.0
노인	15	15.0	45	45.0	40	40.0	100	100.0
지역복지	17	41.5	10	24.4	14	34.1	41	100.0
전달체계	12	35.3	6	17.6	16	47.1	34	100.0
기타	0	0.0	1	33.3	2	66.7	3	100.0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 영역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영역과 노인 영역은 부산광역시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다.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전달체계 영역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조와 최근 영유아, 아동, 노인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사업 수가 적은 기타 영역을 제외하면, 전달체계 영역과 노인 영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 수를 살펴보면, 기장군이 노인 영역의 복지사업 수가 많으며,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장애인, 아동, 보육 영역의 복지사업이 많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사업의 집행 역할을 우선 수행하며,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의 수에 비례하여 자체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4〉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단체별-영역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	
	사업 수	비중	사업 수	비중	사업 수	비중
전체	245	100.0	245	100.0	276	100.0
기초생활보장	25	10.2	20	8.2	24	8.7
취약계층	7	2.9	1	0.4	1	0.4
장애인	45	18.4	44	18.0	47	17.0
아동	40	16.3	44	18.0	45	16.3
보육	43	17.6	36	14.7	45	16.3
청소년	15	6.1	21	8.6	22	8.0
여성·가족	24	9.8	19	7.8	20	7.2
노인	24	9.8	28	11.4	48	17.4
지역복지	12	4.9	19	7.8	10	3.6
전달체계	9	3.7	13	5.3	12	4.3
기타	1	0.4	0	0.0	2	0.7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은 영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영역의 경우에 재원구조상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의 형식에 해당하나, 내용적으로 중앙정부가 설정한 기본 틀에 따른 업무처리 성격의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사회복지 대상자별 영역(장애인, 아동복지, 보육, 노인)과 지역복지 영역에서는 자체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영역에서 일반행정처

리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획적 성격의 업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표 4-45〉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단체별-주체별-영역별 현황

(단위: 개)

구분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전체	105	90	50	104	79	62	99	84	93
기초생활보장	14	4	7	13	3	4	13	4	7
취약계층	1	5	1	0	0	1	0	0	1
장애인	24	17	4	20	16	8	20	17	10
아동	14	16	10	20	18	6	17	17	11
보육	16	19	8	13	16	7	16	17	12
청소년	7	2	6	12	3	6	8	6	8
여성·가족	14	6	4	10	2	7	12	3	5
노인	5	14	5	5	16	7	5	15	28
지역복지	6	5	1	7	3	9	4	2	4
전달체계	4	2	3	4	2	7	4	2	6
기타	0	0	1	0	0	0	0	1	1

자료 :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기초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부산진구는 아동복지와 보육 영역, 사상구는 지역복지와 장애인 영역, 그리고 기장군은 노인과 보육 영역에서 자체사업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 분포와 분담체계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고양시), 도·농 복합(파주시), 농·어촌(가평군)의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복지사업을 분석하였다.

〈표 4-46〉 경기 지역 3개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 영역별 현황

(단위: 개, (%))

부문	영역	중앙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사업	계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18 (16.1)	7 (3.6)	4 (3.7)	29 (7.0)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2 (1.8)	3 (1.5)	3 (2.8)	8 (1.9)
	장애인	23 (20.5)	29 (14.7)	21 (19.6)	73 (17.5)
보육·가족 및 여성	아동복지	15 (13.4)	25 (12.7)	7 (6.5)	47 (11.3)
	보육	26 (23.2)	23 (11.7)	12 (11.2)	61 (14.7)
	여성·가족	4 (3.6)	46 (23.4)	19 (17.8)	69 (16.6)
노인·청소년	노인	9 (8.0)	37 (18.8)	13 (12.2)	59 (14.2)
	청소년	8 (7.1)	14 (7.1)	15 (14.0)	37 (8.9)
사회복지일반	지역복지	2 (1.8)	6 (3.0)	10 (9.4)	18 (4.3)
	전달체계/행정	5 (4.6)	7 (3.6)	3 (2.8)	15 (3.6)
총계		112 (100.0)	197 (100.0)	107 (100.0)	416 (100.0)

자료 :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참고, 저자 작성.

3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복지사업(고양시-730개, 파주시-621개, 가평군-491개)을 대상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경기도의 복지사업을 사업의 시행 주체별로 그리고 부문·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46〉과 같다[15]. 전체 복지사업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장애인, 여성·가

15) 중앙정부 사업과 시도 사업은 분석대상인 3개 시군의 공통사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군구 자체사업은 3개 시군의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족, 보육, 노인 영역의 복지사업 수가 많으며, 취약계층과 전달체계·행정, 지역복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복지사업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의 시행 주체와 영역을 연계하여 복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 시도 사업은 아동복지, 여성·가족, 노인 영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영역의 경우 중앙정부 사업과 시도 사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과 지역복지 영역은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복지사업의 시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사업은 보육 및 장애인 영역, 시도 사업은 여성·가족 및 노인 영역, 그리고 시군구 자체사업은 여성·가족과 청소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의 내용과 시행 주체별 구분을 연계하면, 중앙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현금성 수당의 성격을 지닌 사업, 자활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초생활보장과 일자리사업, 경기도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 사업(실버인력뱅크, G-푸드드림 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현금성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이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경기도 복지사업의 보충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금성 수당 지원과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대상자별 현금성 수당(100세 수당 등)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다룬다.

---

16) 이러한 경향은 예산 규모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복지 영역의 기초연금, 보육 영역의 아동수당과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이른바 4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3.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관계 특성

복지사업은 시행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자치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장의 복지사무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 광역, 기초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가 중복적으로 편제된 공통사무가 많다. 그 결과 동일한 대상과 지원 목적을 가진 복지사업을 중앙, 광역, 기초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런데 중앙, 광역, 기초가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사업이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도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완 또는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시·도 사업에서 제공하는 급여·서비스를 보충 또는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며, 시·군·자치구 사업은 시·도 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1〕 중앙-광역-기초 복지사업의 보충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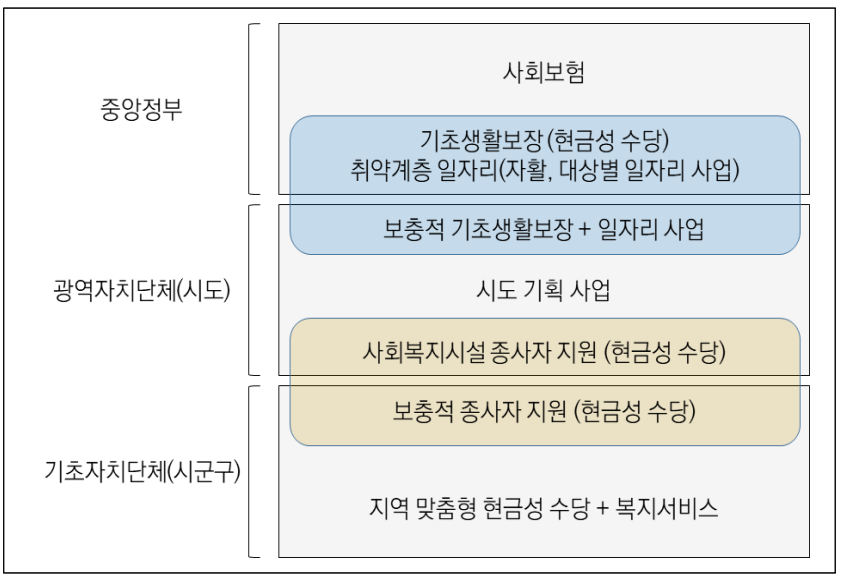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간에 보충·보완적 관계는 복지사업의 배분 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급여 및 서비스를 보충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를 차등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시·도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을 보충하는 특성을 띠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수급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근거나 논리가 부족하다. 따라서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중앙정부 사업을 통해 획일화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 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 보육료에 추가해 지급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등은 시·도가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같은 광역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시·군·자치구 간 격차를 축소 또는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는 보육시설 교직원의 경우 광역 단위에서 인력 이동이 빈번한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질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복지사업은 사업의 시행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 광역자치단체 사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행 주체가 상이한 복지사업은 부문·영역별, 대상자별로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정부 간 관계에서 위계도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 광역, 기초의 한 정부 위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 관점에서 복지사업의 재배분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이 중앙정부 사업 또는 시·도 사업을 보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 사업 간 보충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투입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라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중앙 및 광역 사업에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에 단순히 사업량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추가 재원 투입으로 인해 사업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동급식 추가 지원, 보육시설의 교재교구

비 추가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이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급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있다. 따라서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추가 재원 투입이 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 재원 투입이 복지사업의 내용을 변경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업량의 증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재교구비에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로 인해 교재교구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없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 그만큼 근로조건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복지사업의 경우에 추가 재원 투입이 초래하는 변화를 고려하여 자체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제1절 분담체계 개선의 방향성
제2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제3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제 5 장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제1절 분담체계 개선의 방향성

1. 분담체계 개선의 범위

복지사무 담당 주체, 복지사무 내용, 그리고 주체별 역할의 중첩성 여부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복지사무를 구분하면 〈표 5-1〉과 같이 8개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복지사무는 크게 2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원칙, 그리고 중앙 및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다소 추상적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무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 대상자 또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하는 근거 규정, 또는 특정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복지사무이다. 전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복지사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복지사무 분담체계의 관점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다. 반면에 후자는 복지사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복지사무는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추진할 수 있다는 병렬적 나열 방식의 공통사무에 해당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어 있으며, 복지사무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사무의 분담체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체 복지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복지사업 분

담체계 개선 방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5-1〉 복지사무의 유형과 주요 내용

복지사무 유형	조문 수	복지사무 내용
①중앙·광역·기초 동일사무	521	사회복지 원칙·방향성 제시, 책임·의무 명시 사회복지 시책·사업·대책 등 강구 및 시행
②중앙·광역 동일사무	38	종합·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앙·광역 단위 사회복지시설·기관 설치 예방교육 및 일부 종사자 교육 훈련
③중앙·기초 동일사무	30	일부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관련 정보 제공
④광역·기초 동일사무	138	지방자치단체 단위 위원회 구성·운영 일부 급여·서비스, 대상자의 변동 관리 일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리·감독
⑤중앙·광역·기초 개별사무	50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업무 서비스이용권(바우처) 관련 업무 운영 및 위탁 관리
⑥중앙 전담사무	363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시행계획 평가 실태조사, 급여기준 설정 및 급여적정성 평가 중앙기관 운영, 정보시스템, 전문인력 자격증 관리
⑦광역 전담사무	33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 광역단위 복지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감독
⑧기초 전담사무	195	급여의 신청접수, 조사, 결정, 지급 및 관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리·감독
합계	1,368	

자료 : 저자 작성.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유형의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 2개 행정기관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중앙·광역 동일사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이며, 광역·기초 동일사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앙·광역 동일사무는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업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

는 예방적 성격의 교육과 복지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관련 일부 업무 등이 있다. 중앙·기초 동일사무는 일부 사회복지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업무, 그리고 제한적 범위에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등이 있다. 광역·기초 동일사무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높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일부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과 관리, 급여 수급자의 변동 관리,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리·감독 업무가 있다.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유형에 해당하는 복지사무는 분담체계 개선의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사무가 서로 상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한 사무, 그리고 서비스이용권 관련 업무의 운영과 업무의 위탁 관리에 관련한 사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동일한 영역의 업무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어 있으며, 현행 분담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여덟째 유형의 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개별 복지사무를 각각 전담하는 경우이다. 중앙전담사무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해당하는 업무가 없고, 해당 복지사무를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담사무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의 복지사무는 현행 분담체계 변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만, 분담체계 개편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부 복지사무의 담당기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사무 유형에 따른 분담체계 개선의 대상 범위를 정리하면, 중앙·광역·기초 동일사무는 전면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개 행정기관의 복지사무가 중첩된 동일사무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사무는 분담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없으며, 개별사무는 분담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담사무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분담체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담체계 개선의 원칙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개별사무와 전담사무 내용을 근거로 도출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정책결정, 포괄계획·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복지급여 기준 설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급여·서비스 결정과 제공,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와 같은 정책집행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인가·취소 이외에는 별다른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복지급여·서비스 공급 조정, 사회복지시설 및 인력 관리 등과 같은 정책집행 관리와 조정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광역자치단체는 정책조정과 집행관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정책집행이 핵심 기능과 역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둘째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 동일사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전담사무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담당사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사무 전담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셋째 원칙은 동일사무 비중을 축소하고, 개별사무와 전담사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별사무란 동일한 기능의 업무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상이한 내용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사무로 분류되는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전담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가 서로 중복 또는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넷째 원칙은 복지업무 특히 정책집행 업무 절차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청 접수,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결정, 급여 지급, 급여 및 대상자의 변동 관리, 이의신청 등 복지급여(서비스)의 집행업무 전반을 일관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영역별, 대상자별, 급여·서비스의 종류 및 복지사업별로 집행업무의 절차가 동일하거나 또는 차이가 줄어들도록 분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일원화, 판단 및 결정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2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1. 복지사무 담당기관의 용어 정리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둘째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같

은 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보장기관,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복지실시기관 등이 있다.

이러한 3가지 종류의 용어 중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리고 「주거급여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장기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사무의 담당기관을 규정하는 내용에 혼선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보장기관,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복지실시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주로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복지사무의 담당기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능한 한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용어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복지사무 담당기관을 정하는 법률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와 시·군·자치구라는 2개의 자치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1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서 복지사무 담당기관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특히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기능과 역할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법」 제8조 제1항[17]과 「제주특별법」 제9조 제1항[18]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규정을 적용하면,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에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담당사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규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과 같이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용어로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방안이다.

2. 중앙·광역·기초의 역할과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의 핵심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는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담당할 복지사무로는 포괄적 성격의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국적 차원의 각종 실태조사,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자격 관리,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평가와 서비스 품질관리, 사회복지 재원 총량 결정과 재원조달의 책임,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수준 및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정책 조정과 총괄 집행관리 주체로서 담당할 복지사무로는 종합계획·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 사회복지법인 인가·취소,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급 및 역량제고, 재원 분담, 관할구역

시·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조정,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수요 파악,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공급(량) 조정, 기초자치단체 급여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와 결정 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주체로서 담당해야 할 복지사무로는 관할구역 단위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주민 대상 상담 및 정보 제공,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 급여액 및 서비스 내용 결정 및 제공, 급여·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 급여·서비스 변동 및 관리, 대상자 (변동)관리, 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관리, 급여·서비스 제공인력의 임면 등이 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개편한 내용은 〈표 5-2〉와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복지사무를 정책 결정·기획, 정책 집행, 복지 재원, 기반 조성, 법인·시설·기관, 그리고 인력 등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할 복지사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경우에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수준 결정, 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결정,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검토와 결정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시·군·자치구의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공급량을 조정·조율하며, 시·군·자치구의 처분 및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검토와 결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신청 접수, 신청에 따른 조사, 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과 급여 변동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변동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5-2〉 중앙·광역·기초의 역할에 근거한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 방안

구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정책 결정·기획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 각종 실태조사 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분석·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역별 복지수요 파악 연구·분석·평가	관할구역 사회복지계획
정책 집행	급여·서비스 수준 설정 대상자 기준 설정 이의신청 검토·결정	관할구역 급여·서비스 공급(량) 조정 이의 신청 검토·결정	신청접수, 조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급여 지급 및 변동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변동 관리
복지 재원	재원 총량 결정 재원 조달	재원 분담 관할구역 내 재정조정	재원 분담
기반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 보호·관리	개인정보 보호·관리	개인정보 보호·관리
법인·시설·기관	중앙 단위 전담기관 운영	법인·시설의 개폐 제공기관 인증/인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서비스제공기관 관리
인력	전문인력 자격 관리	담당인력의 수급 종사자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관리	시설 종사자 임면

자료 : 저자 작성.

제3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복지사업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광역·기초 동일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따라서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은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의 원칙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자치사무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사무를 먼저 설정하는 방식의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복지사업 즉 국고보조 복지사업을 기능

중심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크게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복지서비스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사업으로 설정하여, 중앙정부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사무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자치사무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국고보조 복지사업 중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복지사업은 국고보조 복지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기획, 집행 등 전체 과정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국고보조 복지사업 중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지방이양의 결과는 해당 복지사업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사무로 전환되는 것이며, 사업 기획과 집행의 모든 권한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책임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전담사무(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적 공공재와 지방적 공공재를 구분하는 효율성 원칙에 따른 배분(구인회, 양난주, 이원진, 2009, p.105)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복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김광병, 2018, p.211)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와 급여의 적절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은 중앙정

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대응성이 필요하고, 급여·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무 배분의 효율성 원칙'과 '복지사업의 목표'라는 2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내용은 〔그림 5-1〕과 같다.

형평성과 적절성을 지향해야 할 사업으로는 국가적 공공재에 해당하는 유형 1과 지방적 공공재에 해당하는 유형 2가 있다. 유형 1은 소득보장제도(공공부조, 공적연금, 기초연금)와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있으며, 유형 2는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과 같은 현금급여가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현금급여는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형 1과 유형 2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은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 전담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형 3은 국가적 공공재에 해당하지만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대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은 고용지원, 일자리,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있다. 고용지원과 일자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현물 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준적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노동시장 구조는 자치계층 및 행정구역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고용 및 일자리 지원은 지방적 공공재라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와 사업 수요가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형 3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사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집행을 담당하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5-1〕 중앙·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 유형

국가적 공공재	**유형1** · 소득보장 · 의료보장	**유형3** · 고용지원/일자리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방적 공공재	**유형2** · 아동수당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유형4** · 아동/노인 돌봄서비스 · 가족지원 · 복지시설 운영
	형평성/적절성	유연성/대응성

자료 : 김광병. (2018).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 -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학회. 9**(3), 211;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 (2009).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10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유형 4는 지방적 공공재에 해당하면서 집행할 때 유연성과 대응성이 필요한 복지사업이다.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전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 4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복지사무 조사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무는 총 1,368개 조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복지사무 내용, 그리고 담당기관별 역할의 중첩성 여부 등 3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복지사무를 분류하면 ①중앙·광역·기초 동일사무, ②중앙·광역 동일사무, ③중앙·기초 동일사무, ④광역·기초 동일사무, ⑤중앙·광역·기초 개별사무, ⑥중앙 전담사무, ⑦광역 전담사무, ⑧기초 전담사무의 8개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521개 조문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복지사무는 크게 2가지 나눌 수 있으며,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원칙, 그리고 중앙 및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다소 추상적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무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 대상자 또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하는 근거 규정, 또는 특정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유형의 복지사무는 각각 38개, 30개, 138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3개 유형의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 2개 행정기관의 담당사무가 동일한 내용으로 중첩되어 있는 유형이다. 중앙·광역 동일사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

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이며, 광역·기초 동일사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섯째 유형의 복지사무는 50개 조문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사무가 서로 상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여덟째 유형의 사무는 각각 363개, 33개, 그리고 195개 조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복지사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개별 복지사무를 각각 전담하는 경우이다. 중앙 전담사무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해당하는 업무가 없고, 해당 사무를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복지사업 조사 결과

복지사업 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영역 및 복지사무의 담당기관을 구분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영역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취약계층, 아동복지, 여성·가족, 노인 영역은 광역자치단체 담당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지역복지와 전달체계 영역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영역은 광역자치단체 담당사업이 가장 많으나, 중앙정부 담당사업과 유사한 수준이며, 청소년 영역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사업이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사업은 장애인, 부산광역시 사업은 보육,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군·자치구) 사업은 노인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 영역은 중앙정부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취약계층과 노인 영역은 부산광역시 사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전달체계 영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및 장애인 영역에서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다.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복지사업은 아동복지, 여성·가족, 노인 영역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영역의 경우 중앙정부 사업과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사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청소년과 지역복지 영역은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사업과 기초자치단체(시군) 사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복지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담당기관을 연계하면, 중앙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기초연금 등 현금성 수당의 성격을 띠는 사업, 자활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을 띠는 기초생활보장과 일자리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현금성 수당의 성격을 띠는 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보충적 성격을 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금성 수당 지원과 함께 대상자별 현금성 수당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등의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영역의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설정한 틀에 따른 업무처리 성격의 사무가 많다. 또한, 대부분 영역에서 일반행정처리 성격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획적 성격의 업무라기보다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를 위한 복지사업에 해당한다. 반면에 장애인, 아동, 보육, 노인 등과 같이 대상자별 영역, 그리고 지역복지 영역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중에서 중앙정부 사업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의 복지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추가 예산 투입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사업량 증가와 같은 양적 변화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며, 한편추가 예산 투입으로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복지사업의 내용 변화와 같은 질적 변화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3.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복지사무는 포괄적 성격의 종합계획·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국적 차원의 각종 실태조사,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자격 관리,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평가와 서비스 품질 관리, 사회복지 재원 총량 결정과 재원조달의 책임,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수준 및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종합계획·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 사회복지법인 인가·취소,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급 및 역량 제고, 재원 분담,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조정,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수요 파악,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공급(량) 조정, 기초자치단체 급여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와 결정 등의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복지사무는 관할구역 단위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주민 대상 상담 및 정보 제공,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 급여액 및 서비스 내용 결정 및 제공, 급여·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 급여·서비스 변동 및 관리, 대상자 (변동)관리, 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관리, 급여·서비스 제공인력의 임면 등이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사무 분담체계를 개선 또는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 동일사무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전담사무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광역·기초 동일사무로 인하여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 기능과 역할 정립을 전제로 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사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담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는 동일사무의 비중을 축소하고, 개별사무와 전담사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별사무는 동일한 기능의 업무를 중앙·광역·기초가 서로 상이한 내용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전담사무는 중앙과 지자체가 담당하는 사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중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광역·기초의 역할이 중복 또는 중첩되는 동일사무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다.

4.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방안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의 출발점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사무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다.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하나는 국고보조 복지사업 중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복지사업은 국고보조 복지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기획, 집행 등 전체 과정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 복지사업 중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업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권한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대한 책임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급여,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사업은 전국적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전담사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 전담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유연성과 대응성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은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절 정책 제언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정리하고,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의 분담체계를 분석하였다. 또

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원칙과 대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와 정책 대안 제시에 추가하여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재 복지사무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복지사무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현황자료와 관련 정책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사무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관해 내용 분석과 세부 분류 등의 추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사업 조사는 사업 목록과 사업 수를 파악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사무 개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그리고 정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사무 분담체계의 변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사업 분담체계의 조정과 개선은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사업의 집행 절차를 명료화하고,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급여·서비스의 신청과 접수,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결정, 급여 지급, 급여 및 대상자의 변동 관리, 이의신청 등 복지 급여·서비스에 대한 집행업무 전반을 일관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영역별, 대상자별, 급여·서비스의 종류와 복지사업별로

집행업무의 절차가 동일하거나 또는 차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절차의 일원화, 판단 및 결정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추진체계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기구, 정책조정과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기구, 그리고 관련 분석 및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된다. 실무 담당기구는 중앙행정기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협의기구의 역할은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분석 담당기구는 중앙정부 수준의 국책연구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은 단기적 추진이 아닌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다.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의 분담체계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분담체계 변경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체계 즉 공통사무의 조정,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 (2009).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99-1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 **사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68629&searchKeywordTo=3 에서 2020. 10. 15 인출.

김광병. (2018).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 -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학회. 9**(3). 209-228.

김필두, 김병국, 금창호, 이병기, 주재복, 강기홍, 김지현. (2009). **법령상 사무총조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한부영. (2017).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유석. (2015).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농정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393-416.

박재희. (2019).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 분석: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3). 37-63.

박해룡, 이종열. (2001). 환경행정 기능배분 기준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65-182.

박혜자, 오재일, (2003). 문화행정에 있어서 분권화와 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4), 953-975.

안영훈. (2009).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149-171.

오연풍. (2012).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체육사무의 배분.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2), 75-92.

이신정, 최영화, 윤해복. (2015).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실천**

전략 수립 연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임승빈, 이기우, 한부영. (2008).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서울: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자치분권위원회. (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서울: 자치분권위원회.

정홍원, 김보영, 민효상, 이정은. (2019).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봉석. (2015). 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5**(4), 69-95.

최봉석, 조성규, 최환용, 박재윤, 김도승, 윤석진, 구지선. (20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 연구**. 서울: 행정자치부.

최흥석, 금창호, 육동일, 김태영, 김익식. (2008). **국가-지방간 관계 정립을 통한 지방분권의 비전과 전략 수립.** 서울: 행정안전부,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기능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연구.** 서울: 자치분권위원회.

한부영, 박재희. (20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윤재, 이희정, 한재환. (2010). 식품안전관련 법령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분배구조 분석. **농촌경제, 33**(3), 37-62.

총무처. (1994), **중앙-지방사무 총람.** 서울: 총무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2002), **부처별 단위사무목록: 제1-4권**.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 **국가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 사무발굴**.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법령상 사무총조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2007). **사무조사를 통한 사무배분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행정자치부.

2. 통계 자료와 예산서

가평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고양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기장군.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산진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상구.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파주시. (2020).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 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 2020. 9. 1. 인출

3.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제15448호 (201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법률 제14439호 (2016).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5350호 (201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 법률 제11282호 (20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법률 제16413호 (201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법률 제14701호 (201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고령친화산업법), 법률 제15872호 (20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법률 제 17453호 (20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6367호 (2019).
국민연금법, 법률 제16867호 (2020).

기초연금법, 법률 제16868호 (2020).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5878호 (201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법률 제16242호 (2019).
노인복지법, 법률 제17199호 (2020).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13365호 (20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복지법), 법률 제15882호 (2018).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법률 제15204호 (201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법), 법률 제13991호 (2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법률 제17200호 (202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설미성년후견법), 법률 제14695호 (20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7201호 (2020).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5885호 (20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20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법률 제15886호 (2018).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6738호 (201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률 제17091호 (20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450호 (2018).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법률 제15451호 (20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법률 제16853호 (202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기부법), 법률 제16373호 (201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법률 제15608호 (20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6275호 (2019).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2020).
아동수당법, 법률 제16249호 (201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동빈곤예방법), 법률 제14839호 (2017).
아이돌봄지원법, 법률 제15270호 (2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법률 제16085호 (20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 법률 제16086호 (2018).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091호 (2020).
의료급여법, 법률 제16374호 (20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법률 제15897호 (20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15207호 (2017).
입양특례법, 법률 제16248호 (20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법률 제17215호 (20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아동복지법), 법률 제14332호 (20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법률 제17091호 (202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보조기기법), 법률 제14891호 (20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 법률 제17091호 (2020).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20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제15272

호 (20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법률 제17091호 (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법률 제16568호 (2020).
주거급여법, 법률 제15358호 (20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 법률 제15648호 (2018).
지방자치법, 법률 제16705호 (2018).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지방재정법, 법률 제17390호 (2020).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7091호 (2020).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법), 법률 제15988호 (2018).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활동법), 법률 제15453호,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 법률 제15354호 (2018).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법), 법률 제15989호 (201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효행장려법), 법률 제15190호 (2017).

[부록 1] 복지사무 목록

〈부표 1-1〉 복지사무 : 기초생활보장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결정	급여 범위·수준을 초과한 급여 실시	급여 범위·수준을 초과한 급여 실시	기초생활보장법	4조
기초생활보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도·감독			기초생활보장법	15조의2
기초생활보장	자활복지개발원 설립·운영 경비 보조 또는 출연 국유재산 무상대부, 양여, 사용, 수익			기초생활보장법	15조의6
기초생활보장		광역자활센터 지정		기초생활보장법	15조의10
기초생활보장			지역자활센터 지정	기초생활보장법	16조
기초생활보장			자활기관협의체 구축	기초생활보장법	17조
기초생활보장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18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채용기업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채용기업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채용기업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2
기초생활보장	자활기금 적립	자활기금 적립	자활기금 적립	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자산형성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자산형성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자산형성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촉진 교육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촉진 교육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촉진 교육	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5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			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6
기초생활보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기초생활보장법	20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2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실시·공표,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접수와 직권 신청	기초생활보장법	21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의한 조사, 의료기관 검진	기초생활보장법	22조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수립, 수급자 정기 조사	기초생활보장법	23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기초생활보장법	24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조사 결과 보고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조사 결과 보고	기초생활보장법	25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결정 통지	기초생활보장법	2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급여 실시	기초생활보장법	28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등 변동에 따른 급여 변경	수급자 소득 등 변동에 따른 급여 변경	기초생활보장법	29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기초생활보장법	30조
기초생활보장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및 수급자 조사 기피에 따른 급여 결정 취소 청문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및 수급자 조사 기피에 따른 급여 결정 취소 청문	기초생활보장법	31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거주지역 등 변경 신고 수리	수급자 거주지역 등 변경 신고 수리	기초생활보장법	37조
기초생활보장		시군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통지		기초생활보장법	39조
기초생활보장	시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통지			기초생활보장법	41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 체납처분	기초생활보장법	46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전부/일부 반환 명령	기초생활보장법	47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의료급여법	5조의2
의료급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급여법	6조
의료급여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법	8조
의료급여	공익상,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	의료급여기관 개설·설치, 신고·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시 전문기관에 통보	의료급여기관 개설·설치, 신고·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시 전문기관에 통보	의료급여법	9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 지급	의료급여법	11조
의료급여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의료급여법	11조의5
의료급여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경우 요양비로 지급	의료급여법	12조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임신기간 중 진료 추가 급여	의료급여법	13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	의료급여법	14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한	의료급여법	15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내용 등 변경	의료급여법	16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중지	의료급여법	17조
의료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의료급여법	19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액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	의료급여법	21조
의료급여			대지급금 독촉, 징수	의료급여법	22조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징수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	의료급여법	23조
의료급여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의료급여법	24조
의료급여		의료급여기금 설치, 조성		의료급여법	25조
의료급여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용		의료급여법	26조
의료급여		급여비용 지급업무 위탁시 추정급여비용을 예탁		의료급여법	2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의료급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의료급여법	28조
의료급여	과징금 부과·징수			의료급여법	29조
의료급여	제조업자등의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명령, 질문, 검사, 조사			의료급여법	29조의2
의료급여	기금관리·운용, 의료급여 관련 시도/시군구 지도·감독 의료급여기관 등 보고/서류제출 명령, 질문, 검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고 명령, 질문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고 명령, 질문	의료급여법	32조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의료급여법	32조의3
의료급여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급여법	37조
주거급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1-2호 고려)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1-2호 고려)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1-2호 고려)	주거급여법	3조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 거주 관할단체장이 주거급여 실시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배치	수급권자(수급자) 거주 관할단체장이 주거급여 실시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배치	주거급여법	6조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결정			주거급여법	7조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결정			주거급여법	8조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 신청에 따른 조사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 신청에 따른 조사	주거급여법	1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주거급여		(특별자치시·도)확인조사(1-3호 사항) 실시	확인조사(1-3호 사항) 실시	주거급여법	11조
주거급여		(특별자치시·도)신청조사·확인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출입 조사, 관계기관 협조 요청, 개인정보자료 처리	신청조사·확인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출입 조사, 관계기관 협조 요청, 개인정보자료 처리	주거급여법	13조
주거급여		(특별자치시·도)급여신청 각하, 급여 중지, 통지	급여 신청 각하, 급여 중지, 통지	주거급여법	14조
주거급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주거급여법	15조
주거급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 실시			주거급여법	16조
주거급여	주거급여 필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자료 수집·관리·보유, 자료제공 요청			주거급여법	17조
주거급여	주거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지도·감독, 보고 명령			주거급여법	18조
주거급여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주거급여법	19조
주거급여		비용의 징수, 반환 명령	비용의 징수, 반환 명령	주거급여법	20조

〈부표 1-2〉 복지사무 : 취약계층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굴과 신속한 지원 노력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안내 계속지원 필요시 다른 법률로 지원 노력 민간과 연계를 통한 지원 노력	위기상황 발굴과 신속한 지원 노력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안내 계속지원 필요시 다른 법률로 지원 노력 민간과 연계를 통한 지원 노력	위기상황 발굴과 신속한 지원 노력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안내 계속 지원 필요 시 다른 법률로 지원 노력 민간과 연계를 통한 지원 노력	긴급복지지원법	4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실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긴급복지지원법	6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요청·신고 접수	긴급복지지원법	7조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7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사업 홍보 실시	긴급지원사업 홍보 실시	긴급지원사업 홍보 실시	긴급복지지원법	7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굴조사	위기상황 발굴조사	위기상황 발굴조사	긴급복지지원법	7조의2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현장 확인 및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8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지원금 입금	긴급복지지원법	9조의2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기간 연장	긴급복지지원법	10조
긴급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담당기구 설치,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긴급복지지원법	11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긴급복지지원법	12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지원 조사	긴급복지지원법	13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긴급복지지원법	15조
긴급복지지원		이의신청 접수, 검토, 시정조치		긴급복지지원법	16조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노숙인복지법	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노숙인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행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행		노숙인복지법	8조
노숙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국회에 보고			노숙인복지법	8조의2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노숙인복지법	9조
노숙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노숙인복지법	10조
노숙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운영	노숙인급식시설 설치·운영	노숙인급식시설 설치·운영 노숙인급식시설 설치·운영 신고수리	노숙인복지법	11조
노숙인	노숙인진료시설 설치·운영·지정	노숙인진료시설 설치·운영·지정	노숙인진료시설 설치·운영·지정	노숙인복지법	12조
노숙인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노숙인복지법	12조의2
노숙인	고용정보 제공,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	고용정보 제공,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	고용정보 제공,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수리	노숙인복지법	13조
노숙인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신고수리	노숙인복지법	15조
노숙인			노숙인의 복지시설 입소 의뢰 입소퇴소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노숙인복지법	17조
노숙인	금지행위 위반사실 공표	금지행위 위반사실 공표	금지행위 위반사실 공표	노숙인복지법	21조의2
노숙인	노숙인시설 지도·감독, 인권실태 등을 조사·검사·질문	노숙인시설 지도·감독, 인권실태 등을 조사·검사·질문	노숙인시설 지도·감독, 인권실태 등을 조사·검사·질문	노숙인복지법	21조의4
노숙인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	노숙인복지법	22조
노숙인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노숙인복지법	28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의사상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의사상자법	4조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	의사상자법	5조
의사상자	부상등급 변경 인정		부상등급 변경 청구	의사상자법	6조
의사상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통보			의사상자법	6조의2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영전의 수여			의사상자법	7조
의사상자	의사상자에 대한 기념사업 수행 기념사업수행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의사상자에 대한 기념사업 수행	의사상자에 대한 기념사업 수행	의사상자법	7조의2
의사상자	의상자,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법	8조
의사상자	의사상자 물건 멸실·훼손의 손해액 상당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법	9조
의사상자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장제보호 실시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장제보호 실시	의사상자법	16조
의사상자	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의 환수	의사상자법	19조

〈부표 1-3〉 복지사무 : 장애인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발달장애인법	6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심판청구, 후보자 추천 등)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심판청구, 후보자 추천 등)	발달장애인법	9조
발달장애인	중요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배포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교육 실시 민원담당직원의 의사소통 지침과 필요 교육 실시	중요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배포	중요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배포	발달장애인법	10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법	11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근절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근절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근절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법	14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및 승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및 승인	발달장애인법	19조
발달장애인		보호자 없는 경우 계좌관리인을 지정	보호자 없는 경우 계좌관리인을 지정	발달장애인법	21조
발달장애인		보호자, 계좌관리인의 계좌 관리 점검	보호자, 계좌관리인의 계좌 관리 점검	발달장애인법	22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장애 조기발견에 필요한 정책 강구	발달장애인의 장애 조기발견에 필요한 정책 강구	발달장애인의 장애 조기발견에 필요한 정책 강구	발달장애인법	23조
발달장애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발달장애인법	23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발달장애인법	2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위 사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와 의료지원체계 구축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위 사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위 사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생활 영위에 필요한 조치 강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직업생활 영위에 필요한 조치 강구	발달장애인 직업생활 영위에 필요한 조치 강구	발달장애인법	25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요건 설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필요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필요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필요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법	26조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발달장애인법	27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노력	발달장애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노력	발달장애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노력	발달장애인법	28조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 제공	거주시설, 주간활동,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 제공	거주시설, 주간활동,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 제공	발달장애인법	29조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교육 및 필요 경비 지원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교육 및 필요 경비 지원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교육 및 필요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법	30조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 경비 지원	보호자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 경비 지원	보호자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법	31조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족에 대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족에 대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법	3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발달장애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경비 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법	33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발달장애인법	36조
발달장애인	30-32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설정	30-32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	30-32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발달장애인법	37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휴업 신고 수리, 필요 조치 마련 서비스제공기관 업무 정지, 지정 취소	발달장애인법	38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와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와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와 감독	발달장애인법	39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자료제출/보고 명령, 장부/서류 검사	서비스 제공기관 자료제출/보고 명령, 장부/서류 검사	서비스 제공기관 자료제출/보고 명령, 장부/서류 검사	발달장애인법	40조
발달장애인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발달장애인법	44조
장애아동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1~6호)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1~6호)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1~6호)	장애아동복지법	6조
장애아동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장애아동복지법	8조
장애아동		(특별자치도)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아동복지법	9조
장애아동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장애아동복지법	1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아동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특별자치도)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 장애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 장애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복지법	12조
장애아동		(특별자치도)복지지원 대상자 여부 심사, 결과 통보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 심사, 결과 통보	장애아동복지법	14조
장애아동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장애아동복지법	15조
장애아동		(특별자치도)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장애아동복지법	16조
장애아동		(특별자치도)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장애아동복지법	17조
장애아동		(특별자치도)장애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	장애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	장애아동복지법	18조
장애아동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복지법	19조
장애아동	보조기구 교부·대여, 수리, 구입·수리비용 지급	보조기구 교부·대여, 수리, 구입·수리비용 지급	보조기구 교부·대여, 수리, 구입·수리비용 지급	장애아동복지법	20조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서비스 지원	발달재활지원서비스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운영, 지정 취소	발달재활지원서비스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운영, 지정취소	장애아동복지법	21조
장애아동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등 미이용 장애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등 미이용 장애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등 미이용 장애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장애아동복지법	22조
장애아동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지원 제공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지원 제공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비용을 지원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지원 제공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비용을 지원	장애아동복지법	23조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복지법	2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아동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장애아동복지법	25조
장애아동	문화·예술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 노력	문화·예술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 노력	문화·예술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 노력	장애아동복지법	26조
장애아동	장애아동과 그 가족(취약가정)에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1~7호)	장애아동과 그 가족(취약가정)에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1~7호)	장애아동과 그 가족(취약가정)에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1~7호)	장애아동복지법	2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장애아동복지법	29조
장애아동		(특별자치도)복지지원 제공기관 설치·운영 비용 지원	복지지원 제공기관 설치·운영 비용 지원	장애아동복지법	31조
장애아동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확보 노력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확보 노력 (특별자치도)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운영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확보 노력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운영	장애아동복지법	32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지도와 감독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지도와 감독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지도와 감독	장애아동복지법	34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 조사 및 검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 조사 및 검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 조사 및 검사	장애아동복지법	35조
장애아동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 실시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 실시	장애아동복지법	36조
장애아동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아동복지법	41조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권 존중, 보호, 실현 의무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장애인 건강권 존중, 보호, 실현 의무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장애인 건강권 존중, 보호, 실현 의무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장애인건강권법	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건강위협 상황 예방을 위한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정책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건강위협 상황 예방을 위한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정책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건강위협 상황 예방을 위한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정책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건강권법	6조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검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검진결과에 따라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 설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검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검진결과에 따라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검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검진결과에 따라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장애인건강권법	7조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	장애인건강권법	8조
장애인의료	의료기관 이용시 적절한 편의 제공 방문진료 사업 수행	의료기관 이용시 적절한 편의 제공 방문진료 사업 수행	의료기관 이용시 적절한 편의 제공 방문진료 사업 수행	장애인건강권법	9조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개발 사업 시행			장애인건강권법	10조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시행			장애인건강권법	11조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실시			장애인건강권법	12조
장애인의료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실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실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실시	장애인건강권법	13조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권 교육(1~4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1~4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1~4호 대상)	장애인건강권법	14조
장애인의료	재활운동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대상 체육프로그램 제공 재활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	장애인대상 체육프로그램 제공	장애인대상 체육프로그램 제공	장애인건강권법	15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의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건강권법	16조
장애인의료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 지급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 지급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 지급	장애인건강권법	17조
장애인의료		(특별자치시·도)지급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지급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장애인건강권법	17조의2
장애인의료	재활의료기관 지정, 지정 취소			장애인건강권법	18조
장애인의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건강권법	19조
장애인의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건강권법	20조
장애인의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취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취소		장애인건강권법	21조
장애인의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1~8호 사항)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1~8호 사항)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1~8호 사항)	장애인건강권법	22조
장애인의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도·감독,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장애인건강권법	23조
장애인의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장애인건강권법	24조
장애인의료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건강권법	28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활용촉진, 서비스제공, 효율적 관리 노력 필요한 재원조달 등 관련조치 강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	보조기기 활용촉진, 서비스제공, 효율적 관리 노력 필요한 재원조달 등 관련조치 강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	보조기기 활용촉진, 서비스제공, 효율적 관리 노력 필요한 재원조달 등 관련조치 강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	장애인보조기기법	3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조기기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보조기기법	5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1~4호 사업)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1~4호 사업)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1~4호 사업)	장애인보조기기법	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보조기기	보조기기 교부·대여, 사후관리 비용 지원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보조기기 교부·대여, 사후관리 비용 지원	보조기기 교부·대여, 사후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보조기기법	8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정보 제공			장애인보조기기법	9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품질관리, 대상품목과 방법 등을 고시			장애인보조기기법	10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및 이용자정보 전산시스템으로 수집·관리	보조기기 및 이용자정보 전산시스템으로 수집·관리	보조기기 및 이용자정보 전산시스템으로 수집·관리	장애인보조기기법	11조
보조기기	중앙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위탁 시 경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법	13조
보조기기	지역보조기기센터 위탁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지역보조기기센터 위탁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역보조기기센터 위탁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보조기기법	14조
보조기기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장애인보조기기법	15조
보조기기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명령			장애인보조기기법	17조
보조기기	보조공학사 자격 취소			장애인보조기기법	18조
보조기기	보조공학사 자격 정지			장애인보조기기법	19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생산업체 장려금,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연구개발 장려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보조기기 생산업체 장려금,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연구개발 장려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보조기기 생산업체 장려금,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연구개발 장려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장애인보조기기법	21조
보조기기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	장애인보조기기법	22조
편의증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설비 이용과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설비 이용과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설비 이용과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장애인등편의법	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편의증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	장애인등편의법	9조의2
편의증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	장애인등편의법	9조의3
편의증진	편의시설 설치·운영 업무 총괄 소관편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	소관편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	소관편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	장애인등편의법	10조
편의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 인증기관 지정, 인증업무 위탁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2
편의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5
편의증진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6
편의증진	인증 취소 또는 인증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7
편의증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인등편의법	11조
편의증진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실적 제출 (복지부장관)편의시설설치국가종합계획수립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실적 제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실적 제출	장애인등편의법	12조
편의증진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운영			장애인등편의법	12조의2
편의증진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지원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지원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지원	장애인등편의법	13조
편의증진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촉진 시책 편의시설상세표준도작성보급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촉진 시책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촉진 시책	장애인등편의법	1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편의증진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실시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실시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실시	장애인등편의법	14조의2
편의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등편의법	17조
편의증진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장애인등편의법	22조
편의증진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관리, 보수 개선 조치 명령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관리, 보수 개선 조치 명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관리, 보수 개선 조치 명령	장애인등편의법	23조
편의증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장애인등편의법	24조
편의증진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등편의법	27조
장애인복지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보장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보장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보장	장애인복지법	5조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의 보호 정책을 강구	중증장애인의 보호 정책을 강구	중증장애인의 보호 정책을 강구	장애인복지법	6조
장애인복지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7조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복지 향상 책임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국민의 올바른 이해에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의 복지 향상 책임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국민의 올바른 이해에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의 복지 향상 책임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국민의 올바른 이해에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9조
장애인복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장애인복지법	10조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해당년도 사업계획,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 확정을 국회에 보고			장애인복지법	10조의3
장애인복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장애인복지법	11조
장애인복지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장애인복지법	1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	장애인복지법	13조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장애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장애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장애인복지법	14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법제, 재정 관련 조치 강구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법제, 재정 관련 조치 강구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법제, 재정 관련 조치 강구	장애인복지법	16조
장애인복지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조치 강구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조치 강구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조치 강구	장애인복지법	17조
장애인복지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장애인복지법	18조
장애인복지	재활치료 후 사회적응 훈련 실시	재활치료 후 사회적응 훈련 실시	재활치료 후 사회적응 훈련 실시	장애인복지법	19조
장애인복지	장애인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촉진 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강구	장애인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촉진 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강구	장애인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촉진 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강구	장애인복지법	20조
장애인복지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 종사에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 적합 직종과 재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 종사에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 적합 직종과 재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 종사에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 적합 직종과 재활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장애인복지법	21조
장애인복지	정보, 방송, 도서,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	정보, 방송, 도서,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	정보, 방송, 도서,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22조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설치·운영, 공공시설 이용 필요 시책 강구	편의시설 설치·운영, 공공시설 이용 필요 시책 강구	편의시설 설치·운영, 공공시설 이용 필요 시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23조
장애인복지	장애인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 조치 강구	장애인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 조치 강구	장애인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 조치 강구	장애인복지법	2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장애인복지법	25조
장애인복지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등 필요 조치 강구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등 필요 조치 강구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등 필요 조치 강구	장애인복지법	26조
장애인복지	주택 우선 분양·임대, 보급·개선에 필요 시책 강구	주택 우선 분양·임대, 보급·개선에 필요 시책 강구	주택 우선 분양·임대, 보급·개선에 필요 시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27조
장애인복지	문화, 체육, 관광활동 등을 지원 노력	문화, 체육, 관광활동 등을 지원 노력	문화, 체육, 관광활동 등을 지원 노력	장애인복지법	28조
장애인복지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필요 정책 강구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필요 정책 강구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필요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사업 필요비용 보조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사업 필요비용 보조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사업 필요비용 보조	장애인복지법	29조의2
장애인복지	세제상 조치, 이용료·운임 감면 등 필요 정책 강구	세제상 조치, 이용료·운임 감면 등 필요 정책 강구	세제상 조치, 이용료·운임 감면 등 필요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30조
장애인복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수립·시행(1~7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수립·시행(1~7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수립·시행(1~7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장애인복지법	30조의2
장애인복지	장애실태조사 실시			장애인복지법	31조
장애인복지		(특별차지시·도)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복지법	32조
장애인복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	장애인복지법	32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특별자치시·도)장애인등록증 취소, 등록증 반환 명령	장애인등록증 취소, 등록증 반환 명령	장애인복지법	32조의3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특별자치시·도)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복지법	32조의4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일부 업무 위탁 위탁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특별자치시·도)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일부 업무 위탁 위탁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일부 업무 위탁 위탁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장애인복지법	32조의5
장애인복지	등록 장애인 지원 사업 실시 (1~7호)	등록 장애인 지원 사업 실시 (1~7호)	등록 장애인 지원 사업 실시 (1~7호)	장애인복지법	32조의6
장애인복지		(특별자치시·도)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장애인복지법	32조의7
장애인복지		(특별자치시·도)장애 정도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 정도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법	32조의8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장애인복지법	33조
장애인복지	장애인에 대한 검진과 재활상담 (1~4호)	장애인에 대한 검진과 재활상담 (1~4호)	장애인에 대한 검진과 재활상담 (1~4호)	장애인복지법	34조
장애인복지	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35조
장애인복지	여성장애인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복지법	37조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법	38조
장애인복지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필요한 지원정책 강구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필요한 지원정책 강구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필요한 지원정책 강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39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방안 강구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방안 강구 장애인보조견 표지 발급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방안 강구 장애인보조견 표지 발급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장애인복지법	40조
장애인복지	사업, 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	사업, 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	사업, 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	장애인복지법	41조
장애인복지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시 장애인 우선 반영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시 장애인 우선 반영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시 장애인 우선 반영 담배소매인우선지정노력	장애인복지법	42조
장애인복지	자립훈련비 지급(현물지급 가능)	자립훈련비 지급(현물지급 가능)	자립훈련비 지급(현물지급 가능)	장애인복지법	43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장애인복지법	44조
장애인복지	장애인 고용 노력, 장애인 고용 권유	장애인 고용 노력, 장애인 고용 권유	장애인 고용 노력, 장애인 고용 권유	장애인복지법	46조
장애인복지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장애인복지법	46조의2
장애인복지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	장애인복지법	47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 유·무상 대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 유·무상 대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 유·무상 대여	장애인복지법	48조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49조
장애인복지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50조
장애인복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장애인복지법	50조의3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특별자치시·도)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	장애인복지법	50조의4
장애인복지		(특별자치시·도)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장애인복지법	51조
장애인복지	장애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장애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장애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장애인복지법	52조
장애인복지	자립생활지원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자립생활지원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자립생활지원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장애인복지법	53조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제공 센터운영비 또는 사업 일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제공 센터운영비 또는 사업 일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제공 센터운영비 또는 사업 일부 지원	장애인복지법	54조
장애인복지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활동지원사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활동지원사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활동지원사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장애인복지법	55조
장애인복지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 노력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 노력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 노력	장애인복지법	56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책 마련, 관련프로그램 실시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책 마련, 관련프로그램 실시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필요한 정책 강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책 마련, 관련프로그램 실시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장애인복지법	5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장애인복지법	59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취업제한명령자의 시설취업 여부 확인·점검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취업제한명령 위반 운영자에게 시설폐쇄 요구 취업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 시설 폐쇄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장애인복지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성범죄 신고 절차, 방법 등 안내 학대·성범죄 예방과 신고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고의무자 자격취득과 보수교육에 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	학대·성범죄 예방과 신고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대·성범죄 예방과 신고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장애인복지법	59조의4
장애인복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1~6호)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1~6호)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1~6호)	장애인복지법	59조의10
장애인복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비영리법인을 지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지원	비영리법인을 지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지원		장애인복지법	59조의11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장애인복지법	59조의1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또는 시설폐지 신고 수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재개 신고 수리	장애인복지법	60조
장애인복지			신청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여부 결정 시설이용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 신청 없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장애인복지법	60조의2
장애인복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장애인복지법	60조의3
장애인복지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 실태 지도·감독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 실태 지도·감독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 실태 지도·감독	장애인복지법	61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명령(1~6호)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미달시 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명령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명령(1~6호)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미달시 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명령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명령(1~6호)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미달시 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명령	장애인복지법	62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노력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노력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노력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장애인복지법	63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장애인복지법	65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	장애인복지법	70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업무종사자 양성·훈련 인력양성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인력양성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업무종사자 양성·훈련 인력양성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인력양성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업무종사자 양성·훈련 인력양성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인력양성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장애인복지법	71조
장애인복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재교부			장애인복지법	72조
장애인복지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장애인복지법	72조의2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장애인복지법	72조의3
장애인복지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국가시험 실시 국가시험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장애인복지법	73조
장애인복지	의지·보조기기사 등 보수교육 명령			장애인복지법	75조
장애인복지	의지·보조기기사 등 자격 취소			장애인복지법	76조
장애인복지	의지·보조기기사 등 자격 정지			장애인복지법	77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예산 범위내 부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본인부담금을 부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예산 범위내 부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본인부담금을 부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예산 범위내 부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본인부담금을 부과	장애인복지법	79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복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검진 및 재활상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검진 및 재활상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검진 및 재활상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	장애인복지법	80조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장애인복지법	81조
장애인복지	1~5호 해당 조치를 위한 청문	1~5호 해당 조치를 위한 청문	1~5호 해당 조치를 위한 청문	장애인복지법	83조의2
장애인복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 통보	장애인복지법	84조
장애인복지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복지법	90조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 필요한 재원 조달 장애인연금 지급이 계층간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 필요한 재원 조달 장애인연금 지급이 계층간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 필요한 재원 조달 장애인연금 지급이 계층간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장애인연금법	3조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결정			장애인연금법	4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매년 고시			장애인연금법	6조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	(특별자치시·도)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연금법	8조의2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조사	(특별자치시·도)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조사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조사	장애인연금법	9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애인연금		(특별자치시·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및 통지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및 통지	장애인연금법	10조
장애인연금		(특별자치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장애인연금법	10조의2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연간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특별자치시·도)관할지역 연간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관할지역 연간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장애인연금법	11조
장애인연금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			장애인연금법	12조
장애인연금		(특별자치시·도)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법	13조
장애인연금		(특별자치시·도)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입금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입금	장애인연금법	13조의2
장애인연금		(특별자치시·도)장애인연금 지급정지 (특별자치시·도)수급권 소멸, 지급정지를 통지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수급권 소멸, 지급정지를 통지	장애인연금법	15조
장애인연금		(특별자치시·도)장애인연금 환수, 체납 처분	장애인연금 환수, 체납 처분	장애인연금법	17조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장애인연금법	21조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연금법	22조
장애인연금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연금법	27조
차별금지	모든 차별 방지, 권리구제 책임,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모든 차별 방지, 권리구제 책임,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재정적 지원	모든 차별 방지, 권리구제 책임,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재정적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8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차별금지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
차별금지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금지, 차별 예방 운전면허시험의 모든과정에서 차별금지, 편의 제공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금지, 차별 예방 운전면허시험의 모든과정에서 차별금지, 편의 제공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금지, 차별 예방 운전면허시험의 모든과정에서 차별금지,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
차별금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이용 등에 필요 지원 강구 의사소통 등에 필요조치 강구, 소통양식 강요금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이용 등에 필요 지원 강구 의사소통 등에 필요조치 강구, 소통양식 강요 금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이용 등에 필요 지원 강구 의사소통 등에 필요조치 강구, 소통양식 강요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23조
차별금지	문화·예술활 동의 차별금지,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문화·예술활 동의 차별금지,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문화·예술활 동의 차별금지,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차별금지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의2
차별금지	체육활동 참여의 정당한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체육활동 참여의 정당한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체육활동 참여의 정당한 편의제공, 참여촉진 시책	장애인차별금지법	25조
차별금지	참정권 행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참정권 행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참정권 행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
차별금지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행위 예방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행위 예방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행위 예방	장애인차별금지법	28조
차별금지	성권리 보장 필요지원책, 홍보·교육	성권리 보장 필요지원책, 홍보·교육	성권리 보장 필요지원책, 홍보·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29조
차별금지	장애 발생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 시책 추진 보건의료시책 결정과 집행에서 장애인 성별 고려	장애 발생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 시책 추진 보건의료시책 결정과 집행에서 장애인 성별 고려	장애 발생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 시책 추진 보건의료시책 결정과 집행에서 장애인 성별 고려	장애인차별금지법	3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차별금지	괴롭힘 근절 인식개선, 방지 교육 실시, 적절한 시책 강구	괴롭힘 근절 인식개선, 방지 교육 실시, 적절한 시책 강구	괴롭힘 근절 인식개선, 방지 교육 실시, 적절한 시책 강구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
차별금지	장애 여성에 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	장애 여성에 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	장애 여성에 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33조
차별금지	장애여성 인식개선, 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 강구 정책참여 기회 제한이나 배제 금지	장애여성 인식개선, 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 강구 정책참여 기회 제한이나 배제 금지	장애여성 인식개선, 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 강구 정책참여 기회 제한이나 배제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
차별금지	장애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알맞은 서비스 조기제공, 친권자·양육자 지원 마련	장애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알맞은 서비스 조기제공, 친권자·양육자 지원 마련	장애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알맞은 서비스 조기제공, 친권자·양육자 지원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36조
차별금지	정신적 장애자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강구	정신적 장애자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강구	정신적 장애자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강구	장애인차별금지법	37조
차별금지	(인권위)장애인 차별행위 직권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39조
차별금지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구성·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40조
차별금지	(인권위)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장애인차별금지법	42조
차별금지	(법무부)권고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			장애인차별금지법	43조
차별금지	(법무부)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장애인차별금지법	45조
차별금지	(법무부)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차별금지법	50조
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제공, 필요한 재원을 조달	활동지원급여 제공, 필요한 재원을 조달	활동지원급여 제공, 필요한 재원을 조달	장애인활동법	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장애인활동법	7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장애인활동법	8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조사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조사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장애인활동법	9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심의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	심의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	장애인활동법	10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 표준급여이용계획서 통보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 표준급여이용계획서 통보	장애인활동법	11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급여 대리신청자 지정	활동지원급여 대리신청자 지정	장애인활동법	15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	장애인활동법	17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장애인활동법	19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법	19조의2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기관 지정, 수탁기관에 통보	활동지원기관 지정, 수탁기관에 통보	장애인활동법	20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기관 정보 수급자에게 안내	활동지원기관 정보 수급자에게 안내	장애인활동법	21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위촉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위촉	장애인활동법	22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기관 폐업, 휴업 신고에 따른 필요 조치 마련, 활동지원급여 자료 이관	활동지원기관 폐업, 휴업 신고에 따른 필요 조치 마련, 활동지원급여 자료 이관	장애인활동법	23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장애인활동법	24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과징금 부과·징수	과징금 부과·징수	장애인활동법	24조의2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기관 관리, 평가	활동지원기관 관리, 평가	장애인활동법	25조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장애인활동법	28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활동지원인력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활동지원인력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장애인활동법	30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급여비용 지급, 가산 또는 감액 조정 지급	급여비용 지급, 가산 또는 감액 조정 지급	장애인활동법	31조
활동지원	급여비용 산정 고시, 가산 또는 감액 조정 산정			장애인활동법	32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부당지급급여 징수, 결손처분	부당지급급여 징수, 결손처분	장애인활동법	35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이의신청 검토, 시정, 필요 조치	이의신청 검토, 시정, 필요 조치	장애인활동법	36조
활동지원	활동지원사업 필요 비용 부담	활동지원사업 필요 비용 부담	활동지원사업 필요 비용 부담	장애인활동법	39조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활동법	40조
활동지원		(특별자치시·도)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은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은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	장애인활동법	4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활동지원	활동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활동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활동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장애인활동법	42조
활동지원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질문, 서류검사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질문, 서류검사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질문, 서류검사	장애인활동법	43조
활동지원		청문(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교육기관 지정 취소, 활동지원인력 자격 취소)	청문(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교육기관 지정 취소, 활동지원인력 자격 취소)	장애인활동법	45조
활동지원	과태료 부과·징수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활동법	49조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및 시책 추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및 시책 추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및 시책 추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3조
생산품우선구매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추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4조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법	5조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5조의2
생산품우선구매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에 대한 시정 요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 생산시설의 설치·운영비용 지원	생산시설의 설치·운영비용 지원	생산시설의 설치·운영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법	6조
생산품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7조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법	7조의2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 공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7조의3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인증기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8조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9조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 영업정지, 시설 개선 명령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0조
생산품우선구매	과징금 부과·징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0조의2
생산품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 지정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자금 지원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자금 지원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자금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1조
생산품우선구매	수행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명령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3조
생산품우선구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4조
생산품우선구매	포상(1~3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5조
생산품우선구매	생산시설, 수행기관에 대해 세제상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6조
생산품우선구매	국·공유재산을 수행기관에 무상대부	국·공유재산을 수행기관에 무상대부	국·공유재산을 수행기관에 무상대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7조
생산품우선구매	생산시설, 수행기관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중증장애인생산품법	18조
생산품우선구매	생산시설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수행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21조
생산품우선구매	과태료 부과·징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23조

〈부표 1-4〉 복지사무 : 보육·아동·청소년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아동후견			국가/지자체 외의 설치·운영자 보호시설에 고아인 미성년의 후견인 지정	시설미성년후견법	3조
아동후견			후견인 지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시설미성년후견법	4조
아동후견			후견인 지정 취소, 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	시설미성년후견법	7조
실종아동	(복)실종아동 예방·발견·복귀·사회적응 시책 시행(1~7호) 경찰청장:실종아동발견·복귀를 위한시책시행(1~4호)			실종아동법	3조
실종아동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운영, 업무 위탁 운영			실종아동법	5조
실종아동		보호조치 아동등의 신상 기록 신고접수서 작성과 경찰신고체계로 제출 출생후6개월경과된아동의 출생신고접수시신상카드작성하여경찰청장에게송부	보호조치 아동등의 신상 기록 신고접수서 작성과 경찰신고체계로 제출 출생후6개월경과된아동의출생신고접수시신상카드작성하여경찰청장에게 송부	실종아동법	6조
실종아동	경찰청장: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관리			실종아동법	7조2
실종아동	복지부장관: 실종아동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실종아동법	8조
실종아동	경찰청장: 실종아동 신고·발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종아동법	8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실종아동		경찰관서장: 실종아동 신고시 수색/수사 실시		실종아동법	9조
실종아동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공개수색·수사체계 구축 운영			실종아동법	9조의2
실종아동	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 마련, 고시			실종아동법	9조의3
실종아동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실종아동법	10조
실종아동	경찰청장: 유전자검사의 실시			실종아동법	11조
실종아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			실종아동법	16조
실종아동		과태료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종아동법	19조
아동복지	아동, 보호자 및 가정 지원정책 수립·시행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권익증진정책수립·시행 아동이가정에서성장,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성장,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 장애아동의권익보호시책강구 아동이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않도록시책강구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필요시책수립·시행,교육·홍보 아동에필요한교육을지원	아동, 보호자 및 가정 지원정책 수립·시행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 권익증진정책수립·시행 아동이가정에서성장,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성장,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 장애아동의권익보호시책강구 아동이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않도록시책강구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필요시책수립·시행,교육·홍보 아동에필요한교육을지원	아동, 보호자 및 가정 지원정책 수립.시행 보호대상아동·지원대상아동권익증진정책수립·시행 아동이가정에서성장,가정과유사한환경에서성장,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 장애아동의권익보호시책강구 아동이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않도록시책강구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필요시책수립·시행,교육·홍보 아동에필요한교육을지원	아동복지법	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아동복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복지법	7조
아동복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평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		아동복지법	8조
아동복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아동복지법	9조
아동복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복지법	10조
아동복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운영			아동복지법	10조2
아동복지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등			아동복지법	11조
아동복지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복지법	11조의2
아동복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복지법	12조
아동복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1호~6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1호~6호)	아동복지법	15조
아동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	아동복지법	15조의2
아동복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아동복지법	15조의3
아동복지		보호조치 종료, 시설 퇴소, 가정복귀 등	보호조치 종료, 시설 퇴소, 가정복귀 등	아동복지법	16조
아동복지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16조의2
아동복지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	아동복지법	18조
아동복지		아동 후견인의 선임 청구	아동 후견인의 선임 청구	아동복지법	19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1~5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1~5호) 긴급전화설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1~5호) 긴급전화설치	아동복지법	22조
아동복지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학대 피해 학생등의 안정적 적응 지원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학대 피해 학생 등의 안정적 적응 지원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학대 피해 학생등의 안정적 적응 지원	아동복지법	22조의2
아동복지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 실시 노력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 실시 노력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 실시 노력	아동복지법	23조
아동복지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아동복지법	24조
아동복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자격취득·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실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실시		아동복지법	26조
아동복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교육 연1회 이상 실시 교육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개발보급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아동복지법	26조의2
아동복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아동복지법	28조의2
아동복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	아동복지법	29조
아동복지	취업제한명령 선고받은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29조의4
아동복지	취업제한명령 선고받은 취업자의 해임요구			아동복지법	29조의5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아동복지	피해아동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아동복지법	29조의6
아동복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법	29조의7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아동복지법	30조
아동복지	아동보호구역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보호구역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보호구역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복지법	32조
아동복지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활용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활용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활용	아동복지법	33조
아동복지	(경찰청장)아동긴급호보호소 지정·운영			아동복지법	34조
아동복지	아동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지원(1~4호)	아동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지원(1~4호)	아동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지원(1~4호)	아동복지법	35조
아동복지			(보건소)아동 건강증진 업무(1~3호)	아동복지법	36조
아동복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37조
아동복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1~5호)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1~5호)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1~5호)	아동복지법	38조
아동복지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아동복지법	40조
아동복지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설치			아동복지법	41조
아동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복지법	42조
아동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2항 1~5호, 3항 1~2호)			아동복지법	4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아동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금융자산관리업무의 위탁			아동복지법	44조
아동복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위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위탁	아동복지법	44조의2
아동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복지법	45조
아동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아동복지법	47조
아동복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아동복지법	48조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	50조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폐업, 휴업 신고 수리	아동복지법	51조
아동복지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노력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노력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노력	아동복지법	53조
아동복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아동복지법	53조의2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위탁실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위탁실시	아동복지법	55조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령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령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를 명령	아동복지법	56조
아동복지	아동복지단체 지도·육성	아동복지단체 지도·육성	아동복지단체 지도·육성	아동복지법	58조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등 비용 전부/일부 보조(1~8호)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등 비용 전부/일부 보조(1~8호)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등 비용 전부/일부 보조(1~8호)	아동복지법	59조
아동복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아동복지법	60조
아동복지	보조금 반환 명령	보조금 반환 명령	보조금 반환 명령	아동복지법	61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허용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허용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허용	아동복지법	62조
아동복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국회 제출			아동복지법	65조의2
아동복지	금지행위 위반 우려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사	금지행위 위반 우려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사	금지행위 위반 우려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사	아동복지법	66조
아동복지	지정 취소, 위탁 취소, 시설 폐쇄명령 경우 청문	지정 취소, 위탁 취소, 시설 폐쇄명령 경우 청문	지정 취소, 위탁 취소, 시설 폐쇄명령 경우 청문	아동복지법	67조
아동복지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아동복지법	75조
아동수당	아동수당이 양육부담 경감,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필요한비용부담할수있도록재원조성	아동수당이 양육부담 경감,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필요한비용부담할수있도록재원조성	아동수당이 양육부담 경감,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필요한비용부담할수있도록재원조성	아동수당법	3조
아동수당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아동수당법	5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지급 신청 접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접수	아동수당법	6조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조사, 질문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조사, 질문	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조사, 질문	아동수당법	7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지급 결정, 취소, 통지	아동수당 지급 결정, 취소, 통지	아동수당법	9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1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	아동수당법	11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아동수당법	12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지급 정지	아동수당 지급 정지	아동수당법	13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환수	아동수당 환수	아동수당법	16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환수금 고지, 독촉, 징수	아동수당 환수금 고지, 독촉, 징수	아동수당법	17조
아동수당		(특별자치시·도)이의신청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	이의신청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	아동수당법	19조
아동수당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아동수당법	21조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	(특별자치시·도)아동수당 신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	아동수당 신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	아동수당법	23조
아동수당	과태료 부과·징수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아동수당법	26조
빈곤아동	빈곤아동정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업무수행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빈곤아동과그보호자및가정지원정책수립·시행 빈곤아동이차별받지않도록필요한 시책마련	빈곤아동정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업무수행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빈곤아동과그보호자및가정지원정책수립·시행 빈곤아동이차별받지않도록필요한시책마련	빈곤아동정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업무수행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빈곤아동과그보호자및가정지원정책수립·시행 빈곤아동이차별받지않도록필요한시책마련	아동빈곤예방법	4조
빈곤아동	빈곤아동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아동빈곤예방법	5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빈곤아동	빈곤아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아동빈곤예방법	5조
빈곤아동	빈곤아동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빈곤아동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아동빈곤예방법	6조
빈곤아동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아동빈곤예방법	8조
빈곤아동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아동빈곤예방법	10조
입양	아동은 태어난 가정 또는 다른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입양아동의권익과복지증진(1~7호)	아동은 태어난 가정 또는 다른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입양아동의권익과복지증진(1~7호)	아동은 태어난 가정 또는 다른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입양아동의권익과복지증진(1~7호)	입양특례법	3조
입양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입양특례법	5조
입양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입양특례법	6조
입양	입양의뢰 아동의 국내입양 시책을 최우선으로 시행	입양의뢰 아동의 국내입양 시책을 최우선으로 시행	입양의뢰 아동의 국내입양 시책을 최우선으로 시행	입양특례법	7조
입양	국외입양 축소를 위한 노력			입양특례법	8조
입양	입양기관 허가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허가		입양특례법	20조
입양	입양 알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입양 알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입양 알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입양특례법	32조
입양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입양특례법	33조
입양	입양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특례법	3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입양	입양된 장애아동 등의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 입양기관운영비,가정위탁보호비용을보조	입양된 장애아동 등의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 입양기관운영비,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	입양된 장애아동 등의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 입양기관운영비,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	입양특례법	35조
입양	입양기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서류제출 명령, 검사, 질문	입양기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서류제출 명령, 검사, 질문	입양기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서류제출 명령, 검사, 질문	입양특례법	38조
입양	입양기관 업무정지 명량, 허가 취소	입양기관 업무정지 명량, 허가 취소		입양특례법	39조
입양	입양기관 허가 취소의 청문	입양기관 허가 취소의 청문		입양특례법	40조
출생	인구정책을 수립·시행	인구정책을 수립·시행	인구정책을 수립·시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7조
출생	인구교육 활성화와 필요한 시책을 강구	인구교육 활성화와 필요한 시책을 강구	인구교육 활성화와 필요한 시책을 강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7조의2
출생	자녀교육,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강구	자녀교육,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강구	자녀교육,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강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8조
출생	모자보건 증진과 태아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필요한 기관 설치	모자보건 증진과 태아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필요한 기관 설치	모자보건 증진과 태아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필요한 기관 설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9조
출생	임신·출산·양육·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시책 소요되는비용의통계조사실시	임신·출산·양육·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시책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실시	임신·출산·양육·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시책 소요되는비용의통계조사실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10조
영유아 돌봄	영유아 보육 책임, 필요한 재원 안정적 확보	영유아 보육 책임, 필요한 재원 안정적 확보	영유아 보육 책임, 필요한 재원 안정적 확보	영유아보육법	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보육교직원양성및근로여건개선	(특별자치도)보육을위한적절한 어린이집확보 보육교직원양성및근로여건개선	보육을위한적절한어린이집확보 보육교직원양성및근로여건개선		
영유아 돌봄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영유아보육법	5조
영유아 돌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영유아보육법	6조
영유아 돌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영유아보육법	7조
영유아 돌봄	보육실태조사			영유아보육법	9조
영유아 돌봄	영유아 보호자 교육 실시, 교육 필요 비용 보조	영유아 보호자 교육 실시, 교육 필요 비용 보조	영유아 보호자 교육 실시, 교육 필요 비용 보조	영유아보육법	9조의2
영유아 돌봄	보육계획 수립·시행	보육계획 수립·시행	보육계획 수립·시행	영유아보육법	11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노력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노력	영유아보육법	11조의2
영유아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12조
영유아 돌봄		(특별자치도)국공립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 설치 인가, 중요사항 변경 인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 설치 인가, 중요사항 변경 인가	영유아보육법	13조
영유아 돌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영유아보육법	14조의2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 관리, 열람 실태 조사·점검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 관리, 열람 실태 조사·점검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 관리, 열람 실태 조사·점검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영유아 돌봄		(특별자치도)보육교직원 임면과 경력 사항 관리	보육교직원 임면과 경력 사항 관리	영유아보육법	19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자격증 교부			영유아보육법	2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23조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23조의2
영유아 돌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명령			영유아보육법	23조의3
영유아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영유아보육법	24조
영유아 돌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영유아보육법	25조의2
영유아 돌봄	취약보육 활성화 필요 시책 수립·시행	취약보육 활성화 필요 시책 수립·시행	취약보육 활성화 필요 시책 수립·시행	영유아보육법	26조
영유아 돌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보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특별자치시·도)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지정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보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지정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보조	영유아보육법	26조의2
영유아 돌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검토수정·보완			영유아보육법	29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평가등급 등 결과공표, 평가등급 조정			영유아보육법	30조
영유아 돌봄	영유아 무상 보육,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2명 이상 자녀 가정 추가 지원 표준보육비용조사및결정,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비용결정	영유아 무상 보육,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3명 이상 자녀 가정 추가 지원	영유아 무상 보육, 장애아 다문화가족 자녀 무상보육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4명 이상 자녀 가정 추가 지원	영유아보육법	3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34조의2
영유아 돌봄	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	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	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	영유아보육법	34조의3
영유아 돌봄	보육 비용 지원 신청에 따른 조사·질문	보육 비용 지원 신청에 따른 조사·질문	보육 비용 지원 신청에 따른 조사·질문	영유아보육법	34조의5
영유아 돌봄	보육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보육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보육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영유아보육법	34조의7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육 비용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육 비용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육 비용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영유아보육법	36조
영유아 돌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의 기준 설정		영유아보육법	38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영유아보육법	39조의2
영유아 돌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영유아보육법	40조
영유아 돌봄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영유아보육법	40조의2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	영유아보육법	41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보고, 조사, 검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보고, 조사, 검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보고, 조사, 검사	영유아보육법	42조
영유아 돌봄	위법행위 신고,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위법행위 신고,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위법행위 신고,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영유아보육법	42조의2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	영유아보육법	43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영유아보육법	44조
영유아 돌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 명령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 명령	영유아보육법	44조의2
영유아 돌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영유아보육법	44조의3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영유아보육법	45조
영유아 돌봄		(특별자치시·도)아동학대행위 의심에 대한 보고·조사·검사, 행정처분여부 결정 (특별자치도)권익보호 필요 조치	아동학대행위 의심에 대한 보고·조사·검사, 행정처분여부 결정 권익보호 필요 조치	영유아보육법	45조
영유아 돌봄	과징금 부과·징수	과징금 부과·징수	과징금 부과·징수	영유아보육법	45조의2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46조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47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48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운영정치, 폐쇄,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대한 청문	어린이집 운영정치, 폐쇄,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대한 청문	어린이집 운영정치, 폐쇄,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대한 청문	영유아보육법	49조
영유아 돌봄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양식 마련·보급, 공시정보 수집 및 관리, 공시정보 연계·가공 어린이집정보공시에대한시정권고, 정보공시위반여부확인을위한자료제출요구	어린이집정보공시에대한시정권고, 정보공시위반여부확인을위한 자료제출요구	어린이집정보공시에대한시정권고, 정보공시위반여부확인을위한 자료제출요구	영유아보육법	49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영유아 돌봄	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영유아보육법	49조의3
영유아 돌봄	업무의 위탁(1~5호)	업무의 위탁(1~5호)	업무의 위탁(1~5호)	영유아보육법	51조의2
영유아 돌봄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영유아보육법	56조
영유아 돌봄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	아이돌봄지원법	3조
영유아 돌봄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아이돌봄지원법	4조
영유아 돌봄		교육기관 지정·운영, 사업정지 명령, 지정 취소		아이돌봄지원법	9조
영유아 돌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아이돌봄지원법	10조
영유아 돌봄		서비스기관 지정, 중요사항 변경 승인	서비스기관 지정, 중요사항 변경 승인	아이돌봄지원법	11조
영유아 돌봄		제출된 서비스기관 정보를 아이 보호자에게 제공	제출된 서비스기관 정보를 아이 보호자에게 제공	아이돌봄지원법	12조
영유아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1-7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1-7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1-7호 대상)	아이돌봄지원법	13조의2
영유아 돌봄		폐업·휴업하려는 서비스기관에 업무 지속 권고, 필요한 조치 강구	폐업·휴업하려는 서비스기관에 업무 지속 권고, 필요한 조치 강구	아이돌봄지원법	16조
영유아 돌봄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1-5호 사유)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1-5호 사유)	아이돌봄지원법	17조
영유아 돌봄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해당 업무 일부 위탁·운영			아이돌봄지원법	18조
영유아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아이돌봄지원법	19조
영유아 돌봄	일정소득 이하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차등)지원	일정소득 이하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차등)지원	일정소득 이하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차등)지원	아이돌봄지원법	2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영유아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아이돌봄지원법	21조
영유아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할때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할때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할때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아이돌봄지원법	23조
영유아 돌봄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자료제출 요구, 조사·질문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자료제출 요구, 조사·질문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자료제출 요구, 조사·질문	아이돌봄지원법	24조
영유아 돌봄	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처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아이돌봄지원법	25조
영유아 돌봄	업무수행, 서비스기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업무수행, 서비스기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업무수행, 서비스기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아이돌봄지원법	26조
영유아 돌봄	교부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교부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교부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아이돌봄지원법	27조
영유아 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	아이돌봄지원법	28조
영유아 돌봄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질문, 서류 검사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질문, 서류 검사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질문, 서류 검사	아이돌봄지원법	29조
영유아 돌봄	교육기관,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하는 경우 청문	교육기관,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하는 경우 청문	교육기관, 서비스기관 지정 취소하는 경우 청문	아이돌봄지원법	31조
영유아 돌봄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1-4호)			아이돌봄지원법	32조
영유아 돌봄	아이돌보미 자격 취소(1-4호)			아이돌봄지원법	33조
영유아 돌봄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아이돌봄지원법	37조
청소년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 필요한 조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재원 조달 국제협력강화노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 필요한 조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재원 조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 필요한 조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재원 조달	청소년성보호법	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보호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청소년성보호법	6조
청소년보호	신고의무자에게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교육 실시			청소년성보호법	35조
청소년보호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 제공 요청(1-3호 대상)			청소년성보호법	37조
청소년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업무 위탁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업무 위탁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업무 위탁	청소년성보호법	47조
청소년보호	보호시설,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	보호시설,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	보호시설,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	청소년성보호법	48조
청소년보호	고지명령의 집행			청소년성보호법	51조
청소년보호	고지정보 정정 요청 접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요청, 요청의 처리 결과 통보			청소년성보호법	51조의2
청소년보호	공개명령의 집행			청소년성보호법	52조
청소년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등 정보를 공표			청소년성보호법	53조
청소년보호	성범죄 경력자 취업 등에 대한 점검·확인			청소년성보호법	57조
청소년보호	성범죄 경력 취업자에 대한 해임 요구,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청소년성보호법	58조
청소년보호	포상금 지급			청소년성보호법	59조
청소년보호	과태료 부과·징수			청소년성보호법	67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나 의견 수렴, 위원회에 포함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나 의견 수렴, 위원회에 포함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나 의견 수렴, 위원회에 포함	청소년기본법	5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 청소년으로구성되는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제안의반영에적극노력	청소년참여또는의견수렴을 보장하는조치 청소년으로구성되는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제안의반영에적극 노력	청소년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 청소년으로구성되는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제안의반영에적극노력		
청소년지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근로청소년보호,성장과발전에도움되는시책마련 필요한재원의안정적확보를 위한시책수립·실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근로청소년보호,성장과발전에도움되는시책마련 필요한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시책수립·실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근로청소년보호,성장과발전에도움되는시책마련 필요한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시책수립·실시	청소년기본법	8조
청소년지원	청소년 권리와 관련 내용을 널리홍보하고 교육 근로청소년의권리등에필요한 교육및상담실시 청소년근로권의보호정책을적극홍보	청소년 권리와 관련 내용을 널리홍보하고 교육 근로청소년의권리등에필요한 교육및상담실시 청소년근로권인보호정책을적극홍보	청소년 권리와 관련 내용을 널리홍보하고 교육 근로청소년의권리등에필요한 교육및상담실시 청소년근로권인보호정책을적극홍보	청소년기본법	8조의2
청소년지원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기본법	9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기본법	10조
청소년지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조직·운영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조직·운영	청소년기본법	11조
청소년지원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기본법	12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기본법	1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차년도시행계획과전년도추진실적제출 전년도추진실적분석·평가결과를 통보 분석평가결과를차년도시행계획에반영 청소년정책분석·평가에관한전문지원기관지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차년도시행계획과전년도추진실적제출 분석평가결과를차년도시행계획에반영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차년도시행계획과전년도추진실적제출 분석평가결과를차년도시행계획에반영	청소년기본법	14조
청소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청소년기본법	15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위탁·운영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위탁·운영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위탁·운영	청소년기본법	18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시설에 필요한 지도·감독	청소년시설에 필요한 지도·감독	청소년시설에 필요한 지도·감독	청소년기본법	19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	청소년기본법	20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사 자격 부여, 연수기관 지정			청소년기본법	21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소			청소년기본법	21조의2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제재			청소년기본법	21조의3
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사 자격 부여			청소년기본법	22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활동비 보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보수 공무원수준도달노력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활동비 보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보수 공무원수준도달노력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활동비 보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보수 공무원 수준도달노력	청소년기본법	2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학교에 채용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학교에 채용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학교에 채용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청소년기본법	24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위탁			청소년기본법	24조의2
청소년지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배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배치	청소년기본법	25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기본법	26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청소년기본법	27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단체 필요한 행정적 지원, 경비 일부 보조	청소년단체 필요한 행정적 지원, 경비 일부 보조	청소년단체 필요한 행정적 지원, 경비 일부 보조	청소년기본법	29조
청소년지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인가			청소년기본법	40조
청소년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인가		청소년기본법	41조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기본법	47조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 시책 수립·시행 시책수립시관계기관과협의,전문가의견청취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기본법	48조
청소년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	청소년기본법	48조의2
청소년지원	정보화 능력 제고 환경을 조성노력 유익한매체물제작·보급장려,경비등을지원 청소년시설배치등환경조성노력	정보화 능력 제고 환경을 조성노력 유익한매체물제작·보급장려,경비등을지원 청소년시설배치등환경조성조성노력	정보화 능력 제고 환경을 조성노력 유익한매체물제작·보급장려, 경비등을지원 청소년시설배치등환경조성노력	청소년기본법	5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유해업소출입과고용되지않도록해야함 유해한행위로부터청소년보호·구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유해업소출입과고용되지않도록해야함 유해한행위로부터청소년보호·구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유해업소출입과고용되지않도록해야함 유해한행위로부터청소년보호·구제	청소년기본법	52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			청소년기본법	53조
청소년지원	기금조성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 시설/물품/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대부	기금조성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 시설/물품/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대부	기금조성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 시설/물품/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대부	청소년기본법	55조
청소년지원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청소년기본법	56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시설 설치,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청소년시설 설치,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청소년시설 설치,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청소년기본법	57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시설, 기금 출연에 조세감면 등 특례 적용			청소년기본법	58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시설 등의 업무·회계 등 보고 명령, 장부·서류검사	청소년시설 등의 업무·회계 등 보고 명령, 장부·서류검사	청소년시설 등의 업무·회계 등 보고 명령, 장부·서류검사	청소년기본법	59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육성 현저한 공로자, 모범이 되는 자 포상			청소년기본법	60조
청소년지원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청소년기본법	66조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매체물과약물로부터보호하기위해필요한노력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에필요한지원, 민간건의사항을관련시책	해당 지역 유해환경에서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노력 매체물과약물로부터보호하기위해필요한노력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에필요한지원,민간건의사항을관련시책에	해당 지역 유해환경에서 청소년보호하기위해 노력 매체물과약물로부터보호하기 위해필요한노력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에필요한지원,민간건의사항을관련시책	청소년보호법	5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에반영 청소년유해환경규제의무를충실히수행	반영 청소년유해환경규제의무를충실히수행	에반영 청소년유해환경규제의무를충실히수행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자료제공			청소년보호법	11조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고시 및 통보(지)			청소년보호법	21조
청소년보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 공표			청소년보호법	23조
청소년보호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 개선 조치			청소년보호법	26조
청소년보호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법	27조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작성, 통보(지)			청소년보호법	28조
청소년보호		(특별자치시·도)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청소년보호법	31조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종합대책의추진상황점검, 관계기관점검회의운영 점검회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 자료요청 청소년의유해환경에대한접촉 실태조사실시 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종합적 점검 및단속실시			청소년보호법	3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보호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1-5호사업) 사업을위탁한법인/단체에필요경비전부/일부지원			청소년보호법	34조
청소년보호	청소년전문치료기관 지정·운영, 비용 전부/일부 지원 환각물질흡입청소년의중독여부판별검사지원 환각물질중독청소년에치료와 재활을받도록지원 판별검사,치료서비스결정에전문의등에게자문			청소년보호법	34조의2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경비 지원			청소년보호법	35조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청소년보호법	36조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보호법	41조의2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등 유통업자와 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	(특별자치시·도)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등 유통업자와 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등 유통업자와 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	청소년보호법	42조
청소년보호	장부, 서류 등의 검사 및 조사, 참고인 진술 청취, 감정의뢰	(특별자치시·도)장부, 서류 등의 검사 및 조사, 참고인 진술 청취, 감정의뢰	장부, 서류 등의 검사 및 조사, 참고인 진술 청취, 감정의뢰	청소년보호법	43조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수거 명령, 파기	(특별자치시·도)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수거 명령, 파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수거 명령, 파기	청소년보호법	4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보호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1-7의2)	(특별자치시·도)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1-7의2)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1-7의2)	청소년보호법	45조
청소년보호	수거·파기, 시정명령의 이유 명시	(특별자치시·도)수거·파기, 시정명령의 이유 명시	수거·파기, 시정명령의 이유 명시	청소년보호법	46조
청소년보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청취와 협조 의뢰			청소년보호법	47조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소년보호법	48조
청소년보호		(특별자치시·도)정소년유해매체등 신고 수리, 포상	정소년유해매체등 신고 수리, 포상	청소년보호법	49조
청소년보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특별자치시·도)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청소년보호법	50조
청소년보호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 필요한 조치		청소년보호법	51조
청소년보호	과징금 부과·징수	(특별자치시·도)과징금 부과·징수	과징금 부과·징수	청소년보호법	54조
청소년보호	과태료 부과·징수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청소년보호법	64조
청소년지원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협조 요청			청소년복지법	2조의2
청소년지원	수송·문화시설 청소년 이용료 면제, 할인, 할인 권고	수송·문화시설 청소년 이용료 면제, 할인, 할인 권고	수송·문화시설 청소년 이용료 면제, 할인, 할인 권고	청소년복지법	3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복지법	4조
청소년지원	청소년 질병예방, 건강교육 등 필요한 시책 수립 성별기준을 반영한 건강·체력 기준 설정·보급	청소년 질병예방, 건강교육 등 필요한 시책 수립 성별기준을 반영한 건강·체력 기준 설정·보급	청소년 질병예방, 건강교육 등 필요한 시책 수립 성별기준을 반영한 건강·체력 기준 설정·보급	청소년복지법	5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필수 적물품 지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필수 적물품 지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필수 적물품 지원		
청소년지원	청소년의 체력검사·건강진단 실시	청소년의 체력검사·건강진단 실시	청소년의 체력검사·건강진단 실시	청소년복지법	6조
청소년지원	건강진단 결과 분석으로 건강증진 필요 시책 수립·시행	건강진단 결과 분석으로 건강증진 필요 시책 수립·시행	건강진단 결과 분석으로 건강증진 필요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복지법	7조
청소년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청소년복지법	9조
청소년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설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설치	청소년복지법	10조
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활동 단체 지원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활동 단체 지원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활동 단체 지원	청소년복지법	11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 상담을위한전화설치·운영,정보통신망운영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 상담을위한전화설치·운영,정보통신망운영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 상담을위한전화설치·운영,정보통신망운영	청소년복지법	12조
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실시 일정소득이하가족·보호자상담·교육의실비지급	위기청소년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실시 일정소득이하가족·보호자상담·교육의실비지급	위기청소년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실시 일정소득이하가족·보호자상담·교육의실비지급	청소년복지법	13조
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특별지원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특별지원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복지법	14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특별지원 선정 여부, 지원내용, 기간 결정	특별지원 선정여부, 지원내용, 기간 결정	청소년복지법	15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퇴소자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퇴소자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퇴소자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	청소년복지법	1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이주배경청소년에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이주배경청소년에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이주배경청소년에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청소년복지법	18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실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실시	청소년복지법	19조
청소년지원	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 확보 노력	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 확보 노력	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 확보 노력	청소년복지법	20조
청소년지원	보호지원후견인 지정	보호지원후견인 지정	보호지원후견인 지정	청소년복지법	21조
청소년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정관 변경 인가			청소년복지법	23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원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승인			청소년복지법	24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원 경비 출연 또는 보조			청소년복지법	25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원 이사장 임면			청소년복지법	27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청소년복지법	29조
청소년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소년복지법	30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특별차치시·도)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수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청소년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수리	청소년복지법	32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 수리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 수리	청소년복지법	33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청소년복지법	3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청소년복지시설 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명령	청소년복지시설 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명령	청소년복지법	35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 실시	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 실시	청소년복지법	36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감독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감독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감독	청소년복지법	39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단체 보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단체 보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보조	청소년복지법	40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등 평가 평가결과를감독과지원에반영하는등의조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등 평가		청소년복지법	41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청소년복지법	45조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요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요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요청	청소년활동법	3조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소년활동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소년활동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소년활동법	5조
청소년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운영 경비 보조			청소년활동법	6조의6
청소년지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필요경비전부/일부지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필요경비전부/일부지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필요경비전부/일부지원	청소년활동법	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필요시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 보완사항통보	〈이하 모두 특별자치시·도〉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신고수리여부통지 범죄경력자등의숙박형등수련활동신고수리금지 범죄경력등의확인을위한자료제공요청 신고수리한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 숙박형등청소년활동주최자에게보완사항통보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신고수리여부통지 범죄경력자등의숙박형등수련활동신고수리금지 범죄경력등의확인을위한자료제공요청 신고수리한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 숙박형등청소년활동주최자에게보완사항통보	청소년활동법	9조의2
청소년지원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별자치시·도)신고 수리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공개	신고 수리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공개	청소년활동법	9조의4
청소년지원		(특별차치시·도)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한 후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 요청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한 후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 요청	청소년활동법	9조의7
청소년지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수련시설설치·운영경비전부/일부 보조 수련시설설치운영자에게필요 일부보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설치·운영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수련시설설치·운영자에게필요일부보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설치·운영 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수련시설설치·운영자에게필요일부보조	청소년활동법	11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 조건부 허가(기간 내 보완)	수련시설 조건부 허가(기간내 보완)	청소년활동법	1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 운영 등록, 변경 등록	수련시설 운영 등록, 변경 등록	청소년활동법	13조
청소년지원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연수 실시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연수 실시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연수 실시	청소년활동법	14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필요한 경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필요한 경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필요한 경비 지원	청소년활동법	16조
청소년지원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 해지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 해지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 해지	청소년활동법	16조의2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의 보완·개수·보수 요구,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수련시설의 보완·개수·보수 요구,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청소년활동법	18조
청소년지원	종합안전·위생점검 실시, 결과 공개 종합안전·위생점검절차·방법·기간통보 종합안전·위생점검필요자료제출요구 점검결과시설보완개수보수개선요구	(특별자치시·도)종합안전·위생점검 실시, 결과 공개 (특별자치시·도)종합안전·위생점검절차·방법·기간통보 (특별자치시·도)종합안정·위생점검필요자료제출요구 점검결과시설보완개수보수개선요구	종합안전·위생점검 실시, 결과 공개 종합안전·위생점검절차방법기간통보 종합안전·위생점검필요자료제출요구 점검결과시설보완개수보수개선요구	청소년활동법	18조의3
청소년지원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와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청소년활동법	18조의4
청소년지원	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결과 공개 수련시설종합평가절차·방법·기간통보 수련시설종합평가필요자료제출요구 종합평가결과미흡사항개선필요	종합평가결과우수수련시설 포상 실시	종합평가결과우수수련시설 포상 실시	청소년활동법	19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한조치요구 종합평가결과관계기간에통보 종합평가결과우수수련시설 포상 실시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수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청소년활동법	20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 명령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 명령	청소년활동법	20조의2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수련시설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청소년활동법	22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청문	수련시설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청문	청소년활동법	23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제한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휴지·폐지신고수리여부통보	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제한 수련시설휴지·폐지신고수리여부 통보	청소년활동법	27조
청소년지원	수련시설 건립 타당성의 사전 검토	수련시설 건립 타당성의 사전 검토	수련시설 건립 타당성의 사전 검토	청소년활동법	28조
청소년지원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금융·세제 또는 기타 지원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금융·세제 또는 기타 지원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금융·세제 또는 기타 지원	청소년활동법	30조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타 지원, 경비 일부 보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타 지원, 경비 일부 보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타 지원, 경비 일부 보조	청소년활동법	32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시설 허가, 등록시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 여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수련시설 허가, 등록시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 여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청소년활동법	3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수련시설등 운영자에게 이용률 현황등 자료제출 요청	(특별자치시·도)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1-4호 사항)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1-4호 사항)	청소년활동법	33조의2
청소년지원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청소년활동법	34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설치·운영 인증수련활동공개,청소년의활동기록유지·관리			청소년활동법	35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수련활동 필요 프로그램 인증 신청	청소년수련활동 필요 프로그램 인증 신청	청소년수련활동 필요 프로그램 인증 신청	청소년활동법	36조
청소년지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승인, 운영경비 지원			청소년활동법	40조
청소년지원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 운영경비 지원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경비 지원	청소년활동법	41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청소년수련지구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정 고시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정 고시	청소년활동법	47조
청소년지원		(특별자치시·도)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시행, 승인, 고시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시행, 승인, 고시	청소년활동법	48조
청소년지원	수련시설 설치, 수련지구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외 권리의 수용하거나 사용	수련시설 설치, 수련지구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외 권리의 수용하거나 사용	수련시설 설치, 수련지구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외 권리의 수용하거나 사용	청소년활동법	50조
청소년지원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 수립·시행 청소년교류활동프로그램개발,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 수립·시행 청소년교류활동프로그램개발,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 수립·시행 청소년교류활동프로그램개발,	청소년활동법	5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운영 프로그램개발·운영경비의전부또는일부지원	운영 프로그램개발·운영경비의전부또는일부지원	운영 프로그램개발·운영경비의전부또는일부지원		
청소년지원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추진 국제청소년교류활동지속발전 기반조성 민간기구의국제청소년교류활동시행지원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추진 민간기구의국제청소년교류활동시행지원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추진 민간기구의국제청소년교류활동시행지원	청소년활동법	54조
청소년지원		자매도시협정에 청소년교류활동 포함 노력	자매도시협정에 청소년교류활동 포함 노력	청소년활동법	55조
청소년지원	교포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장려 청소년시설주관교포청소년교류활동지원	교포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장려	교포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장려	청소년활동법	56조
청소년지원	청소년교류활동 사후 지원 마련	청소년교류활동 사후 지원 마련	청소년교류활동 사후 지원 마련	청소년활동법	57조
청소년지원	청소년교육센터 설치·운영			청소년활동법	58조
청소년지원	남북한 청소년교류 기본계획 수립, 제도적 여건 조성 남북청소년교류기반조성을위한통일교육실시			청소년활동법	59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문화활동에 청소년 참여기반조성 시책 개발·시행 문화예술단체등의자발적참여의경비전부/일부지원	청소년문화활동에 청소년 참여기반조성 시책 개발·시행 문화예술단체등의자발적참여의경비전부/일부지원	청소년문화활동에 청소년 참여기반조성 시책 개발·시행 문화예술단체등의자발적참여의경비전부/일부지원	청소년활동법	60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청소년활동법	6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청소년지원	청소년문화활동에 전통문화 구현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문화활동에 전통문화 구현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문화활동에 전통문화 구현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활동법	62조
청소년지원	청소년축제 장려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축제 장려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축제 장려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활동법	63조
청소년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활동법	64조
청소년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청소년활동법	65조
청소년지원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조세감면, 특례적용			청소년활동법	66조
청소년지원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수련활동운영기관 업무등의 보고명령, 장부등 검사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수련활동운영기관 업무등의 보고명령, 장부등 검사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수련활동운영기관 업무등의 보고명령, 장부등 검사	청소년활동법	67조
청소년지원	과태료 부과·징수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청소년활동법	72조
청소년보호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등 필요 조치 지원프로그램마련에필요한시책 수립·시행 지원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 방안마련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등 필요 조치 지원프로그램마련에필요한시책 수립·시행 지원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 방안마련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등 필요 조치 지원프로그램마련에필요한시책 수립·시행 지원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 방안마련	학교밖청소년법	3조
청소년보호	청소년기본법 14조의 연도별시행계획에 포함(1-7호)	청소년기본법 14조의 연도별시행계획에 포함(1-7호)	청소년기본법 14조의 연도별시행계획에 포함(1-7호)	학교밖청소년법	5조
청소년보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학업중단현황조사는교육부장관			학교밖청소년법	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과협의실시 실태조사에서필요한자료제출 또는의견진술요청				
청소년보호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조직·구성·운영			학교밖청소년법	7조
청소년보호	심리상담, 진로삼당, 가족상담 등 상담 제공	심리상담, 진로삼당, 가족상담 등 상담 제공	심리상담, 진로삼당, 가족상담 등 상담 제공	학교밖청소년법	8조
청소년보호	학업 복귀,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1-4호)	학업 복귀,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1-4호)	학업 복귀,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1-4호)	학교밖청소년법	9조
청소년보호	직업체험과 훈련 지원(1-4호), 직업교육 훈련 실시	직업체험과 훈련 지원(1-4호), 직업교육 훈련 실시	직업체험과 훈련 지원(1-4호), 직업교육 훈련 실시	학교밖청소년법	10조
청소년보호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 제공 자립에필요한교육지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을우선적으로제공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 제공 자립에필요한교육지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을우선적으로제공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 제공 자립에필요한교육지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을우선적으로제공	학교밖청소년법	11조
청소년보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지정(1-3호 기관) 지원센터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지정(1-3호 기관) 지원센터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지정(1-3호 기관) 지원센터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지원	학교밖청소년법	12조
청소년보호	지원센터 업무 전부/일부 정지, 지정 취소 지정취소청문	지원센터 업무 전부/일부 정지, 지정 취소 지정취소청문	지원센터 업무 전부/일부 정지, 지정 취소 지정취소청문	학교밖청소년법	13조
청소년보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			학교밖청소년법	17조
청소년보호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학교밖청소년법	21조

〈부표 1-5〉 복지사무 : 여성·가족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1~9호) 필요재원 확보 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육성·지원	가정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1~9호) 필요재원 확보 가정폭력기구 설치와 공무원 배치 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육성·지원	가정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1~9호) 필요재원 확보 가정폭력기구 설치와 공무원 배치 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육성·지원	가정폭력방지법	4조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가정폭력방지법	4조의2
피해자보호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개발·보급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부실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조치 교육기관 점검결과 반영요구(1~4호) 교육기관 점검결과 공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4조의3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피해(가구)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구)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구)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방지법	4조의4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가정폭력방지법	4조의6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추방 주간 행사 등 시행	가정폭력 추방 주간 행사 등 시행	가정폭력 추방 주간 행사 등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4조의7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운영 신고 수리	가정폭력방지법	5조
피해자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인가	가정폭력방지법	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인가 보호시설의 입소 승인	가정폭력방지법	7조의3
피해자보호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지원	가정폭력방지법	7조의5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수리	가정폭력방지법	8조의3
피해자보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가정폭력방지법	8조의4
피해자보호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가정폭력방지법	9조의3
피해자보호			상담소·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일시중지/폐지 신고 수리,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10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감독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감독	가정폭력방지법	11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 폐지, 업무 정지 명령, 인가 취소	가정폭력방지법	12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 폐지, 업무 정지 명령,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가정폭력방지법	12조의2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일부 보조 장애인보호시설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지원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일부 보조 장애인보호시설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지원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일부 보조 장애인보호시설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지원	가정폭력방지법	1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평가			가정폭력방지법	13조의2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권고	상담소,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권고	상담소,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권고	가정폭력방지법	14조
피해자보호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가정폭력방지법	22조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행정·재정적 조치(1-6호)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노력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행정·재정적 조치(1-6호)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행정·재정적 조치(1-6호)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3조
피해자보호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종합보고서 발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자료 및 협조 요청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4조
피해자보호	기관, 학교 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국민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전문강사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점검결과 부실기관에 필요조치 점검결과 국가기관등의 평가 반영 요청 점검결과를 언론등에 공표	기관, 학교 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국민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기관, 학교 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5조
피해자보호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6조
피해자보호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가족의 취학 지원	성매매피해자 등 또는 가족의 취학 지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가족의 취학 지원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8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지원시설 설치·운영	지원시설 설치·운영 (특별자치시·도)지원시설 설치신고 수리	지원시설 설치·운영 지원시설 설치신고 수리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10조
피해자보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에게 보호비용 지원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에게 보호비용 지원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에게 보호비용 지원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14조
피해자보호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별자치시·도)자활지원센터 설치신고 수리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센터 설치신고 수리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15조
피해자보호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운영 (특별자치시·도)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신고 수리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신고 수리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17조
피해자보호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19조
피해자보호	성매매피해상담소등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성매매피해상담소등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20조
피해자보호	의료급여 비급여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급여 비급여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급여 비급여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23조
피해자보호	치료 전담의료기관 지정	(특별자치시·도)치료 전담의료기관 지정	치료 전담의료기관 지정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24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비용 보조 해외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범위에서 경비 보조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비용 보조 해외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범위에서 경비 보조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비용 보조 해외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범위에서 경비 보조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25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등의 운영실적 평가, 감독 및 지원에 반영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26조
피해자보호	상담소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상담소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상담소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2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특별자치시·도)상담소등 폐지, 휴지 신고 수리 (특별자치시·도)해당시설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상담소등 폐지, 휴지 신고 수리 해당시설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28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등의 업무 정지 또는 폐지 명령, 폐쇄 해당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상담소등의 업무 정지 또는 폐지 명령, 폐쇄 해당시설이용자권익보호조치	상담소등의 업무 정지 또는 폐지 명령, 폐쇄 해당시설이용자권익보호조치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31조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소 출입 지도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소 출입 지도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소 출입 지도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33조의2
피해자보호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38조
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조치(1-7호)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조치(1-7호)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조치(1-7호)	성폭력방지법	3조
피해자보호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결과 발표			성폭력방지법	4조
피해자보호	기관, 학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국민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실시 결과 점검 점검결과 부실기관 필요조치 점검결과 국가기관 등의 평가 반영 요청 점검결과 언론 등에 공표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기관, 학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국민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기관, 학교 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성폭력방지법	5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위탁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위탁		성폭력방지법	5조의2
피해자보호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성폭력방지법	5조의3
피해자보호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 취업 지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 취업 지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 취업 지원	성폭력방지법	7조
피해자보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법률상담 등을 요청			성폭력방지법	7조의2
피해자보호	촬영물 삭제 지원, 지원 비용 구상권 행사			성폭력방지법	7조의3
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특별자치시·도)상담소 설치·운영신고 수리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상담소 설치·운영신고 수리	성폭력방지법	8조
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운영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운영 (특별자치시·도)보호시설 설치·운영 인가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운영 보호시설 설치·운영 인가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	성폭력방지법	12조
피해자보호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비용을 지원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비용을 지원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비용을 지원	성폭력방지법	14조
피해자보호		(특별자치시·도)보호시설 입소 보고 수리, 입소 승인	보호시설 입소 보고 수리, 입소 승인	성폭력방지법	15조
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성폭력방지법	18조
피해자보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위탁 또는 지정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위탁 또는 지정 (특별자치시·도)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수리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위탁 또는 지정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수리	성폭력방지법	19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성폭력방지법	20조
피해자보호		(특별자치시·도)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확인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확인	성폭력방지법	21조
피해자보호		(특별자치시·도)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성폭력방지법	22조
피해자보호		(특별자치시·도)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이 업무 폐지 또는 정지 명령, 인가 취소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필요조치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이 업무 폐지 또는 정지 명령, 인가 취소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필요 조치	성폭력방지법	23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			성폭력방지법	25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비 보조 실태조사, 평가, 보고 및 검사의 결과 고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비 보조 실태조사, 평가, 보고 및 검사의 결과 고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비 보조 실태조사, 평가, 보고 및 검사의 결과 고려	성폭력방지법	26조
피해자보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지정 취소,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	(특별자치시·도)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지정 취소,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	성폭력방지법	27조
피해자보호	의료지원 필요 경비 전부/일부 지원	의료지원 필요 경비 전부/일부 지원	의료지원 필요 경비 전부/일부 지원	성폭력방지법	28조
피해자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에 보고 명령, 운영상황 조사, 서류 검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에 보고 명령, 운영상황 조사, 서류 검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에 보고 명령, 운영상황 조사, 서류 검사	성폭력방지법	3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특별자치시·도)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업무 폐지 또는 정지 명령,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업무 폐지 또는 정지 명령,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성폭력방지법	34조
피해자보호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성폭력방지법	38조
피해자보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시책 수립,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재원 확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시책 수립,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재원 확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종합시책 수립,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재원 확보	여성폭력방지법	4조
피해자보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법	7조
피해자보호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차년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제출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통보 분석·평가 결과 다음연도 시행계획반영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차년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제출 분석·평가 결과 다음연도 시행계획반영		여성폭력방지법	8조
피해자보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여성폭력방지법	9조
피해자보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성폭력방지법	10조
피해자보호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성폭력방지법	11조
피해자보호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성폭력방지법	12조
피해자보호	여성폭력통계 관리, 수집, 산출, 공표, 제공			여성폭력방지법	1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피해자 보호·회복·자립·자활 필요시책 마련 피해자보호·지원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경비 전부/일부 지원	피해자 보호·회복·자립·자활 필요시책 마련 피해자보호·지원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경비 전부/일부 지원	피해자 보호·회복·자립·자활 필요시책 마련 피해자보호·지원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 경비 전부/일부 지원	여성폭력방지법	15조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여성폭력방지법	16조
피해자보호	피해자 정보 보호 시책 수립·시행	피해자 정보 보호 시책 수립·시행	피해자 정보 보호 시책 수립·시행	여성폭력방지법	17조
피해자보호	2차 피해 방지지침과 교육 등 필요한 대책 마련 2차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2차 피해 방지지침과 교육 등 필요한 대책 마련 2차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2차 피해 방지지침과 교육 등 필요한 대책 마련 2차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여성폭력방지법	18조
피해자보호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책 수립·시행 학교 예방교육 실시 시책 수립·시행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책 수립·시행 학교 예방교육 실시 시책 수립·시행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책 수립·시행 학교 예방교육 실시 시책 수립·시행	여성폭력방지법	19조
피해자보호	홍보사업 실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여성폭력추방주간 운영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요청	홍보사업 실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여성폭력추방주간 운영	홍보사업 실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여성폭력추방주간 운영	여성폭력방지법	20조
피해자보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여성폭력방지법	21조
피해자보호	피해자 명예회복, 인권증진, 진상규명, 역사교육 등을 위한 적극 노력, 필요한 조직과 예산 확보 피해자 발굴, 안정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조치 마련 관련정책 수립시 피해자 의견청취			위안부피해자법	2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피해자보호	생활안정지원자 여부 결정, 등록, 신청인에 통보			위안부피해자법	3조
피해자보호	생활안정지원자 지원(1-5호)			위안부피해자법	4조
피해자보호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위안부피해자법	5조
피해자보호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운영비용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운영비용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운영비용 지원	위안부피해자법	5조의2
피해자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위안부피해자법	6조
피해자보호	생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체납처분 징수			위안부피해자법	9조
피해자보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보고		위안부피해자법	10조
피해자보호	관련 사업 수행(1-6호)			위안부피해자법	11조
피해자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취지의 행사와 홍보 실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취지의 행사와 홍보 실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 취지의 행사와 홍보 실시	위안부피해자법	11조의2
피해자보호	국적회복하지 못한 외국거주자에 필요한 지원	국적회복하지 못한 외국거주자에 필요한 지원	국적회복하지 못한 외국거주자에 필요한 지원	위안부피해자법	11조의3
피해자보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법률상담 등을 요청			위안부피해자법	11조의4
피해자보호	관련 사업 수행(1-6호) 경비 일부 보조	관련 사업 수행(1-6호) 경비 일부 보조	관련 사업 수행(1-6호) 경비 일부 보조	위안부피해자법	12조
피해자보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상 대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상 대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상 대여	위안부피해자법	13조
가족친화	가족친화환경 조성 종합시책 수립·시행 수반하는 예산상 조치 노력	가족친화환경 조성 종합시책 수립·시행 수반하는 예산상 조치 노력	가족친화환경 조성 종합시책 수립·시행 수반하는 예산상 조치 노력	가족친화법	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가족친화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가족친화법	5조
가족친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여가부장관에 제출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여가부장관에 제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 추진실적 여가부장관에 제출	가족친화법	6조
가족친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조 요청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조 요청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조 요청	가족친화법	7조
가족친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실시			가족친화법	8조
가족친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추진(1~5호)			가족친화법	9조
가족친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가족친화법	10조
가족친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1~6호)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배려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1~6호)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배려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1~6호)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배려	가족친화법	11조
가족친화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1~3호)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1~3호)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1~3호)	가족친화법	12조
가족친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1~5호)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1~5호) 관할지역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지원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1~5호) 관할지역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지원	가족친화법	13조
가족친화	가족친화지수 개발·보급, 결과 공표			가족친화법	14조
가족친화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법	15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가족친화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비용보조)			가족친화법	16조
가족친화	인증 사후관리			가족친화법	17조의2
가족친화	인증 취소			가족친화법	18조
가족친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족친화법	19조
가족친화	인증기관, 인증기업에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검사			가족친화법	20조
가족친화	인증 취소 또는 인증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가족친화법	21조
가족친화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가족친화법	25조
건강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여건 조성, 시책 강구 추진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 민주적 가정 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노력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여건 조성, 시책 강구 추진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 민주적 가정 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노력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여건 조성, 시책 강구 추진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 민주적 가정 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노력	건강가정기본법	5조
건강가정	적절한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8조
건강가정	가족해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강구	가족해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강구	가족해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강구	건강가정기본법	9조
건강가정	건강가정 구현 기여하도록 지역사회자원 개발·활용	건강가정 구현 기여하도록 지역사회자원 개발·활용	건강가정 구현 기여하도록 지역사회자원 개발·활용	건강가정기본법	10조
건강가정	건강가정 관련 정보 제공과 정보관리체계 확립	건강가정 관련 정보 제공과 정보관리체계 확립	건강가정 관련 정보 제공과 정보관리체계 확립	건강가정기본법	1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확정계획 통보			건강가정기본법	15조
건강가정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여가부장관 제출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여가부장관 제출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여가부장관 제출	건강가정기본법	16조
건강가정	지자체별 시행계획 조정, 이행상황 점검, 변경 요구			건강가정기본법	17조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건강가정기본법	18조
건강가정	건강가정 관련 연구 진흥,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제공	건강가정 관련 연구 진흥,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제공	건강가정 관련 연구 진흥,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제공	건강가정기본법	19조
건강가정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20조
건강가정	가정에 대한 지원(1~9호)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 시책확산 노력 사회적 보호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적극적 지원	가정에 대한 지원(1~9호)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 시책확산 노력 사회적 보호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적극적 지원	가정에 대한 지원(1~9호)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 시책확산 노력 사회적 보호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적극적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21조
건강가정	위기가족 긴급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건강가정기본법	21조의2
건강가정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관한 정보 요청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관한 정보 요청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관한 정보 요청	건강가정기본법	21조의3
건강가정	위기가족 긴급지원 필요 비용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필요 비용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필요 비용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21조의4
건강가정	보육, 방과후서비스, 육아휴직제 등 확대 시행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 수립·시행 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범위 지원	보육, 방과후서비스, 육아휴직제 등 확대 시행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 수립·시행 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범위 지원	보육, 방과후서비스, 육아휴직제 등 확대 시행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 수립·시행 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범위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2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가사노동가치 사회적인식 제고 노력	가사노동가치 사회적인식 제고 노력	가사노동가치 사회적인식 제고 노력		
건강가정	가족 지지 시책 개발·추진 제도/정책/사업 추진시 가족우대방안 강구	가족 지지 시책 개발·추진 제도/정책/사업 추진시 가족우대방안 강구	가족 지지 시책 개발·추진 제도/정책/사업 추진시 가족우대방안 강구	건강가정기본법	23조
건강가정	가족구성원의 종합적 건강증진 대책 마련	가족구성원의 종합적 건강증진 대책 마련	가족구성원의 종합적 건강증진 대책 마련	건강가정기본법	24조
건강가정	가족부양 부담 완화, 전문보호시설 확대,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 마련	가족부양 부담 완화, 전문보호시설 확대,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 마련	가족부양 부담 완화, 전문보호시설 확대,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 마련	건강가정기본법	25조
건강가정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교육·상담·홍보 등을 추진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 개입과 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교육·상담·홍보 등을 추진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 개입과 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교육·상담·홍보 등을 추진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 개입과 서비스	건강가정기본법	26조
건강가정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증진 기회와 서비스 제공 가족단위 자원봉사 참여 확대 노력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증진 기회와 서비스 제공 가족단위 자원봉사 참여 확대 노력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증진 기회와 서비스 제공 가족단위 자원봉사 참여 확대 노력	건강가정기본법	27조
건강가정	건강가정 생활문화 지원정책 수립(1-7호 포함)	건강가정 생활문화 지원정책 수립(1-7호 포함)	건강가정 생활문화 지원정책 수립(1-7호 포함)	건강가정기본법	28조
건강가정	건전한 가정의례 확립 지원정책 수립	건전한 가정의례 확립 지원정책 수립	건전한 가정의례 확립 지원정책 수립	건강가정기본법	29조
건강가정	가정봉사원 지원, 예산 범위에서 일정금액 지급	가정봉사원 지원, 예산 범위에서 일정금액 지급	가정봉사원 지원, 예산 범위에서 일정금액 지급	건강가정기본법	30조
건강가정	이혼조정 내실화 필요 조치 강구 이혼문제 준비 도움 서비스 제공 이혼가족 양육비 집행력 실효성 강화, 적용대상 확대	이혼조정 내실화 필요 조치 강구 이혼문제 준비 도움 서비스 제공 이혼가족 양육비 집행력 실효성 강화, 적용대상 확대	이혼조정 내실화 필요 조치 강구 이혼문제 준비 도움 서비스 제공 이혼가족 양육비 집행력 실효성 강화, 적용대상 확대	건강가정기본법	3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건강가정	건강가정 교육 실시	건강가정 교육 실시	건강가정 교육 실시	건강가정기본법	32조
건강가정	건강가정 자원봉사활동 육성, 장려	건강가정 자원봉사활동 육성, 장려	건강가정 자원봉사활동 육성, 장려	건강가정기본법	33조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건강가정기본법	34조
건강가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비 출연			건강가정기본법	34조의2
건강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건강가정기본법	35조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 수행 단체 또는 개인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필요한 지원	건강가정사업 수행 단체 또는 개인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필요한 지원	건강가정사업 수행 단체 또는 개인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필요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36조
건강가정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건강가정기본법	37조
가정의례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가정의례법	3조
가정의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설정, 시행지침 마련 권고			가정의례법	5조
가정의례	건전가정의례준칙 사업·활동 민간단체, 개인에 필요 경비 보조	건전가정의례준칙 사업·활동 민간단체, 개인에 필요 경비 보조	건전가정의례준칙 사업·활동 민간단체, 개인에 필요 경비 보조	가정의례법	6조
가정의례	강당, 회의실 등을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제공	강당, 회의실 등을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제공	강당, 회의실 등을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제공	가정의례법	7조
가정의례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가정의례법	8조
결혼중개	결혼중개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결혼중개업법	2조의2
결혼중개		(특별자치시)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수리, 수리여부 통보, 신고필증 교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수리, 수리여부 통보, 신고필증 교부	결혼중개업법	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결혼중개		(특별자치시)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등록필증 교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등록필증 교부	결혼중개업법	4조
결혼중개		(특별자치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결혼중개업법	4조의2
결혼중개		(특별자치시)국제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국제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결혼중개업법	4조의3
결혼중개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마련, 사용 권장			결혼중개업법	10조
결혼중개	(외교부장관)외국법령 위반 내용 여가부장관에 통보 (여가부장관)외국법령위반내용시 도지사에통보			결혼중개업법	11조
결혼중개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결혼중개업법	11조의2
결혼중개		(특별자치시)결혼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보고 명령, 조사, 서류 검사	결혼중개업자에게 자료제출과 보고 명령, 조사, 서류 검사	결혼중개업법	15조
결혼중개	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협조 요청			결혼중개업법	16조
결혼중개		(특별자치시)시정/변경 명령(1-7호)	시정/변경 명령(1-7호)	결혼중개업법	17조
결혼중개		(특별자치시)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명령(1~24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명령(1~24호)	결혼중개업법	18조
결혼중개		(특별자치시)폐쇄조치(1~3호)	폐쇄조치(1~3호)	결혼중개업법	19조
결혼중개		(특별자치시)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결혼중개업법	20조
결혼중개	결혼중개업자, 종사자 교육	(특별자치시)결혼중개업자, 종사자 교육	결혼중개업자, 종사자 교육	결혼중개업법	2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결혼중개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특별자치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결혼중개업법	24조의2
결혼중개		(특별자치시)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결혼중개업법	28조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종합시책 수립, 필요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여성 생애주기·모성 및 장애특성 고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종합시책 수립, 필요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여성 생애주기·모성 및 장애특성 고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종합시책 수립, 필요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여성 생애주기·모성 및 장애특성 고려	경력단절여성법	3조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경력단절여성법	4조
여성고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력단절여성법	5조
여성고용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경력단절여성법	6조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법	7조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질 제고 노력			경력단절여성법	8조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 진출 유망 직종 선정, 진출 지원			경력단절여성법	9조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자체실시 직업교육훈련 필요 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경력단절여성법	10조
여성고용	인턴취업지원사업 실시			경력단절여성법	11조
여성고용	여성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사업에 필요한 지원			경력단절여성법	1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법	13조
여성고용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법	13조의2
여성고용	지원센터 지정 취소, 청문			경력단절여성법	13조의3
여성고용	지정 지원센터에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 출입·검사			경력단절여성법	14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필요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다문화가족지원 담당기구 설치, 공무원 배치	필요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다문화가족지원 담당기구 설치, 공무원 배치	다문화가족법	3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가족법	3조의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전년도 추진실적, 차년도 시행계획 제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전년도 추진실적, 차년도 시행계획 제출		다문화가족법	3조의3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가족법	3조의4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다문화가족법	4조
다문화가족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홍보 등 필요 조치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교육부)학교 다문화이해교육 시책 수립·시행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홍보 등 필요 조치 (교육감)학교 다문화이해교육 시책 수립·시행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홍보 등 필요 조치	다문화가족법	5조
다문화가족	생활 필요 정보 제공, 교육 필요 지원 출신국가 이해 정보 제공, 관련	생활 필요 정보 제공, 교육 필요 지원 출신국가 이해 정보 제공, 관련	생활 필요 정보 제공, 교육 필요 지원 출신국가 이해 정보 제공, 관련	다문화가족법	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교육 지원 방문교육, 원격교육 등 방법활용, 교육전문성 강화 방문교육 비용을 차등 지원	교육 지원 방문교육, 원격교육 등 방법활용, 교육전문성 강화 방문교육 비용을 차등 지원	교육 지원 방문교육, 원격교육 등 방법활용, 교육전문성 강화 방문교육 비용을 차등 지원		
다문화가족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 전문적서비스 제공 노력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 전문적서비스 제공 노력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 전문적 서비스 제공 노력	다문화가족법	7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노력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보호·지원 통역서비스 가능 상담소, 보호시설설치 확대 노력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노력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보호·지원 통역서비스 가능 상담소, 보호시설설치 확대 노력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노력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보호·지원 통역서비스 가능 상담소, 보호시설설치 확대 노력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법	8조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법	9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차별 금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대책 마련 18세미만 보육·교육지원, 언어능력제고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차별 금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대책 마련 (교육감)학과외,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18세미만 보육·교육지원, 언어능력제고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차별 금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 마련 18세미만 보육·교육지원, 언어능력제고 지원	다문화가족법	10조
다문화가족	5~10조 정책 추진에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노력	5~10조 정책 추진에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노력	5~10조 정책 추진에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노력	다문화가족법	11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가족법	11조의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지원센터 운영비용 전부/일부 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지정 지원센터 운영비용 전부/일부 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지정 지원센터 운영비용 전부/일부 보조	다문화가족법	12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다문화가족법	12조의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종사공무원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종사공무원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종사공무원 교육	다문화가족법	13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노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필요경비 전부/일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노력 전문인력 양성기관 필요경비 전부/일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노력 전문인력 양성기관 필요경비 전부/일부 지원	다문화가족법	13조의2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지원센터에 제공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지원센터에 제공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지원센터에 제공	다문화가족법	15조의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단체/개인에게 필요 비용 전부/일부 보조, 필요 행정적 지원 결혼이민자 단체 구성·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단체/개인에게 필요 비용 전부/일부 보조, 필요 행정적 지원 결혼이민자 단체 구성·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단체/개인에게 필요 비용 전부/일부 보조, 필요 행정적 지원 결혼이민자 단체 구성·운영 지원	다문화가족법	16조
다문화가족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다문화가족법	17조
성별영향평가	정책 수립·시행에서 성평등 확보 대책 강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 절차가 적절/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	정책 수립·시행에서 성평등 확보 대책 강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 절차가 적절/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	정책 수립·시행에서 성평등 확보 대책 강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 절차가 적절/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	성별영향평가법	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성별영향평가	제·개정 법령,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여가부장관)성별영향평가 대상 결정	제·개정 법령,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제·개정 법령,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성별영향평가법	5조
성별영향평가	1-4호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	1-4호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	1-4호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	성별영향평가법	6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성별영향평가법	7조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여가부장관에 제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자료 제출 요청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를 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여가부장관에 제출	성별영향평가를 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여가부장관에 제출	성별영향평가법	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 반영 결과를 여가부장관에 제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	결과를 정책에 반영, 매년 여가부장관에 제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	결과를 정책에 반영, 매년 여가부장관에 제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	성별영향평가법	9조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1-3호)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통보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필요자료 제출 요구			성별영향평가법	10조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1-4호) 결과를 정책에 반영, 반영결과 여가부장관에 제출	특정성별영향평가(1-4호) 결과를 정책에 반영, 반영결과 여가부장관에 제출	성별영향평가법	10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정책 등에 개선권고, 의견표명 개선권고/의견표명 대상기관 개선계획 제출 개선계획 제출기관은 조치후 결과 제출	개선권고/의견표명 대상기관 개선계획 제출 개선계획 제출기관은 조치후 결과 제출	개선권고/의견표명 대상기관 개선계획 제출 개선계획 제출기관은 조치후 결과 제출	성별영향평가법	11조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출, 공표			성별영향평가법	12조
성별영향평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별영향평가법	13조
성별영향평가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별영향평가법	13조의2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법	14조
성별영향평가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성별영향평가법	15조
성별영향평가	중앙과 지방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을 제공			성별영향평가법	16조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1-5호 기관)			성별영향평가법	17조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전문인력 육성 방안 강구, 정보지원체계 구축·운영			성별영향평가법	18조
양육비	미성년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방	미성년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방	미성년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방	양육비이행법	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안 마련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과 홍보실시	안 마련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과 홍보실시	안 마련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과 홍보실시		
양육비	자녀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양육비이행법	5조
양육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양육비이행법	6조
양육비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 주소 등 자료 요청			양육비이행법	13조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자료 제출 요구, 조사, 질문			양육비이행법	16조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			양육비이행법	17조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자료 파기			양육비이행법	17조의2
양육비	세금환급예정액의 압류, 차감			양육비이행법	20조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납 정보를 제공 가능			양육비이행법	21조
양육비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양육비이행법	28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 책임 한부모가족 권익·자립 지원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등 필요 조치 유치원, 학교 한부모가족 교육실시 시책 수립·시행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노력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 책임 한부모가족 권익·자립 지원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등 필요 조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노력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 책임 한부모가족 권익·자립 지원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등 필요 조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노력	한부모가족법	2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발굴 필요 자료·정보 제공, 홍보 노력	지원대상자 발굴 필요 자료·정보 제공, 홍보 노력	지원대상자 발굴 필요 자료·정보 제공, 홍보 노력	한부모가족법	5조의3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실시	한부모가족의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실시	한부모가족의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실시	한부모가족법	5조의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조사·연구 실태조사 필요 자료 등 협조 요청			한부모가족법	6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교육 실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교육 실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교육 실시	한부모가족법	6조의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비용 전부/일부 보조, 행정지원 자조모임단체 사업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비용 전부/일부 보조, 행정지원 자조모임단체 사업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비용 전부/일부 보조, 행정지원 자조모임단체 사업 등 지원	한부모가족법	9조
한부모가족		(특별자치시·도) 관할구역 지원대상자 조사 조사결과 작성·비치, 전자적으로 관리	관할구역 지원대상자 조사 조사결과 작성·비치, 전자적으로 관리	한부모가족법	10조
한부모가족	신청이 있으면 복지 급여를 실시 5세 이하 아동 양육, 청소년한부모등 추가급여 실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추가 지급			한부모가족법	12조
한부모가족	신청확인 위해 자료요구, 출입, 조사, 질문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특별자치시·도) 신청확인 위해 자료요구, 출입, 조사, 질문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신청확인 위해 자료요구, 출입, 조사, 질문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한부모가족법	12조의2
한부모가족	급여사유 발생 등의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			한부모가족법	12조의3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거절·정지·변경·중지	(특별자치시·도) 복지급여 지급 거절·정지·변경·중지	복지급여 지급 거절·정지·변경·중지	한부모가족법	12조의4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	복지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	복지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	한부모가족법	12조의5
한부모가족	자금대여(1-5호)	자금대여(1-5호)	자금대여(1-5호)	한부모가족법	13조
한부모가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직업알선, 우선고용 노력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직업알선, 우선고용 노력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직업알선, 우선고용 노력	한부모가족법	14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시설·기관과 직업안정기관 간 연계 도모	한부모가족시설·기관과 직업안정기관 간 연계 도모	한부모가족시설·기관과 직업안정기관 간 연계 도모	한부모가족법	14조의2
한부모가족	공공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 우선 이용 노력	공공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 우선 이용 노력	공공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 우선 이용 노력	한부모가족법	16조
한부모가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노력(1-6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노력(1-6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노력(1-6호)	한부모가족법	17조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1-4호) 학교설치 직장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1-4호) 학교설치 직장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1-4호) 학교설치 직장어린이집 이용 지원	한부모가족법	17조의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			한부모가족법	17조의3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자산 형성 재정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산 형성 재정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산 형성 재정 지원	한부모가족법	17조의4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본인 통보	청소년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본인 통보	청소년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본인 통보	한부모가족법	17조의5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자녀 의료비 추가 지원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자녀 의료비 추가 지원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자녀 의료비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법	17조의6
한부모가족	보육·교육 실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 차별 금지	보육·교육 실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 차별 금지	보육·교육 실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 차별 금지	한부모가족법	17조의7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주택 일정 비율 우선 분양 노력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주택 일정 비율 우선 분양 노력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주택 일정 비율 우선 분양 노력	한부모가족법	18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			한부모가족법	18조의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한부모가족법	2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한부모가족		(특별자치시·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중단 신고시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중단 신고시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	한부모가족법	21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보고 명령, 조사, 검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보고 명령, 조사, 검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보고 명령, 조사, 검사	한부모가족법	23조
한부모가족		(특별자치시·도) 시설사업 정지/폐지 명령, 시설 폐쇄 입소자 권익보호 필요조치	시설사업 정지/폐지 명령, 시설 폐쇄 입소자 권익보호 필요조치	한부모가족법	24조
한부모가족		(특별차치시·도)사업 폐지 명령, 시설 폐쇄를 위한 청문	사업 폐지 명령, 시설 폐쇄를 위한 청문	한부모가족법	24조의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의 비용 보조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의 비용 보조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의 비용 보조	한부모가족법	25조
한부모가족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한부모가족법	26조
한부모가족	과태료 부과·징수			한부모가족법	30조의2

〈부표 1-6〉 복지사무 : 노인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수립·시행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수립·시행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수립·시행	고령친화산업법	3조
고령친화산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			고령친화산업법	4조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제품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강구	고령친화제품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강구	고령친화제품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강구	고령친화산업법	5조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고령친화산업법	6조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 지원시책 강구, 협동연구 촉진	고령친화산업 지원시책 강구, 협동연구 촉진	고령친화산업 지원시책 강구, 협동연구 촉진	고령친화산업법	7조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1-3호)			고령친화산업법	8조
고령친화산업	국제협력 촉진, 국제교류와 국제 표준화등 사업	국제협력 촉진, 국제교류와 국제 표준화등 사업	국제협력 촉진, 국제교류와 국제 표준화등 사업	고령친화산업법	9조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고령친화산업법	10조
고령친화산업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고령친화산업법	11조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고령친화산업법	12조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고령친화산업법	13조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원·지원 취소와 지원액 환수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원·지원 취소와 지원액 환수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원·지원 취소와 지원액 환수	고령친화산업법	15조
고령친화산업	과태료 부과·징수			고령친화산업법	1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고시			기초연금법	3조
기초연금	비용 부담을 위한 재원 조성	비용 부담을 위한 재원 조성	비용 부담을 위한 재원 조성	기초연금법	4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고시			기초연금법	5조
기초연금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결정 고시			기초연금법	5조의2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연금액 조정			기초연금법	9조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기초연금 지급 신청 접수	기초연금 지급 신청 접수	기초연금법	10조
기초연금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10조의2
기초연금	자료제출 요구, 확인·조사, 정보 제공 요청	자료제출 요구, 확인·조사, 정보 제공 요청	자료제출 요구, 확인·조사, 정보 제공 요청	기초연금법	11조
기초연금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요청			기초연금법	12조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을 결정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을 결정	기초연금법	13조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14조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15조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초연금법	16조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기초연금 변동 신고 접수	기초연금 변동 신고 접수	기초연금법	18조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기초연금액 환수	기초연금액 환수	기초연금법	19조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환수금 고지, 독촉, 징수	환수금 고지, 독촉, 징수	기초연금법	2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기초연금		(특별자치시·도)이의신청 접수, 결정 통지	이의신청 접수, 결정 통지	기초연금법	22조
기초연금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초연금법	26조
기초연금	과태료 부과·징수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기초연금법	31조
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 증진 시책 강구와 추진	노인보건복지 증진 시책 강구와 추진	노인보건복지 증진 시책 강구와 추진	노인복지법	4조
노인복지	노인 사고 예방 시책 수립과 시행	노인 사고 예방 시책 수립과 시행	노인 사고 예방 시책 수립과 시행	노인복지법	4조의2
노인복지	노인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복지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 실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 실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 실시	노인복지법	6조
노인복지	노인학대 예방 등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요청			노인복지법	6조의2
노인복지	노인 인권교육기관 지정, 비용 지원, 지정 취소			노인복지법	6조의3
노인복지		(특별차치도)노인복지상담원 임용/위촉	노인복지상담원 임용/위촉	노인복지법	7조
노인복지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조장, 공급자 지원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조장, 공급자 지원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조장, 공급자 지원	노인복지법	8조
노인복지	노인사회참여 시책과 노인복지 관계기관 지원	노인사회참여 시책과 노인복지 관계기관 지원	노인사회참여 시책과 노인복지 관계기관 지원	노인복지법	23조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운영, 운영 위탁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운영, 운영 위탁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운영, 운영 위탁	노인복지법	23조의2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물품 우선구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물품 우선구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물품 우선구매	노인복지법	23조의3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노인복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노인복지법	24조
노인복지	생업지원(매점, 자동판매기, 위탁사업 우선 고려)	생업지원(매점, 자동판매기, 위탁사업 우선 고려)	생업지원(매점, 자동판매기, 위탁사업 우선 고려)	노인복지법	25조
노인복지	경로우대(무료 또는 요금 할인) 및 지원	경로우대(무료 또는 요금 할인) 및 지원	경로우대(무료 또는 요금 할인) 및 지원	노인복지법	26조
노인복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노인복지법	27조
노인복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복지법	27조의2
노인복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노인복지법	27조의3
노인복지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비용 부담 또는 일부 지원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비용 부담 또는 일부 지원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비용 부담 또는 일부 지원	노인복지법	27조의4
노인복지	상담, 시설입소, 입소자 장례 실시 등	상담, 시설입소, 입소자 장례 실시 등	상담, 시설입소, 입소자 장례 실시 등	노인복지법	28조
노인복지	재활요양사업	재활요양사업	재활요양사업	노인복지법	30조
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설치 신고 수리	노인복지법	33조
노인복지			노인복지주택 공급가구수, 건축면적 제한 노인복지주택입소자격(자)조사 및 조치	노인복지법	33조의2
노인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설치 신고 수리	노인복지법	35조
노인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설치 신고 수리	노인복지법	3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노인복지	경로당 양곡구입비, 냉·난방비의 전부/일부 보조	경로당 양곡구입비, 냉·난방비의 전부/일부 보조	경로당 양곡구입비, 냉·난방비의 전부/일부 보조	노인복지법	37조의2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설치 신고 수리	노인복지법	39조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자격증 교부		노인복지법	39조의2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노인복지법	39조의14
노인복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노인복지법	39조의3
노인복지	긴급전화 설치	긴급전화 설치	긴급전화 설치	노인복지법	39조의4
노인복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운영위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노인복지법	39조의5
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노인복지법	39조의7
노인복지	실종노인 관련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종노인 보호 및 지원			노인복지법	39조의10
노인복지	노인 또는 관계인데 대하여 금지행위(39조의9)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	노인 또는 관계인데 대하여 금지행위(39조의9)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	노인 또는 관계인데 대하여 금지행위(39조의9)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	노인복지법	39조의11
노인복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요청, 확인, 점검 및 결과 제출	노인복지법	39조의17
노인복지	위반사실 공표	위반사실 공표	위반사실 공표	노인복지법	39조의18
노인복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운영	노인복지법	39조의19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 신고 사항 변경,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에 대한 신고 수리	노인복지법	40조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요구, 운영상황 조사, 관계서류 검사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요구, 운영상황 조사, 관계서류 검사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요구, 운영상황 조사, 관계서류 검사	노인복지법	42조
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정지 또는 폐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지 또는 폐지	노인복지법	43조
노인복지		정지 또는 폐지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	정지 또는 폐지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	노인복지법	43조
노인복지			시설 폐지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노인복지법	44조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또는 위탁, 건강진단, 상담·입소,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또는 위탁, 건강진단, 상담·입소,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또는 위탁, 건강진단, 상담·입소,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노인복지법	45조
노인복지	건강진단(27조), 상담·입소(28조) 비용 전부/일부를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 또는 청구	건강진단(27조), 상담·입소(28조) 비용 전부/일부를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 또는 청구	건강진단(27조), 상담·입소(28조) 비용 전부/일부를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 또는 청구	노인복지법	46조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필요비용 보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필요비용 보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필요비용 보조	노인복지법	47조
노인복지	이의신청 접수, 심사, 결정, 통보	이의신청 접수, 심사, 결정, 통보	이의신청 접수, 심사, 결정, 통보	노인복지법	50조
노인복지			보호비용에 대한 조정, 관련서류 제출 요구	노인복지법	50조
노인복지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노인복지법	5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사업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사업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사업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노인복지법	54조
노인복지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노인복지법	61조의2
노후준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노후준비지원법	5조
노후준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사업 실시			노후준비지원법	6조
노후준비	노후준비지표 개발, 보급			노후준비지원법	7조
노후준비	국가노후준비센터(중앙센터) 지정·운영			노후준비지원법	9조
노후준비	지역노후준비센터(지역센터) 지정			노후준비지원법	10조
노후준비	지역센터의 중단, 폐지, 운영재개 신고 수리			노후준비지원법	10조
노후준비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평가와 결과 공개			노후준비지원법	10조
노후준비	지역센터 사업수행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지역센터 사업수행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지역센터 사업수행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노후준비지원법	10조
노후준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 교육 실시			노후준비지원법	11조
노후준비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노후준비지원법	15조
노후준비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노후준비지원법	15조
노후준비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요청			노후준비지원법	1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노후준비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서류 검사			노후준비지원법	18조
노후준비	지역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노후준비지원법	19조
노후준비	지역센터 지정 취소 또는 서비스 제공 정지 명령			노후준비지원법	20조
노후준비	과태료 부과·징수			노후준비지원법	23조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관한 편의제공, 협조·지원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관한 편의제공, 협조·지원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관한 편의제공, 협조·지원	대한노인회법	3조
노인복지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대한노인회법	4조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보조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보조	대한노인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보조	대한노인회법	5조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사무 지도·감독			대한노인회법	9조
노인복지	과태료 부과·징수			대한노인회법	11조
장사(례)	화장·봉안·자연장 장려와 위법 분묘설치 방지 시책	화장·봉안·자연장 장려와 위법 분묘설치 방지 시책 지역주민화장수요를충족할 화장 시설구비	화장·봉안·자연장 장려와 위법 분묘설치 방지 시책 지역주민화장수요를충족할 화장 시설구비	장사법	4조
장사(례)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보고받은지역수급계획을협의 등을거쳐확정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 계획 수립 지역수급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 계획 수립 지역수급계획의전부또는일부를 공동수립가능 지역수급계획을시도지사에게 보고	장사법	5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매장, 화장, 개장 등의 신고 수리	매장, 화장, 개장 등의 신고 수리 공설묘지등의이용신고수리와 신	장사법	8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공설묘지등의이용신고수리와 신고증명서발급	고증명서발급		
장사(례)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법	11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장사법	12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무연고 시신 처리의 사망자 유류품 처분	무연고 시신 처리의 사망자 유류품 처분	장사법	12조의2
장사(례)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 조성·관리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	장사법	13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개인묘지 신고/변경신고 수리.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	개인묘지 신고/변경신고 수리.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	장사법	14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신고/변경신고 수리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신고/변경신고 수리	장사법	15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법인 자연장지 조성 허가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수리	법인 자연장지 조성 허가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수리	장사법	16조
장사(례)		조례에 의해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	조례에 의해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	장사법	19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묘적부를 작성·관리	묘적부를 작성·관리	장사법	2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사(례)	국유림/국유지 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부과를 고시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는 조례로 정함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는 조례로 정함	장사법	23조
장사(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	장사법	23조의2
장사(례)		(특별자치시·도)사설묘지 등 장사시설 폐지 신고 수리	사설묘지 등 장사시설 폐지 신고 수리	장사법	26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에 대한 허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에 대한 허가	장사법	27조
장사(례)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	장사법	28조
장사(례)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장사법	28조의2
장사(례)		(특별자치시·도)장례식장 설치·운영 신고(변경) 수리	장례식장 설치·운영 신고(변경) 수리	장사법	29조
장사(례)		장례지도사 자격 부여		장사법	29조의2
장사(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수리		장사법	29조의3
장사(례)		장례지도사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명령		장사법	29조의5
장사(례)		자격취소 또는 정지 명령에 따른 청문		장사법	29조의6
장사(례)		장사시설 정비·개선 명령, 사용 제한	장사시설 정비·개선 명령, 사용 제한	장사법	30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사설묘지 등에 대한 이전, 개수, 허가취소, 폐쇄, 사용 금지, 업무 정지를 명령	사설묘지 등에 대한 이전, 개수, 허가취소, 폐쇄, 사용 금지, 업무 정지를 명령	장사법	3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장사(례)		(특별자치시·도)장례식장영업자에 시정·영업정지·폐쇄 명령	장례식장영업자에 시정·영업정지·폐쇄 명령	장사법	32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31~32조의 허가 취소, 폐쇄명령의 청문	31~32조의 허가 취소, 폐쇄명령의 청문	장사법	33조
장사(례)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장사법	33조의2
장사(례)	장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장사법	33조의4
장사(례)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 지정, 해제, 조정			장사법	34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과징금 부과·징수	과징금 부과·징수	장사법	35조
장사(례)	공설묘지 등의 설치·조성, 관리비용 보조 장례문화개선을위한조사·연구경비보조	장례문화개선을위한조사·연구경비보조	장례문화개선을위한조사·연구경비보조	장사법	36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장사시설, 사설묘지 등의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 검사 및 보고 명령	장사시설, 사설묘지등의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 검사 및 보고 명령	장사법	37조
장사(례)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장사법	42조
장사(례)		(특별자치시·도)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장사법	43조
고령사회	고령자 고용,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고령자 고용,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고령자 고용,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1조
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 시책 강구 노인의료·요양제도확립·발전, 필요시설·인력확충	국민의 건강증진 시책 강구 노인의료·요양제도확립·발전, 필요시설·인력확충	국민의 건강증진 시책 강구 노인의료·요양제도확립·발전, 필요시설·인력확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고령사회	노후 생활환경 조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노후 생활환경 조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노후 생활환경 조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3조
고령사회	노후 여가와 문화활동 장려, 기반 조성 노인사회활동참여촉진사회기반조성	노후 여가와 문화활동 장려, 기반 조성 노인사회활동참여촉진사회기반조성	노후 여가와 문화활동 장려, 기반 조성 노인사회활동참여촉진사회기반조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
고령사회	평생교육 기회 제공,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등 필요한시책강구	평생교육 기회 제공,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등 필요한시책강구	평생교육 기회 제공,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등 필요한시책강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5조
고령사회	노후생활 설계 상담과 교육 등 필요 시책 강구	노후생활 설계 상담과 교육 등 필요 시책 강구	노후생활 설계 상담과 교육 등 필요 시책 강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5조의2
고령사회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배려, 도농간 격차 등을 반영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배려, 도농간 격차 등을 반영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배려, 도농 간 격차 등을 반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
고령사회	가족관계·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회환경 조성	가족관계·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회환경 조성	가족관계·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회환경 조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7조
고령사회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노동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 수립·시행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노동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 수립·시행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노동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 수립·시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8조
고령사회	고령친화산업 육성,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 강구	고령친화산업 육성,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 강구	고령친화산업 육성,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9조
효행장려	효행장려기본계획 수립(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포함 가능)			효행장려법	4조
효행장려	효행교육 실시 노력	효행교육 실시 노력	효행교육 실시 노력	효행장려법	5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효행장려	부양가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노인실태조사에 포함)	부양가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노인실태조사에 포함)	부양가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노인실태조사에 포함)	효행장려법	6조
효행장려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효행장려법	10조
효행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효행장려법	11조
효행장려	부모 등을 위한 적합한 설비·기능의 주거시설 공급 주거시설 공급자에대한지원	부모 등을 위한 적합한 설비·기능의 주거시설 공급 주거시설공급자에대한지원	부모 등을 위한 적합한 설비·기능의 주거시설 공급 주거시설공급자에대한지원	효행장려법	12조
효행장려	효행장려사업 수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 필요 지원	효행장려사업 수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 필요 지원	효행장려사업 수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 필요 지원	효행장려법	13조
효행장려	과태료 부과·징수	(특별자치시·도)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효행장려법	15조

〈부표 1-7〉 복지사무 : 사회복지일반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농어촌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공표			농어촌복지법	6조
농어촌복지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농어촌복지법	7조
농어촌복지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농어촌보건복지 실천계획 수립·시행	농어촌복지법	8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장비 우선 지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장비 우선 지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장비 우선 지원	농어촌복지법	10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보건진료소 통합,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	농어촌 보건진료소 통합,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	농어촌복지법	11조
농어촌복지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 관련 사항 반영, 필요한 재정 지원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 관련 사항 반영, 필요한 재정 지원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 관련 사항 반영, 필요한 재정 지원	농어촌복지법	12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협조 요청, 인력 및 재정 지원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협조 요청, 인력 및 재정 지원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협조 요청, 인력 및 재정 지원	농어촌복지법	13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농어촌민간의료기관에대한융자조건적용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농어촌복지법	14조
농어촌복지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 실시			농어촌복지법	15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운영 및 시설개선 필요비용 우선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농어촌에서 우	농어촌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운영 및 시설개선 필요비용 우선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농어촌에서 우	농어촌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운영 및 시설개선 필요비용 우선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농어촌에서 우	농어촌복지법	1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선실시,정신보건센터설치·운영등에필요한비용지원	선실시,정신보건센터설치·운영등에필요한비용지원	선실시,정신보건센터설치·운영등에필요한비용지원		
농어촌복지	농어촌 구강보건사업 우선 실시 시책, 비용 부담	농어촌 구강보건사업 우선 실시 시책, 비용 부담	농어촌 구강보건사업 우선 실시 시책, 비용 부담	농어촌복지법	17조
농어촌복지	농어업인의 한약재 재배·가공·유통하려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농어업인의 한약재 재배·가공·유통하려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농어업인의 한약재 재배·가공·유통하려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농어촌복지법	18조
농어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 적용			농어촌복지법	19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수급권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활지원, 삶의질 향상 시책 마련	농어촌 수급권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활지원, 삶의질 향상 시책 마련	농어촌 수급권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활지원, 삶의질 향상 시책 마련	농어촌복지법	20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우선 재정지원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우선 재정지원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우선 재정지원	농어촌복지법	21조
농어촌복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조치, 추가비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조치, 추가비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조치, 추가비용 지원	농어촌복지법	22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아동 보호 활성화 지원시책 우선 마련	농어촌 아동 보호 활성화 지원시책 우선 마련	농어촌 아동 보호 활성화 지원시책 우선 마련	농어촌복지법	23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농어촌복지법	24조
농어촌복지	농어촌 저소득층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제공	농어촌 저소득층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제공	농어촌 저소득층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제공	농어촌복지법	25조
농어촌복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특례			농어촌복지법	26조
농어촌복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농어촌복지법	2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농어촌복지	(공단)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 특례			농어촌복지법	28조
농어촌복지	(공단)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달리 적용			농어촌복지법	29조
농어촌복지	(공단)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복지법	30조
농어촌복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복지법	31조
농어촌복지	농어촌특별세로 농어촌보건복지사업 우선 지원			농어촌복지법	32조
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조
공동모금	모금회 기본재산 취득 허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6조의2
공동모금	모금회 설립운영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청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6조의3
공동모금	모금회 업무 지도·감독, 서류제출명령, 서류 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1조
공동모금	모금회 운영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2조
공동모금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3조
공동모금	과태료 부과·징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이용권 장려 여건 조성, 재원 마련 사회서비스개발,시행에필요한사항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 장려 여건 조성, 재원 마련 사회서비스개발,시행에필요한사항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 장려 여건 조성, 재원 마련 사회서비스개발,시행에필요한사항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4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5조
서비스이용권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자의 경우 부담비용을 감면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자의 경우 부담비용을 감면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자의 경우 부담비용을 감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6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 지원 차등	사회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 지원 차등	사회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 지원 차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7조
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책: 1~4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책: 1~4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책: 1~4호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8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에 따른 조사, 조사를 위한 관련 전산망 및 자료이용 협조 및 고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10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결정·통지), 재발급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11조
서비스이용권			이의신청 검토, 시정, 필요 조치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12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등록제한·등록증발급·등록사항 직권말소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16조
서비스이용권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접수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18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서비스이용권			부당이득의 징수, 체납처분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1조
서비스이용권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3조
서비스이용권			제공자 등록 취소 청문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4조
서비스이용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징수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5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방안 마련, 업무 위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6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위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7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공자 공개업무를 위탁	관할구역 제공자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공	관할구역 제공자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9조
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수행, 업무 위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30조
서비스이용권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위탁, 예산지원)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위탁, 예산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31조
서비스이용권	장부·서류·물건 검사, 질문, 업무보고 도는 자료제출을 명령(보고 및 검사 등)	장부·서류·물건 검사, 질문, 업무보고 도는 자료제출을 명령(보고 및 검사 등)	장부·서류·물건 검사, 질문, 업무보고 도는 자료제출을 명령(보고 및 검사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32조
서비스이용권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32조의2
서비스이용권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4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푸드뱅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신고 수리	식품기부법	3조
푸드뱅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지정 취소,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지정 취소,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식품기부법	3조의2
푸드뱅크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 시책 강구, 제공자/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조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 시책 강구, 제공자/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조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 시책 강구, 제공자/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조	식품기부법	7조
푸드뱅크	기부 식품등 이용자 보호 시책 수립, 사업자가 가입하는 손해보험료 보조	기부 식품등 이용자 보호 시책 수립, 사업자가 가입하는 손해보험료 보조	기부 식품등 이용자 보호 시책 수립, 사업자가 가입하는 손해보험료 보조	식품기부법	9조
푸드뱅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평가			식품기부법	9조의2
푸드뱅크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식품기부법	10조
푸드뱅크	기부식품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지정취소·청문	기부식품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지정취소·청문	기부식품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업장폐쇄·청문	식품기부법	11조
푸드뱅크	과태료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식품기부법	14조
사회보장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매년 공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결정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결정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결정	사회보장기본법	10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직권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직권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직권 신청	사회보장기본법	11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기본법	16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보장	소관 주요시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및전년도추진실적 보건복지부에제출 추진실적평가,결과를사회보장위원회에보고			사회보장기본법	18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사회보장기본법	19조
사회보장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사회보장기본법	22조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보장 시책 마련	사회서비스 보장 시책 마련	사회서비스 보장 시책 마련	사회보장기본법	23조
사회보장	소득보장 제도 마련	소득보장 제도 마련	소득보장 제도 마련	사회보장기본법	24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사회보장급여업무공통적용기준 마련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민간부문 참여 유도 및 지원 민간참여의경비지원하거나 필요한지원	사회보장 민간부문 참여 유도 및 지원 민간참여의경비지원하거나 필요한지원	사회보장 민간부문 참여 유도 및 지원 민간참여의경비지원하거나 필요한지원	사회보장기본법	27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기본법	29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서비스품질 평가·개선을 위한전담기구설치	사회보장급여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보장급여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보장기본법	30조
사회보장	전문인력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증진	전문인력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증진	전문인력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증진	사회보장기본법	31조
사회보장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사회보장기본법	32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정보 공개·홍보	사회보장제도 정보 공개·홍보	사회보장제도 정보 공개·홍보	사회보장기본법	33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기본법	34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상담 수리	사회보장 상담 수리	사회보장 상담 수리	사회보장기본법	35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항 통지	사회보장 사항 통지	사회보장 사항 통지	사회보장기본법	36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업무 전자적 관리 노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복)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총괄 (복)개인정보보호 필요시책 마련 (복)시스템운영 필요 정보제공요청, 보유·이용 시스템 활용 필요 시 복지부장관과 협의 (복)시스템 운영·지원 전담기구 설치	사회보장업무 전자적 관리 노력 시스템활용필요시 복지부장관과 협의	사회보장업무 전자적 관리 노력 시스템활용 필요시 복지부장관과 협의	사회보장기본법	37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계획/정책 수립시 국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사회보장계획/정책 수립시 국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사회보장계획/정책 수립시 국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사회보장기본법	40조
사회보장	계획/정책 수립·시행, 사회보장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자료 제출 및 필요한 협조요청	계획/정책 수립·시행, 사회보장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자료 제출 및 필요한 협조요청	계획/정책 수립·시행, 사회보장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자료 제출 및 필요한 협조요청	사회보장기본법	41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직권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직권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직권 신청	사회보장급여법	5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6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 조사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 조사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7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사회보장급여법	9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보장	위기가구 발굴과 필요한 급여 제공 지원	위기가구 발굴과 필요한 급여 제공 지원	위기가구 발굴과 필요한 급여 제공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9조의2
사회보장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과 홍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과 홍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과 홍보	사회보장급여법	10조
사회보장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사회보장급여법	11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처리, 활용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12조
사회보장	지원대상자 발굴조사 정기적 실시 지원대상자발굴체계운영실태점검,개선	지원대상자 발굴조사 정기적 실시	지원대상자 발굴조사 정기적 실시	사회보장급여법	12조의2
사회보장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신고 수리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신고 수리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신고 수리	사회보장급여법	13조
사회보장	민관협력 촉진 노력	민관협력 촉진 노력	민관협력 촉진 노력 지원대상자발굴촉진을위한 비용지원	사회보장급여법	14조
사회보장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수립, 실행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수립, 실행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수립, 실행	사회보장급여법	15조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안내, 의뢰 전화상담센터설치·운영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안내, 의뢰 전화상담센터설치·운영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안내, 의뢰 전화상담센터설치·운영	사회보장급여법	16조
사회보장	이의신청 접수,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결정, 결과 통지	사회보장급여법	17조
사회보장	수급권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	수급권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	수급권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18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19조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사회보장급여법	19조의2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사회보장급여법	2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사회보장급여법	22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정보 처리, 필요 자료/정보 요청, 활용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23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 정보시스템처리정보를보장기관의장에게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	사회보장급여법	24조
사회보장	대국민 포털 구축·관리 활용 촉진			사회보장급여법	25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 주기적 갱신,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			사회보장급여법	26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제시			사회보장급여법	27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정보 표준화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정보 표준화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정보 표준화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사회보장급여법	28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사회보장급여법	30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32조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 시정요구			사회보장급여법	33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사회보장급여법	34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조정권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실시및결과반영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조정권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실시및결과반영	사회보장급여법	35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사회보장급여법	37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사회보장급여법	38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평가결과종합검토하여사회보장위원회에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사회보장급여법	39조
사회보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사회보장급여법	40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운영	사회보장급여법	41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전담기구 별도 설치	사회보장급여법	42조
사회보장	통합사례관리 실시	통합사례관리 실시	통합사례관리 실시	사회보장급여법	42조의2
사회보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비용의 보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훈련 시책 수립 시행	사회보장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육훈련시책수립시행	사회보장급여법	43조
사회보장	사회보장 수준 차이 최소화를 위한 필요 조치	사회보장 수준 차이 최소화를 위한 필요 조치		사회보장급여법	45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회보장급여법	46조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47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보장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보장급여법	48조
사회보장	위임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 인력 또는 경비 지원	위임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 인력 또는 경비 지원	위임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 인력 또는 경비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52조
사회보장	고발, 징계 요구	고발, 징계 요구	고발, 징계 요구	사회보장급여법	53조
사회보장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사회보장급여법	53조의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 적극 노력 사회복지사등보수전담공무원수준에도달노력 사회복지사등적정인건비기준 마련 사회복지자등보수수준등조사·공표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 적극 노력 사회복지사등보수전담공무원수준에도달노력 사회복지사등적정인건비기준 마련 사회복지자등보수수준등조사·공표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 적극 노력 사회복지사등보수전담공무원수준에도달노력 사회복지사등적정인건비기준 마련 사회복지자등보수수준등조사·공표	사회복지사법	3조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인가			사회복지사법	4조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치·운영 비용 일부 지원			사회복지사법	7조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예산 편성 승인			사회복지사법	8조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업무의 시정, 필요조치 명령			사회복지사법	9조
사회복지사	과태료 부과·징수			사회복지사법	10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이용자 차별금지, 인권옹호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연계제공노력 복지사업상담,작업치료등실시,주민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시설균형있게설치되도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이용자 차별금지, 인권옹호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연계제공노력 복지사업상담,작업치료등실시,주민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시설균형있게설치되도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이용자 차별금지, 인권옹호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연계제공노력 복지사업상담,작업치료등실시,주민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시설균형있게설치되도	사회복지사업법	4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록노력 사회복지사업과민간복지활동이원활한연계노력 인권존중방식으로사회복지서비스제공, 인권교육강화 이용자가긴급한인권침해상황인경우신속대응체계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서비스 제공노력 사회복지서비스실시에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제공자의부당처분에 대한신속구체조치마련	록노력 사회복지사업과민간복지활동이원활한연계노력 인권존중방식으로사회복지서비스제공, 인권교육강화 이용자가긴급한인권침해상황인경우신속대응체계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서비스 제공노력 사회복지서비스실시에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제공자의부당처분에 대한신속구체조치마련	록노력 사회복지사업과민간복지활동이원활한연계노력 인권존중방식으로사회복지서비스제공, 인권교육강화 이용자가긴급한인권침해상황인경우신속대응체계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서비스 제공노력 사회복지서비스실시에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제공자의부당처분에 대한신속구체조치마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 처분과 사실 공표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 처분과 사실 공표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 처분과 사실 공표	사회복지사업법	5조
사회복지사업	서비스품질향상과원활한제공위한필요시책마련 사회복지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평가 평가기관설치·운영또는위탁, 필요비용지원	서비스품질향상과원활한제공위한필요시책마련 사회복지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평가	서비스 이용권 지급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 서비스품질향상과원활한제공위한필요시책마련 사회복지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평가	사회복지사업법	5조의2
사회복지사업	법인·시설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에필요한자료수집·관리·보유,자료제공요청 전담기구에정보시스템운영업무위탁	정보시스템과관할복지행정시스템과연계활용	정보시스템과관할복지행정시스템과연계활용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2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사회복지사업법	9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법	10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업법	11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3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행(업무위탁, 비용보조, 응시수수료 징수 등)			사회복지사업법	12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명령, 교육업무 위탁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 보고 수리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 보고 수리	사회복지사업법	13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주간 설정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2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16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사회복지사업법	22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사회복지사업법	22조의2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22조의3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22조의4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변경, 장기차입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23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 수리		사회복지사업법	24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26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합병 허가(시도 간)	사회복지법인 합병 허가(시도 내)		사회복지사업법	30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사회복지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신고 수리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시설개보수비용보조	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시설개보수비용보조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 개수·보수 요구 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시설개보수비용보조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4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복지사업법	36조
사회복지사업			필요한 조치 후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신고 수리	사회복지사업법	38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의 명령	사회복지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의 명령	사회복지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의 명령	사회복지사업법	40조
사회복지사업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에게 시설입소에 우선해재가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업법	41조의2
사회복지사업	가정봉사원 양성	가정봉사원 양성	가정봉사원 양성	사회복지사업법	41조의4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자의 운영비 등 필요 비용 전부/일부 보조 보조금전부또는일부의반환 명령	사회복지사업자의 운영비등 필요 비용 전부/일부 보조 보조금전부또는일부의반환 명령	사회복지사업자의 운영비 등 필요 비용 전부/일부 보조 보조금전부또는일부의반환 명령	사회복지사업법	42조
사회복지사업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 또는 임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 또는 임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 또는 임대	사회복지사업법	42조의2
사회복지사업	시도 및 시군구에게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42조의3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43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표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표 등		사회복지사업법	43조의2
사회복지사업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사회복지사업법	44조
사회복지사업	처분을 위한 청문	처분을 위한 청문	처분을 위한 청문	사회복지사업법	49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공로자/모범자 포상			사회복지사업법	50조
사회복지사업	소관업무 지도·감독, 보고/서류제출 명령, 검사, 질문 지도·감독·회계감사, 행정처분등 관련정보공표	소관업무 지도·감독, 보고/서류제출 명령, 검사, 질문 사회복지법인·시설에대한회계감사실시 지도·감독·회계감사, 행정처분등관련정보공표	소관업무 지도·감독, 보고/서류제출 명령, 검사, 질문 사회복지법인·시설에대한회계감사실시 지도·감독·회계감사, 행정처분등관련정보공표	사회복지사업법	51조
사회복지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사회복지사업법	58조
저출산고령사회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주요정책 수립 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고려	지역 실정에 부합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행 주요정책수립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고려	지역 실정에 부합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행 주요정책수립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고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조
저출산고령사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 변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조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의이행사항점검, 변경요구 매년시행계획의추진실적평가,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매년시행계획의추진실적평가,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매년시행계획의추진실적평가, 제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1조

구분	중앙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근거법률	법률조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2조
저출산고령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평가 확정후 국회에 보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7조
저출산고령사회	전문인력 양성,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한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8조
저출산고령사회	조사 및 연구 실시, 조사연구기관 설치 또는 위탁	조사 및 연구 실시, 조사연구기관 설치 또는 위탁	조사 및 연구 실시, 조사연구기관 설치 또는 위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9조
저출산고령사회	민간부문 참여 환경 조성	민간부문 참여 환경 조성	민간부문 참여 환경 조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30조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실시 노력	인구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실시 노력	인구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실시 노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30조의2
저출산고령사회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31조
저출산고령사회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에 따른 조세 감면등 지원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에 따른 조세 감면등 지원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에 따른 조세 감면등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32조

[부록 2] 복지사업 목록 : 부산 및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

〈부표 2-1〉 기초생활보장(1)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업무 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교육급여 지원 통합관리 업무 운영 통합조사 전문성 확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 의료급여관리사 정액급식비 의료급여관리사 교통보조비 의료급여관리사 기말수당 의료급여관리사 상해보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행정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진료비 부담금

〈부표 2-2〉 기초생활보장(2)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긴급복지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지원 시비특별지원사업 월동대책비 시비특별지원사업 자녀교통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저소득층복지 지원
	긴급복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저축계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Ⅰ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Ⅱ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센터운영 희망디자인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통장사례관리 운영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 근속수당 지원 자활사업 지원

〈부표 2-3〉 취약계층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의사상자 지원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지원 노숙인 의료 및 약제비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노숙자 보호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노숙인시설 기능보장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	행려·노숙인 보호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분 행정비용 사회복지 (생활)시설(자) 위문

〈부표 2-4〉 장애인(1)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지급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재활수당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저소득층 장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지급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도비 장애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부표 2-5〉 장애인(2)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 지원(지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관리 활동보조 가산 급여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시비 보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 지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주말 주간 일시보호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관리 장애인 부모회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교육사업비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국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화합 행사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위위원회 참석수당 활동지원급여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 전산 위탁 업무비

〈부표 2-6〉 장애인(3)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재활병원건립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이용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시설보호장애인 약품비 지원 시설보호장애인 월동용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지원 시설보호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어린이날 시설보호장애인 간식비 지원 장애인의 날 시설보호장애인 간식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대학 지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주말주간일시보호사업 장애인복지관 목욕서비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세탁서비스 점자도서관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장애인거주시설 명절 위문 장애인회관 신축 장애인복지관 운영 수화통역 수당 맞춤서비스 지원 장애인맞춤형서비스 제공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그룹홈)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자체)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 장애인종합복지센터건립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지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재활스포츠센터 운영(자체)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자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부표 2-7〉 장애인(4)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원(일반형/전일제) 장애인일자리 지원(시간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지원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원복지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근로장려금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원(일반형/전일제) 장애인일자리 지원(시간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장애인직업재활지설 마케팅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보호작업장 카페 설치·운영 사업 발달장애인 기능경진 대회 장애인직업재활원 개보수 공사

〈부표 2-8〉 장애인(5)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지원관리 (사례관리)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장애인협회 운영 장애인 업무 운영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장애인복지활성화 업무추진 수급자격심의 및 이의신청 위원회 운영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인식개선, 사회활동참여증진 등) 각종 기념식 및 행사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 사업 장애인단체 실무 워크숍 장애인 정보화협회 교육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비용 지원 장애인복지 시책업무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장애인정책 홍보물 제작 장애인체육관운영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전산관리시스템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

〈부표 2-9〉 보육(1)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특별돌봄)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센터 가정양육사업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첫째아이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 보육 업무 운영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표 2-10〉 보육(2)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교재교구비, 농어촌 소재법인, 연장보육전담교사,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다함께돌봄 사업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지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장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정부지원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민간가정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수당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365 맞춤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냉·난방비(연료비) 지원 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자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 보육교직원 워크숍 개최 성북초등공립어린이집 이전
	어린이집 지원(교재교구비, 농어촌소재법인, 방역물품, 차량운영비 등)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전자출결시스템)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다함께돌봄센터(설치, 운영, 인건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영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대체인	국공립어린이집 유지 보수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건립 군립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확충(자체) 보육시설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공공요금지원 국공립보육시설차량운영인건비지원 다함께돌봄사업(자체) 평가제우수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 평가제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지원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력, 추가지원, 특수근무수당 등)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인프라구축 지원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 등)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기타직원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근무수당 지원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부표 2-11〉 보육(3)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육사업 관리 보육진흥원 운영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보육행정 지원 보육주간 행사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행정 지원 지역돌봄협의체

〈부표 2-12〉 아동(1)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모자보건사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 가정 입양 및 위탁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입양 비용,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 양육수당)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안전관리비 지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수당 아동그룹홈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가정위탁아동 등 대학등록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건전육성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학대예방 사업 아동복지증진 업무 추진 영유아복지증진 업무 추진 위원회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부표 2-13〉 아동(2)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등 건전육성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출석전자카드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아동양육시설 등 건정육성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등 안전관리환경개선비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개보수비) 아동복지시설 위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장기근속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급식운영비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자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부표 2-14〉 아동(3)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인구교육추진지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	출산지원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출산용품 지원사업	아동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 출산(장려) 지원금(축하금) 다자녀 출산지원금 꼬마둥이 페스티벌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아동정책 업무 지원 출산 장려 지원 출산 축하 지원

〈부표 2-15〉 청소년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지원/급식지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건강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방상담사업비 지원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지자체부담금)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육성 업무 운영 지방상담사업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근절 시책 운영 청소년안전망 구축 도시관리공단 운영(청소년수련관) 도시관리공단 운영(문화예절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청소년 보호 청소년 육성 및 보호관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자체) 청소년수련과 관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청소년교류캠프 운영 청소년예술제 운영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 청소년 건강 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학교밖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학교밖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활동공간 개선사업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운영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보조) 청소년 업무 지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청소년 조언 자판기 운영 청소년 보호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청소년 수능 행사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재단 설립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부표 2-16〉 여성·가족(1)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족센터 건립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경상보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지원(경상보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등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 활동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복지증진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복지수당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운영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도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기능보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인건비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부표 2-17〉 여성·가족(2)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취약·위기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한부모 아동(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취약·위기가족(가족역량강화)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등 지원사업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시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 실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행사지원 다문화나눔터 운영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추가) 여성능력 배양 양성평등기념식 및 여성어울림체육대회 여성복지 업무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먼라이브러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 확산
	새일센터 지정·운영(센터 운영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여성 인턴제) 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도 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거주외국인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비)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외국인주민한국어말하기대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운영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보수 건강가정 활성화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캠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통역 서포터즈 운영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이혼위기가족 지원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특수근무수당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지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 다문화가정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족친화직장조성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활동비 지원 여성복지 지원 사업 가정복지 시책추진 거주외국인 정주화 사업 다문화 어울마당 여성회관 리모델링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아버지 학교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공모 사업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 지원 여성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시군특화 여성일자리 취업 지원

〈부표 2-18〉 노인(1)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노인건강관리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공공후견 지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기초연금 지급 장사시설 설치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육성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	기초연금 지급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노인요양시설 U-헬스 원격진료 장비 유지보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경로식당 개보수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추가)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기초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노인생활안정(기초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온돌사업 저소득노인세대 거주지 방역사업 저소득노인 사랑의밑반찬 나눔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교육 운영 묘지 관리(장묘문화, 시설관리, 화장장려금 지원 등) 100세 인 생일 지원 100세 인 수당 지원 100세 인 장제비 지원 100세인 복지플랜 사업 효 가정 지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부표 2-19〉 노인(2)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시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경로당에어컨 세척 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시니어 해피라이프 사업 노인교실 운영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마을 경로당 신축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경로당 개보수(시설환경개선) 경로당 운영 도우미 배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유지보수관리) 경로당 인터넷 이용료 지원 경로당 정수기 보급 경로당 중식비 지원 경로당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우리마을 어르신 clean 사업단 운영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자체 보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공익형)	경로당 운영 지원(도비)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처우개선비 노인일자리수행(전담)기관지원 노인일자리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급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외인센티브)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운영 실버인력뱅크운영 노후시설개선 및 신제품지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시장형·사회서비스형)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 경로당 상해·화재보험료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노인 배움누리 지원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임차료 지원

〈부표 2-20〉 노인(3)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노인단체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관 직원복지수당 노인복지시설 직원복지수당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대한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석면 교체 공사 (소규모)노인회관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사업 노인안심서비스사업 노인복지업무 운영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운영 노인복지시설 구 상징물 교체 대한노인회 지원 노인복지 활성화 업무추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및 기관운영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시설 운영,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노인 성(性)인식 개선 노인복지관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특무근무수당 노인복지정보제공(노인복지신문보급)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노인자살예방사업(도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및 응급서비스요원 활동비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관 생애재교육 노인의 날, 경로잔치 등 행사 지원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 등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마을회관(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부표 2-21〉 사회복지일반 : 지역복지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다함께 돌봄사업(지자체 사업비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커뮤니티 케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정보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운영비·인건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기초푸드뱅크 지원 기초푸드마켓 지원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복지관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복지기획 업무 추진 복지마을 운영 복지센터 운영 주례희망디딤돌센터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복지상담실 운영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추진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희망복지안전망지원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설치비) 복지기획 업무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 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G-푸드드림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푸드뱅크(마켓) 운영장비 지원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 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기초생활지원 동 복지회관(마을회관 등) 운영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복지재단 운영 지역사회복지지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부표 2-22〉 사회복지일반 : 전달체계·행정

중앙정부 내역사업	시군구 실행 중앙정부 사업	시도 사업	시군구 자체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시도 대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복지급여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시군구 사업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건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읍면동 맞춤형(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지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지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복지종합지원 정책 수립 주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운영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복지상담실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 민관사례관리 운영, 사상나눔사업 사회보장서비스 민간참여 활성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운영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보상금 등)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도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평가·관리 사회복지시설(법인) 회계감사 수수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사회복지 행정 지원 읍면 복지행정센터 지원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 구독안내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